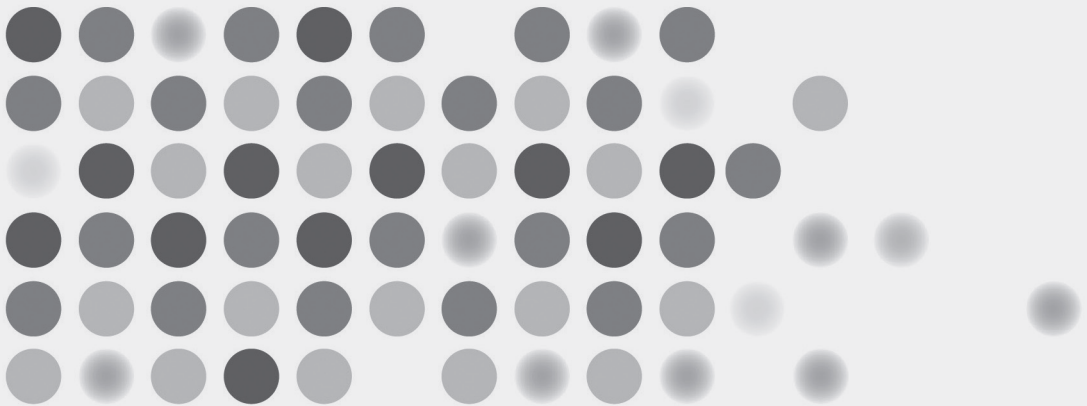

동남아시아 형사사법 협력(Asiajust) 사업 정책성과 연구

김한균 | 승재현 | 조성현 | 박상희 | 김은영



발간사

본 보고서는 한국형사정책연구원 국제협력사업으로서 2009년부터 유엔 마약및 범죄사무소(UNODC) 아태지역사무소(Regional Office for Southeast Asia and the Pacific)와 공동수행해 온 형사사법공조 연구 및 아시아저스트(Towards AsiaJust) 등 지역내 형사사법협력을 위한 기술적 지원 사업 추진성과를 정리하면서, 향후 과제를 발전적으로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지난 7년간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의 동남아시아 형사사법협력 사업의 성과를 정리 하면서, 향후 아시아저스트 후속사업을 비롯한 지역 형사사법 협력프로그램의 방향과 과제를 제시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연구를 성실히 수행해준 김한균 국제협력센터장과 승재현 부연구위원, 조성현, 박상희, 김은영 연구원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015년 12월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원장 **김진환**

목 차

국문요약	1
------------	---

제1장 연구의 의의 (김한균·승재현)	5
------------------------------	---

제1절 동남아시아 형사사법 협력 사업의 개요	7
--------------------------------	---

1. KIC-UNODC 동아시아 태평양지역센터 공동사업 진행 프로그램 7
가. 제 1 차 지역 프로그램 개요 및 성과 7
나. 제 2 차 지역 프로그램 개요 및 성과 9
2. 2016년 이후 KIC-UNODC 동남아시아 태평양지역센터 공동사업 진행 프로그램 10
가. AsiaJust 후속사업(UNODC 지역프로그램 2014-2017) 이행방안 협의 10

제2절 동남아시아 형사사법 협력 사업의 필요성	12
---------------------------------	----

1. 동남아시아 지역의 범죄 현황 12
2. 동남아시아 지역의 형사사법 공조의 필요성과 당위성 12
가. 동남아시아 지역의 형사사법 공조의 필요성 12
나. 동남아시아 지역의 형사사법 공조의 당위성 13

제2장 유엔 동남아 지역프로그램(Regional Programme for Southeast Asia)의 개요 (승재현·박상희·김은영)	15
--	----

제1절 UNODC 동아시아 태평양 지역센터(Regional Centre for East Asia and the Pacific)의 아태지역 프로그램(2009-2012) 사업체계 소개	17
--	----

1. UNODC 동아시아 태평양 지역센터의 아태지역 프로그램 사업체계 (Regional Programme Framework) 소개 17
2. 아태지역 프로그램 사업체계(Regional Programme Framework)에 있어서 AsiaJust 프로그램(2009-2013)의 기여 18

제2절 UNODC 동남아시아 태평양 지역센터(Regional Centre for Southeast Asia and the Pacific)의 유엔 동남아 지역프로그램(Regional Programme for Southeast Asia 2014-2017) 소개	19
1. 유엔 동남아 지역 프로그램(Regional Programme for Southeast Asia 2014-2017)의 개요 및 전략	19
가. 초국가적 조직범죄 및 불법 인신매매(Transnational Organised Crime and Illicit Trafficking)	20
나. 반부패(Anti-Corruption)	21
다. 테러방지(Terrorism Prevention)	22
라. 형사사법(Criminal Justice)	23
마. 마약, 보건 및 대체 소득원 개발(Drug and Health, and Alternative Development)	25
2. 2014-2017 동남아시아 지역 프로그램(Regional Programme for Southeast Asia 2014-2017): 동남아시아 지역의 법치주의 증진 및 마약 기타 범죄에 대한 대응	27

| 제3장 | Towards AsiaJust Programme(2009년-2013년)의 개요 (승재현·박상희·김은영)

제1절 아시아저스트 프로그램 개발 및 도입단계(2009년-2010년)	31
1. 2009년도 주요 사업 내용	31
가. 프로그램 개요	31
나. 사업 진행방안	32
2. 2010년도 주요 사업 내용	39
가.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원 파견	39
나. 한국-ASEAN 고위급 검사회의 개최	40
다. 한국형사정책연구원 방문	42
라. 기타사업	42
제2절 아시아저스트 프로그램 실행단계(2011년-2012년)	43
1. 2011년도 주요내용	43
가. 검사교류프로그램 (Prosecutor Exchange Program)	43
나.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제2차 파견 연구자 업무	43
다. ASEAN 10개국 형사사법체제에 관한 연구 시작	44

라. 자금몰수 및 환수 매뉴얼 작성 시작	45
마. UNODC-ITU (International Telecommunication Union) 사이버범죄 대응에 관한 아태지역 워크숍 공동 개최	45
2. 2012년도 주요내용	55
가. 사업 조직체계의 준비	55
나. 연구사업	55
다. 아시아저스트 프로그램과 UNODC를 위한 기술적 지원	57
제3절 아시아저스트 프로그램 후속사업 단계(2013년)	64
1. 2013년도 주요사업 내용	64
가. 아시아태평양 불법자금환수 네트워크	64
나. 상호사법공조 및 범죄인인도	77
다. 제2차 검사교류프로그램 시행	86

| 제4장 | 사업의 진행현황 및 후속사업 **(김한균·승재현·조성현) 91**

제1절 형사사법 협력 프로그램 사업 추진 현황	93
1. KIC-UNODC 방콕사무소 공동사업 진행 프로그램	93
가. 프로그램 개요	93
나. 주요 진행 내용	94
2. 아시아저스트 사업 후속진행 방안	94
3. 아시아지역 형사사법통계 협력센터 설립추진	95
제2절 동남아시아·태평양 지역 형사사법협력사업 워크숍	96
1. 회의 개요	96
2. 개회 Session	98
가. 개요	98
나. 개회사 주요 요지	98
3. Session 1 주제	99
가. 개요	99
나. 주요 발표내용	99
4. Session 2 주제	100
가. 개요	100
나. 주요 발표내용	100

5. Session 3 주제	101
가. 개요	101
나. 주요 발표내용	101
6. 제 4 세션	105
가. 개요	105
나. 주요 발표내용	106
 제5장 결 론 (김한균)	109
1. 동남아시아 형사사법협력 사업의 성과 정리	111
2. 아시아저스트(AsiaJust) 후속사업의 과제와 전망	112
 참고문헌	115
 Abstract	117

표 차례

〈표 3-1〉 Towards AsiaJust 단위프로그램 사업계획서	35
〈표 3-2〉 유엔마약및범죄국 성과영역들과의 연계성	36
〈표 3-3〉 유엔마약및범죄국 지원의 우선적 산출성과를 제시한 단위프로그램 목표체계도 ..	38
〈표 3-4〉 2009년-2010년도 아시아저스트 사업 활동 개관	40
〈표 3-5〉 한국+ASEAN 검찰 고위급 회의 일정	41
〈표 3-6〉 한국형사정책연구원: 김일수 원장 외 8명	46
〈표 3-7〉 원외참석자: UNODC 아태지역사무소장 Mr. Gary Lewis 외 65명	47
〈표 3-8〉 워크숍 일정	50
〈표 3-6〉 범죄수익환수 전문가워크숍 주요 참가자 현황	62
〈표 3-7〉 제1회아시아태평양 불법자금 환수 네트워크 설립 관련 전문가회의 일정 ..	66
〈표 3-8〉 제2회 아시아태평양 불법자금 환수네트워크 설립관련 전문가회의 참가자	70
〈표 3-9〉 제2회 아시아태평양 불법자금환수 네트워크 설립 관련 전문가회의 일정 ..	72
〈표 3-10〉 아시아태평양 불법자금환수 네트워크 창립총회 일정	74
〈표 3-11〉 제2회 고위급 동남아 및 주변국 상호사법공조회의 참석자	78
〈표 3-12〉 제2회 고위급 동남아 및 주변국 상호사법공조회의 일정	79
〈표 3-13〉 제1회 동남아시아 상호사법 공조회의 참석자	83
〈표 3-14〉 사하로니 검사의 연수 및 연구 내용	87
〈표 4-1〉 UNODC 지역 프로그램 2014-2017	93
〈표 4-2〉 동남아시아·태평양 지역 형사사법협력사업 워크숍 일정	97

그림 차례

[그림 1-1] 2009-2012 UNODC 아태지역 아시아저스트 프로그램 사업체계	8
[그림 2-1] 2009-2012 유엔 마약 및 범죄 사무소의 구체적 성과 및 산출성과를 제시한 형사사법 단위프로그램 목표체계도	19
[그림 2-2] 동남아 지역 외국인 테러전투원(Foreign Terrorist Fighters; FTF)	22
[그림 2-3] 아동대상 성범죄 근절 관련 유엔 마약 및 범죄 사무소(UNODC) 조사 결과 ·	24
[그림 2-4] 2003-2013년 ASEAN 국가 및 도시의 주사제 마약 사용자의 HIV 유병률(有病率)	26
[그림 3-1] 상호사법공조 및 범죄인인도 서식 (일부)	81
[그림 3-2] 제2회 고위급 동남아 및 주변국 상호사법공조회의 개최모습	82
[그림 3-3] 제1회 동남아시아 상호사법 공조회의 준비자료 (일부)	84
[그림 3-4] 대검찰청 근무 당시 사하로니 검사 및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월례 집담회 모습	88

국문요약

1. 본 보고서는 한국형사정책연구원 국제협력사업 중에서 유엔 마약및범죄사무소(UNODC) 아태지역사무소(Regional Office for Southeast Asia and the Pacific)와 지역내 형사사법공조 연구 및 기술적 지원(technical assistance)협력사업으로서 수행해 온 AsiaJust 프로그램("Towards AsiaJust") 사업성과를 평가하고 향후 과제를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다.
2. 형사정책연구원은 2009년부터 2013년까지 UNODC 동아시아 태평양 지역 센터(Regional Centre for East Asia and the Pacific)와 동남아 지역 프로그램(Regional Programme for Southeast Asia)의 일환으로 AsiaJust 프로그램을 진행하였다.
3. UNODC 아태지역센터와 주관하는 법치주의와 개발을 위한 아태지역 프로그램 사업체계(Regional Programme Framework)는 인류안전(Human Security)의 실현을 목표로 ① 마약밀매와 인신매매근절, ② 부패방지, ③ 형사사법, ④ 마약수요의 감소 ⑤ 마약사용자, 수형자 등 취약집단의 에이즈감염 감소, ⑥ 마약재배근절과 지속가능한 생계보장 등 6개 단위프로그램으로 이루어져 있다.
4. AsiaJust 프로그램은 형사사법분야의 단위프로그램으로서, 아태지역 내 법치주의 실현을 위한 초국가적 사법협력체계(regional transnational justice system)의 구축을 목표로 하였다. 이를 통하여 아태지역 국가들의 마약, 범죄 및 테러 분야의 국제규범 비준, 마약, 범죄 및 테러 대응 국내법제 개혁, 공정하고 신뢰할 수 있는 형사사법 체계의 구축 및 형사사법현안에 대한 초국가적 협력 증진을 도모하고자 하였다.
5. 2009년부터 2013년까지 진행된 AsiaJust 프로그램은 동 프로그램 진행 방안으로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원을 UNODC 동아시아 태평양 지역 센터에 파견

2 동남아시아 형사사법 협력(AsiaJust) 사업 정책성과 연구

하였다. 동시에 ASEAN 고위급 검사회의를 개최하면서 동아시아 지역의 사법 공조에 관한 기틀을 마련하였다.

6. 본격적 실행단계에서는 불법자산 환수와 관련하여 워크숍을 개최하고, 검사 교환프로그램(Prosecutorial Exchange Program)을 진행하였다. 또한 사법 공조를 진행하기 위해서 ASEAN 지역 형사사법체계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였다.

7. 2012년 12월 제1회 아시아태평양 범죄수익환수 네트워크(Asset Recovery Interagency Network Asia Pacific, ARIIN-AP) 구축을 위한 전문가 회의는 법집행기관 간의 準공식 협력 네트워크 구축의 일환으로 ASEAN 법집행기관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한 범죄수익환수 전문가 워크숍 이다. 2013년 9월 제2회 ARIN-AP 구축 전문가 회의에는 한국, 호주, 뉴질랜드, 일본, 인도네시아, 태국 등의 실무자 및 한국형사정책연구원 불법자금 전문가들이 참석하여, ARIN-AP 창립총회일자, ARIN-AP 사무국 인력 및 창립총회 이후 운영방안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이러한 전문가 워크숍을 바탕으로 2013년 11월 ARIN-AP창립 총회가 개최되었다. 동 회의에는 21개국 28개 기관의 아태지역 범죄수익환수 관련 법집행 기관 담당자, 국제기구 및 국내 유관기관 전문가 등이 참석하였다.

8. 2014년부터는 UNODC 동남아시아 태평양 지역 센터(Regional Centre for Southeast Asia and the Pacific)가 동남아시아 지역 프로그램(Regional Programme for Southeast Asia 2014-2017)을 진행하고 있다. 본 프로그램은 초국가 조직범죄 및 불법 밀입국, 반부패 정책, 테러방지, 형사사법, 마약 생산 지역 주민대체 소득원 개발을 주된 내용으로 하고 있다.

9. 2014년 12월 형사정책연구원은 UNODC 아태지부와 아시아저스트사업의 지속 사업에 합의하고, 아태지부 동남아 지역프로그램 중 형사사법정의 (criminal justice) 분야와 관련하여 상호 협력하는 내용의 기금 출연 협약을 체결하였다. 이를 계기로 “동남아시아 초국가적 사법 협력 개선 프로젝트”를 동남아시아 태평양 지역 센터와 공동으로 진행하고 있다.

10. 후속사업의 중요 내용은 사이버범죄를 포함한 다양한 형태의 신종 초국가적 범죄의 도전에 대응한 지역 내 형사사법공조 개선방안 모색을 위한 학문적·실무적 연구수행과 공동출판, 역내 각국 형사사법공조 중앙기관의 역량 강화 지원, 역내 각국 형사사법공조 기관 및 직원의 네트워킹을 위한 형사사법공조 교육훈련 워크숍 공동개최 및 역내 각국의 우수사례와 관련정보의 공유 증진이다.

11. 아시아저스트 사업은 아시아지역내 초국가적 조직범죄 대처역량 강화 노력에 적극 기여하면서 주로 형사사법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사이버범죄 역량 강화 교육훈련 프로그램, 역내 실무전문가들의 토론장을 열어 주고 동 분야 최초로 비정부 연구기관이 적극 기여했다는데 상당한 의미가 있다.

12. 아시아저스트 프로그램 개발과 운영과정에서 본 연구원내 아시아지역 형사사법공조 분야 연구역량도 강화되었으며, 본 연구원이 유엔 범죄방지및형사사법 네트워크 프로그램 회원기관으로서 연례 유엔범죄방지형사사법위원회 관련 회의 성과를 구체적 국제협력사업의 성과로 구체화하였다는 점에서도 실효성을 확보했다.

13. 아시아저스트 사업이 지속적 발전을 통해 결실을 맺으려면, 무엇보다도 내부적 이해와 협력이 절실하며, 이를 위해 본 사업의 성과에 대한 객관적 내용을 공유하여 이해도와 참여도를 높이고, 부정적인 오해와 불신의 장애요인을 극복해 나가야 할 것이다.

제1장

KOREAN INSTITUTE OF CRIMINOLOGY

연구의 의의

김한균·승재현

제1장

연구의 의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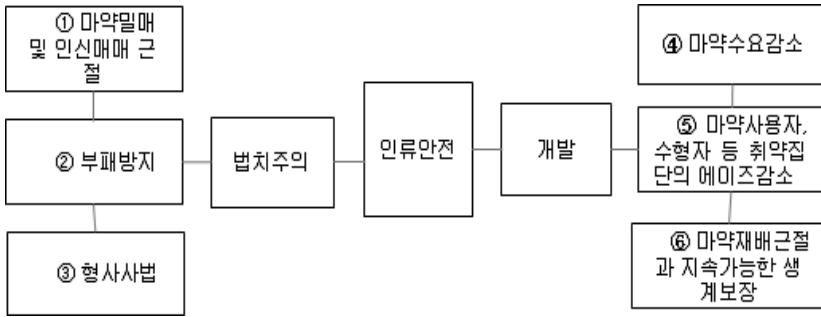
본 연구는 2015년도 「국제 범죄방지를 위한 UN·국제협력 및 연구 사업」의 세부과제 하나로 기획되었다. 또한 유엔 범죄방지 및 형사사법 프로그램 (UN Crime Prevention and Criminal Justice) 소속 연구기관으로서 14개국 34개 형사정책 연구 기관 및 형사사법기관과 연구교류협력을 진행하고 있는 한국형사정책연구원 국제 협력사업 중에서도 유엔 마약및범죄사무소(UNODC) 아태지역사무소(Regional Office for Southeast Asia and the Pacific)와의 형사사법공조 연구 및 아시아저스트 (Towards AsiaJust) 등 지역내 형사사법협력을 위한 기술적 지원(technical assistance) 사업 추진성과를 정리하면서, 향후 과제를 발전적으로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다.

제1절 동남아시아 형사사법 협력 사업의 개요

1. KIC-UNODC 동아시아 태평양지역센터 공동사업 진행 프로그램

가. 제 1 차 지역 프로그램 개요 및 성과

형사정책연구원은 2009년부터 2013년까지 UNODC 동아시아 태평양 지역 센터 (Regional Centre for East Asia and the Pacific)와 동남아 지역 프로그램(Regional Programme for Southeast Asia)의 일환으로 AsiaJust 프로그램(“Towards AsiaJust”)을 진행하였다.



[그림 1-1] 2009-2012 UNODC 아태지역 아시아저스트 프로그램 사업체계¹⁾

아태지역센터와 주관하는 법치주의와 개발을 위한 아태지역 프로그램 사업체계(Regional Programme Framework)는 인류안전(Human Security)의 실현을 목표로 ① 마약밀매와 인신매매근절, ② 부패방지, ③ 형사사법, ④ 마약수요의 감소 ⑤ 마약 사용자, 수형자 등 취약집단의 에이즈감염 감소, ⑥ 마약재배근절과 지속가능한 생계보장 등 6개 단위프로그램으로 이루어져 있다.²⁾

AsiaJust 프로그램은 형사사법분야의 단위프로그램으로서, 아태지역 내 법치주의 실현을 위한 초국가적 사법협력체계(regional transnational justice system)의 구축을 목표로 하였다.

이를 통하여 아태지역 국가들의 마약, 범죄 및 테러 분야의 국제규범 비준, 마약, 범죄 및 테러 대응 국내법제 개혁, 공정하고 신뢰할 수 있는 형사사법 체계의 구축 및 형사사법현안에 대한 초국가적 협력 증진을 도모하고자 하였다.³⁾

2009년부터 2013년까지 진행된 AsiaJust 프로그램은 크게 준비단계, 실행단계, 완성(Follow up) 단계로 나눌 수 있다.

준비단계에서는 AsiaJust 프로그램 진행을 위한 방안으로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원을 UNODC 동아시아 태평양 지역 센터에 파견하였다. 동시에 ASEAN 고위급 검사회의를 개최하면서 동아시아 지역의 사법공조에 관한 기틀을 마련하였다.⁴⁾

1) Towards AsiaJust Implementing the Culture of Rule of Law in Asia and the Pacific, KIC, 2009. pp. 10.

2) Towards AsiaJust 동아시아 및 태평양지역을 위한 유엔 형사사법 프로그램,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09, 1-2쪽.

3) Towards AsiaJust 동아시아 및 태평양지역을 위한 유엔 형사사법 프로그램,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09, 1-2쪽

실행단계에서는 불법자산 환수와 관련하여 워크숍을 개최하고, 검사교환프로그램(Prosecutorial Exchange Program)을 진행하였다. 또한 사법공조를 진행하기 위해서 ASEAN 지역 형사사법체계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였다.⁵⁾ 이와 동시에 다양한 워크숍을 개최하고, 범죄수익환수 및 자금 몰수를 위한 아시아 태평양 지역 전문가 워크숍을 진행하였다.⁶⁾

2012년 12월 4일부터 5일까지 양일 간 대검찰청에서 제1회 아시아태평양 범죄수익환수 네트워크(Asset Recovery Interagency Network Asia Pacific, ARIIN-AP) 구축을 위한 전문가 회의가 개최되었다. 동 회의는 법집행기관 간의 준공식 협력 네트워크 구축의 일환으로 ASEAN 법집행기관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한 범죄수익환수 전문가 워크숍이다.⁷⁾

2013년 9월 제2회 ARIN-AP 구축 전문가 회의가 개최되었다. 동 회의에는 한국, 호주, 뉴질랜드, 일본, 인도네시아, 태국 등의 실무자 및 한국형사정책연구원 불법자금 전문가들이 참석하여, ARIN-AP창립총회일자, ARIN-AP 사무국 인력 및 창립총회 이후 운영방안에 대하여 논의하였다.⁸⁾ 이러한 전문가 워크숍을 바탕으로 2013년 11월 대검찰청 대회의실에서 ARIN-AP창립총회가 개최되었다.⁹⁾ 동 회의에는 21개국 28개 기관의 아태지역 범죄수익환수 관련 법집행 기관 담당자 38명, 국제기구 및 국내 유관 기관 전문가 6명 등 총 46명이 참석하였다.¹⁰⁾

나. 제 2 차 지역 프로그램 개요 및 성과

2014년부터는 동아시아 태평양 지역 센터가 동남아시아 태평양 지역 센터(Regional Centre for Southeast Asia and the Pacific)로 이름이 변경되면서 동남아시아 지역 프로그램(Regional Programme for Southeast Asia 2014-2017)을 진행하

4) 장준오, 이윤미, 유엔협력사업, 국제교류협력사업,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11, 96-98쪽.

5) 장준오, 이윤미, 유엔협력사업, 국제교류협력사업,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11, 98쪽.

6) 장준오 외 8인, 2013UN·국제협력사업 성과보고서,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13, 74-87쪽.

7) 김은경 외 9인, 2012유엔·국제협력사업 성과보고서,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12, 295-297쪽.

8) 장준오 외 8인, 2013UN·국제협력사업 성과보고서,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13, 74-81쪽.

9) 제1회 ARIN-AP총회는 대한민국, 제2회 총회는 자카르타, 금년도 제3회 총회는 호주에서 개최되었다. ARIN-AP총회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http://www.arin-ap.org/main.do> 참조.

10) 장준오 외 8인, 2013UN·국제협력사업 성과보고서,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13, 85-88쪽.

고 있다. 본 프로그램은 초국가 조직범죄 및 불법 밀입국, 반부패 정책, 테러방지, 형사사법, 마약 생산지역 주민대체 소득원 개발을 주된 내용으로 하고 있다.

형사정책연구원은 2014년 말 동남아시아 초국가적 사법 협력 개선 프로젝트(IMPROVING CROSS-BORDER JUSTICE COOPERATION IN SOUTHEAST ASIA)를 동남아시아 태평양 지역 센터와 공동으로 진행하고 있다.

본 사업의 중요 내용은 사이버범죄를 포함한 다양한 형태의 신종 초국가적 범죄의 도전에 대응한 지역 내 형사사법공조 개선방안 모색을 위한 학문적·실무적 연구수행과 공동출판, 역내 각국 형사사법공조 중앙기관의 역량강화 지원, 역내 각국 형사사법공조 기관 및 직원의 네트워킹을 위한 형사사법공조 교육훈련 워크숍 공동개최 및 역내 각국의 우수사례와 관련정보의 공유 증진이다.

이를 위하여 2015년 10월 1일부터 2일까지 태국에서 개최된 동남아시아 태평양 지역 형사사법공조 고위급 워크숍에 참석하여 향후 진행될 동남아시아 형사사법공조 방향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2. 2016년 이후 KIC-UNODC 동남아시아 태평양지역센터 공동사업 진행 프로그램

2016년 이후 진행될 사업의 추진방향으로는 크게 3가지가 있다. 첫째, 사이버공간상의 신종마약유통, 마약통제배달, 불법자금세탁, 불법자산환수, 인신매매, 형사사법공조, 반부패 등 역내 개별 현안 중심사업, 둘째, 지역컨퍼런스, 실무그룹 회의, 우수사례 워크숍 등 다양한 회의체 형식 운용, 셋째, 형사사법공무원대상 교육훈련 프로그램 개발과 개별 국가 현안수요에 따른 시행이다.

특히 아시아지역 형사사법통계분야 협력증진을 위한 센터 설립 방향에 대하여 UNODC 제레미 더글라스 소장과의 긴밀한 논의를 진행하였으며, 사이버 공간상의 신종 마약 유통에 대한 형사정책적 대응을 주제로 상호 공동연구를 진행함에 협의하였다.

가. AsiaJust 후속사업(UNODC 지역프로그램 2014-2017) 이행방안 협의

한국형사정책연구원 김한균 국제협력센터장은 2015년 9월 8일 UNODC 동아시아 태평양지역센터 청사 3층에서 AsiaJust 후속사업의 지속적 체계적 수행방안을 위한

실무협의회에 참석하였다. 동 협의회에는 제레미 더글라스 지역사무소장, 최인호 UNODC 파견 부장검사, 심인식 컨설턴트가 배석하였다.

1) AsiaJust 후속사업방향

AsiaJust 사업의 향후 추진은 ① 사이버공간상의 신종마약유통, 마약통제배달, 불법 자금세탁, 불법자산환수, 인신매매, 형사사법공조 및 반부패 등 역내 개별 현안 중심, ② 지역컨퍼런스, 실무그룹 회의, 우수사례 워크숍 등 다양한 회의체 형식 운용, ③ 형사사법공무원 대상 교육훈련 프로그램개발과 개별 국가 현안 수요에 따른 시행 등 3개 형태로 교류사업을 기획 및 추진해 나가는데 의견을 같이 하였다.

본 사업의 내용으로서, 각종 회의는 접근성 및 경비문제를 고려하여 서울, 방콕에서 주로 개최하기로 하였다. 또한, 지역프로그램의 파트너인 ASEAN국가를 고려하여 아세안사무국이 소재한 말레이시아 자카르타 또는 특정대상 국가사업일 경우 베트남 하노이 등지에서도 개최할 것을 협의하였다.

2) 아시아지역 형사사법통계 협력센터 설립추진

김한균 국제협력센터장은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의 아시아지역 형사사법 통계분야 협력증진을 위한 센터설립 추진계획을 설명하였다.

지역센터 설립 및 운영 초기 단계에는 유엔 범죄 동향 조사(UN Crime Trends Survey; UN-CTS)¹¹⁾ 참여율 개선, 범죄통계 국제분류기준 (ICCS)¹²⁾에 대한 이해도 증진, 지역 내 국가범죄 및 형사사법통계 인프라에 대한 기초연구를 수행하고, 장기적으로 역내 국가범죄 및 형사사법 통계자료의 수집분석까지 추진해 나가야할 것이라는 점에 대해 의견을 같이 하였다.

유럽이나 남미 INGEI의 사례와 비교해 볼 때 역내 국가들의 형사사법체계 및 언어의 차이가 크므로 아시아지역에서의 범죄 및 형사사법 통계협력은 지역특성을

11) United Nations Surveys on Crime Trends and the Operations of Criminal Justice Systems (UN-CTS) : 유엔범죄동향 및 형사사법운영 조사는 범죄 및 형사사법체계 관련 정보 분석과 전파의 개선에 목적을 두고 있다. 2001년 제8차 CTS 이래 연례 조사를 시행하고 있다.

12) 통계목적 범죄분류 국제기준(International Classification of Crime for Statistical Purposes; ICCS) : UNODC의 주도로 개발된 국제 통계 기준으로서, 2015년 3월 개최된 제 26차유엔 통계 위원회 및 같은 해 5월에 개최된 제24차 유엔 범죄방지 및 형사사법위원회에 의해 승인되었다.

고려하여 단계적으로 진행되어야 한다는데 의견을 같이 하였다.

제2절 동남아시아 형사사법 협력 사업의 필요성

1. 동남아시아 지역의 범죄 현황

동아시아 지역 특히 동남아시아 지역 국가들은 초국가적 범죄 즉 인신 매매, 마약, 화학물질밀매 및 보호 야생 동물 밀매 등을 통하여 막대한 불법 수익을 올리고 있다. 이들 지역에서 발생하는 범죄는 단순히 한나라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여러 인접 국가들과 관련성이 있으며, 국경지역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

이들 나라들이 초국가적 범죄를 통하여 벌어들이는 불법 수익은 연간 900억 달러로 추정되며 이는 미얀마(2배), 캄보디아(8배), 라오스(13배)의 GDP 보다 높은 수치이다.¹³⁾ 그러므로 이들 지역에서 발생하는 범죄를 예방하고, 능동적이고 효과적으로 범죄를 진압하는 경우 불법 자금을 국가 발전을 위하여 사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UN이 현재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는 지속가능한 발전목표(SDGs)에도 부합하는 것이다.¹⁴⁾

2. 동남아시아 지역의 형사사법 공조의 필요성과 당위성

가. 동남아시아 지역의 형사사법 공조의 필요성

이러한 점에서 동남아시아 지역의 범죄를 효과적으로 진압하고, 능동적으로 예방하기 위해서는 이들 지역에 대한 형사사법공조가 절실하게 필요하다. 형사사법공조는 매우 다양한 영역을 포함하고 있는데 범죄인 인도, 수사사법 공조, 불법자금몰수 등이 대표적인 예이다.

13) UNODC IMPROVING CROSS-BORDER JUSTICE COOPERATION IN SOUTHEAST ASIA CONCEPT NOTE

14) SDGs는 2016년부터 2030년까지 유엔과 국제사회가 달성해야 할 목표를 의미한다. 여기에는 17개의 목적이 있으며 이들 목적에는 빈곤을 종식하고, 기아 및 건강한 삶을 보장하는 등 사회 발전적 측면과 환경적인 지속가능성 및 경제적인 번영까지 포괄하고 있다. 기존의 2000년부터 2015년까지 달성해야 할 8개의 목표(Goals), 21개의 세부목표(Targets)와 성과측정에 활용되는 60개의 지표(Indicators)로 구성되었던 MDGs의 8개의 목표는 1) 절대빈곤 및 기아 퇴치, 보편적 초등교육 달성, 3) 양성평등 및 여성지위 향상, 4) 아동사망률 감소, 5) 모성보건 증진, 6) HIV/ AIDS, 말라리아, 기타 각종 질병 퇴치, 7) 지속가능한 환경 확보, 8) 개발을 위한 글로벌 파트너십 구축이다.

이중에서도 각 나라의 수사주권과 문제되는 영역이 있는데 한 나라에서 발부된 영장을 다른 나라에서도 유효하게 집행 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지 문제가 된다. 이를 위하여 유럽의 경우에는 유로저스트¹⁵⁾를 통하여 허용하고 있다.

그러나 유럽의 문화적·사회적·경제적 환경과 동남아시아의 문화적·사회적·경제적 환경에 차이가 있으므로 유로저스트와 같은 정도의 형사사법공조의 결과를 만들어 내기는 어려울 수 있다.¹⁶⁾

나. 동남아시아 지역의 형사사법 공조의 당위성

유럽과 달리 동남아시아 지역에서 발생하는 범죄의 수준이 날로 확대되고 조직화되고 있으며, 특히 이들 지역에서 이루어지는 인신매매 혹은 마약범죄는 한 나라의 사법기관이 다루기에는 불가능하게 보인다. 그러므로 동남아시아 지역의 형사사법공조는 실천적 이상에 바탕을 두고 진행되어야 할 현실적인 과제인 것이다.

15) 유로저스트는 유럽사법기구라고도 불리우며, 네덜란드 헤이그에 설치되어 있는 EU산하 사법 협력기구이다. EU가입 국가들의 검찰, 경찰, 판사 등 형사사법 분야의 종사자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국경을 초월한 조직범죄의 수사와 각국 당국 간의 협력으로 EU내의 범죄율 하락을 목적으로 설립되었다.

16) 백기봉, 동아태 지역에서의 초국가적조직범죄 척결을 위한 국제협력방안 : 국제협력시스템 구축을 위한 한국의 역할과 과제, 서울국제법연구 제20권 제1호 통권38호, 2013, 71-96쪽.

제2장

KOREAN INSTITUTE OF CRIMINOLOGY

유엔 동남아 지역프로그램 (Regional Programme for Southeast Asia)의 개요

승재현·박상희·김은영

제2장

유엔 동남아 지역프로그램(Regional Programme for Southeast Asia)의 개요

제1절 UNODC 동아시아 태평양 지역센터(Regional Centre for East Asia and the Pacific)의 아태지역 프로그램 (2009-2012) 사업체계 소개

1. UNODC 동아시아 태평양 지역센터의 아태지역 프로그램 사업체계 (Regional Programme Framework) 소개

유엔 마약 및 범죄 사무소(UN Office on Drugs and Crime; UNODC) 동아시아 태평양 지역센터(이하 UNODC 아태지역센터)는 동아시아와 태평양지역 국가들에서 유엔 마약 및 범죄 사무소(UNODC)의 고유업무인 불법마약, 범죄, 테러근절을 위한 기술지원, 정책연구, 국제규범의 국내이행 지원사업을 수행하였다.

아태지역센터가 주관하는 법치주의와 개발을 위한 아태지역 프로그램 사업체계 (2009-2012)는 인류안전(Human Security)의 실현을 목표로, 첫째, 마약밀매와 인신 매매근절, 둘째, 부패방지, 셋째, 형사사법, 넷째, 마약수요의 감소, 다섯째, 마약사용자, 수형자 등 취약집단의 에이즈감염 감소, 여섯째, 마약재배근절과 지속가능한 생계 보장 등 6개의 단위프로그램으로 구성되었다.¹⁷⁾ AsiaJust 프로그램(“Towards AsiaJust”)은 위의 6개 단위프로그램 중 형사사법분야의 사업으로서, 아태지역내 법치주의 실현을 위한 초국가적 사법협력체계의 구축을 목표로 하였다.

17) <http://www.unodc.org/southeastasiaandpacific/en/site-map.html> (UNODC 동남아시아 태평양 지역센터 홈페이지 사이트맵 참조.)

2. 아태지역 프로그램 사업체계(Regional Programme Framework)에 있어서 AsiaJust 프로그램(2009-2013)의 기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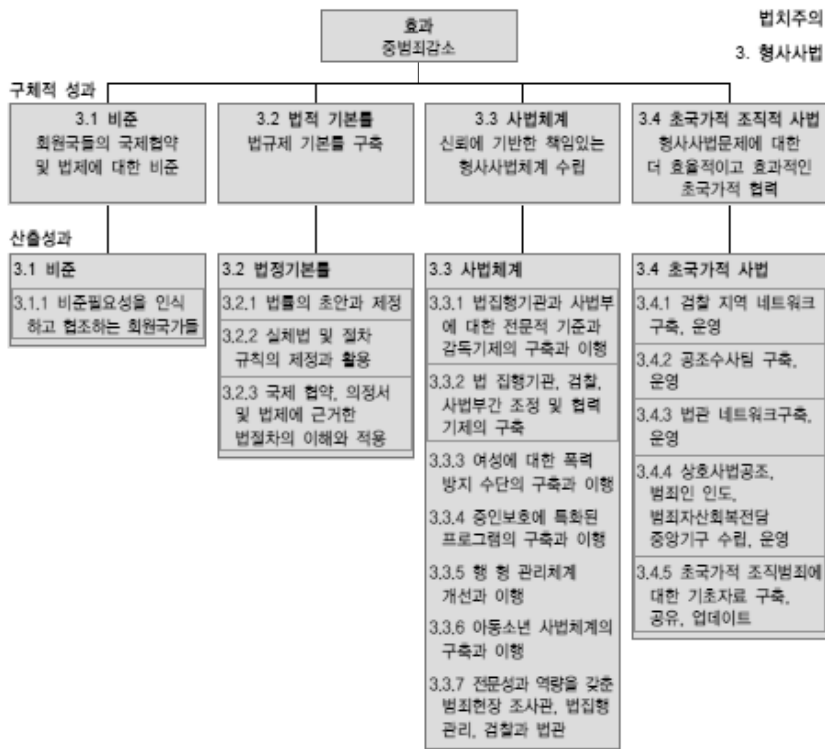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은 2009년 7월 27일 태국 방콕 소재의 UNODC 아태지역센터에서 AsiaJust 프로그램 사업(“Towards AsiaJust”)의 공동추진을 위한 협력협정을 체결하였다.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의 “Towards AsiaJust” 사업은 UNODC 아태지역센터의 아태 지역 프로그램 사업체계(2009-2012) 단위 프로그램 중 형사사법 분야의 사업으로, 아시아와 태평양 지역 내 법치주의 실현을 위한 지역적 기본틀을 마련하는 것을 목표로 하여, 다음의 네 가지 구체적 성과에 중점을 두고 지원하였다.¹⁸⁾

- 아태지역국가들의 마약, 범죄, 테러분야 국제규범 비준
- 마약, 범죄, 테러대응 법규체계 구축
- 공정하고 신뢰할 수 있는, 특히 범죄취약집단에 대처할 수 있는 형사사법체계 구축
- 형사사법현안에 대한 초국가적 협력증진

형사사법 단위프로그램의 ‘목표체계도(Objective Tree<그림 1>)’는 중범죄 감소라는 기대효과에 기여할 구체적 성과 및 산출성과를 명확히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산출성과 부분은 4년 동안 유엔 마약 및 범죄 사무소의 아태지역센터 지원의 최우선적 주안점을 보여주는 것이다.

18)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의 “Towards AsiaJust”사업의 구체적인 사업 내용 및 성과는 제3장 Towards AsiaJust Programme(2009년-2013년)의 개요에서 후술.



[그림 2-1] 2009-2012 유엔 마약 및 범죄 사무소의 구체적 성과 및 산출성과를 제시한
형사사법 단위프로그램 목표체계도

제2절 UNODC 동남아시아 태평양 지역센터(Regional Centre for Southeast Asia and the Pacific)¹⁹⁾의 유엔 동남아 지역프로그램(Regional Programme for Southeast Asia 2014-2017) 소개

1. 유엔 동남아 지역 프로그램(Regional Programme for Southeast Asia 2014-2017)의 개요 및 전략

유엔 동남아 지역 프로그램(Regional Programme; RP)은 2014-2017년 동안 동남아 지역에서의 유엔 마약 및 범죄 사무소(UNODC) 사업에 대한 범위 및 주안점을 포괄한다. 해당 지역 프로그램(RP)은 유엔 마약 및 범죄 사무소(UNODC) 사업의 일관성 있는 프로그램 수행을 위한 기본틀을 제공하는 한편 동남아 지역의 주요 범죄 및 마약에 대한 정책 성과 달성을 위해 각 회원국 및 지역 파트너에 대해 지원사업을 수행한다.

본 지역 프로그램(RP)은 역내 회원국들의 가장 긴급한 지역적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조성되었다. 다음의 다섯가지 주제별 단위프로그램을 망라한다.

- 초국가적 조직범죄 및 불법 인신매매(Transnational Organised Crime and Illicit Trafficking)
- 반부패(Anti-Corruption)
- 테러방지(Terrorism Prevention)
- 형사사법(Criminal Justice)
- 마약, 보건 및 대체 소득원 개발(Drug and Health, and Alternative Development)

이상의 다섯가지 단위프로그램의 각 도전과제 및 활동은 다음과 같다.²⁰⁾

19) 기존 UNODC 동아시아 태평양 지역센터(Regional Centre for East Asia and the Pacific)의 공식명칭이 UNODC 동남아시아 태평양 지역센터(Regional Centre for Southeast Asia and the Pacific)로 바뀌었으며, 대상 지역 프로그램(2014-2017)의 명칭 또한 유엔 동남아 지역 프로그램(Regional Programme for Southeast Asia)으로 명명하여 프로그램의 범위를 동남아 지역으로 한정하였다.

20) <http://www.unodc.org/southeastasiaandpacific/en/what-we-do/index.html> 참조.

가. 초국가적 조직범죄 및 불법 인신매매(Transnational Organised Crime and Illicit Trafficking)

1) 도전과제

동남아시아 및 태평양 지역의 범죄 및 마약 문제는 대부분 다면적(多面的)이며 사실상 초국가적인 특징을 지닌다. 초국가적 조직범죄, 마약의 불법 밀매 및 사용, 인신매매, 이주자 밀거래 뿐만 아니라 불법 목재 거래와 같은 환경 범죄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복합적 위협이, 역내 자금세탁의 용이성 및 취약한 국경 통제 테두리로 인해 점차 확산되고 있는 실정이다.

2) 활동

유엔 마약 및 범죄 사무소(UNODC)는 지속적으로 증대하는 지역적 통합 현상에 대응하여,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²¹⁾의 유관 제도 및 기본틀에 대한 지원을 통해 초국가적 범죄 위협을 파악 및 대처하고 있다. 동시에 경제·사회·정치·안보 문제에 관한 지역 협력의 토대로서 사법정의 및 법치주의를 증진하고자 한다. 초국가적 조직범죄 및 불법 인신매매는 역내의 경제, 사회, 정치, 안보 및 인간 안보에 있어서 중대한 위협을 제기하고 있다. 따라서 본 단위프로그램은 관련 분야 문제의 해결에 집중하고 있다.

나. 반부패(Anti-Corruption)

1) 도전과제

역내 회원국들의 개발과정에 있어서 부패문제는 중대한 장애요소이다. 부패는 불법 목재 제품의 수확 및 생산 과정, 이주자 밀거래 및 불법 노동 기타 범죄 등 도처에서 도사리고 있다. 또한 공무원들의 부패로 인해 역내 인신매매 및 아동 성매매 관광²²⁾(child sex tourism)이 조장되는 측면이 있다.

21)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sociation of South-East Asian nations)은 동남아시아의 지역협력 기구로, 필리핀,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타이, 브루나이, 베트남, 라오스, 미얀마, 캄보디아(가입 순)의 총 10개국으로 구성된다.

22) 성매매 규제가 없는 외국으로의 여행을 의미한다.

2) 활동

유엔 반부패협약(UN Convention Against Corruption; UNCAC)은 역내 반부패 프로그램을 강화하기 위한 종합적인 틀을 제공한다. 2013년 말을 기점으로 역내 회원국들은 형사 집행 및 국제협력 역량 관련 유엔 반부패협약(UNCAC) 준수 여부를 전반적으로 검토하였다.

반부패 노력이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정부의 다양한 분야 및 부서, 시민 단체, 민간 부문을 망라하는 정부 및 사회적 차원의 접근이 요구된다. 부패를 방지하고 관련 문제들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국가적·지역적 역량을 개발하는 것은 여전히 유엔 마약 및 범죄 사무소(UNODC)의 주요 우선과제이며 관련 노력이 현재 진행 중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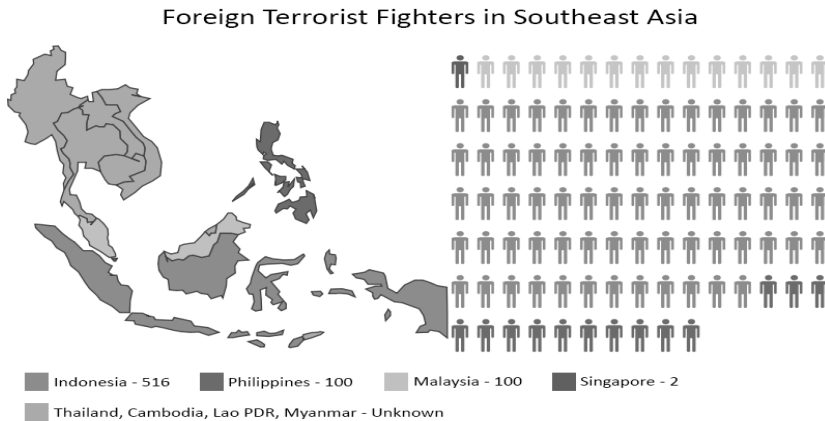
다. 테러방지(Terrorism²³⁾ Prevention)

1) 도전과제

세계화의 물결 속에 오늘날 더 이상 어떠한 국가도 테러의 무풍지대일수 없고 또한 어떠한 국가도 테러문제를 단독으로 대처하기 어렵다. 테러집단은 취약한 대테러 역량을 가진 국가들을 테러의 근거지로 이용하고 있으며, 현재 테러의 위협에 직면하지 않은 국가들의 경우에도 사전에 적절한 대테러 준비를 확보할 필요가 있다.

특히 동남아 지역의 외국인 테러전투원(Foreign Terrorist Fighters; FTF)들의 숫자가 늘어나는 추세이며, 현재 역내 국가의 외국인 테러전투원(FTF)의 숫자는 인도네시아(516명), 필리핀(100명), 말레이시아(100명), 싱가포르(2명) 순이며, 그 외 타이, 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의 경우에는 그 수가 정확히 파악되지 않고 있다(<그림 2> 참조).

23) 미국 중앙정보국(CIA)은, 테러리즘이란 하부국가 조직(subnational groups)이나 비공식 요원(clandestine agents)에 의해 민간인(비전투 대상)을 상대로 사전에 계획된 정치적 목적의 폭력이 행해지는 것을 의미하며 “국제 테러리즘”이라는 용어는 최소 1개 국가 이상의 영역 또는 국민이 관여한 테러행위라고 규정하고 있다. 윌리엄 다이슨(William E. Dyson)은 테러리즘의 시대적 비교를 통해 테러리즘의 정의가 달라지고 있다고 주장하며 일반적으로 테러리즘에 대한 정의는 매우 다의적이고 복잡적이고 이중적인 의미를 내포하게 되는데 이는 테러 또는 테러리즘이 문화적, 정치적, 사회적, 제반여건을 토대로 하여 오랜 기간에 걸쳐 축적 및 형성되어 왔기 때문이라고 한다.



[그림 2-2] 동남아 지역 외국인 테러전투원(Foreign Terrorist Fighters; FTF)²⁴⁾

2) 활동

테러행위에 대한 효율적인 대처를 위해서는 국가적 차원의 대응 및 국제협력이 중요하다. 테러 관련 여러 도전과제에 성공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역량은 각국의 형사 사법 체계에 상당부분 의존하고 있다. 테러범죄 혐의자들에 대해 공정하고 효과적인 사법정의를 집행되는 동시에 법치주의에 합치하는 효율적인 방지 조치가 취해져야 할 것이다.

역내 지도자들은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을 통해 선명하고도 분명한 대테러 정책을 발표하였고 관련 아세안 차원의 협약 및 조약을 채택하였다.²⁵⁾ 국제 대테러 법제²⁶⁾의 비준에 관한 꾸준한 성과의 구축이 진행 중이며 일부 국가의 경우 이미 13개를 비준하였고, 대부분의 국가들이 대테러 관련 법 조항을 두고 있다. 그러나, 다수 국가들의 대테러 관련 법 조항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며, 해당 조항들이 19개

24) <http://www.unodc.org/southeastasiaandpacific/en/what-we-do/terrorism-prevention/index.html> 참조.

25) 아세안 대테러 협약(ASEAN Convention on Counter Terrorism) 및 합의된 아세안 국가들 간의 형사사법공조에 관한 조약(Treaty on Mutual Legal Assistance in Criminal Matters Among Like-Minded ASEAN Member Countries) 등.

26) 유엔 마약 및 범죄 사무소(UNODC)는 테러방지 및 대응을 위한 작업의 일환으로, 각국의 테러에 대한 19개 일반적 법적 규범(universal legal instruments)의 완전한 비준 획득을 지원하고, 이의 이행을 위한 국내 입법마련을 지원한다. 관련 일반적 법적 규범(universal legal instruments)의 세부내용은 <http://www.un.org/en/terrorism/instruments.shtml>을 참조.

법적 규범(universal legal instruments) 모두에 완전히 합치하도록 법제를 수정하여야 한다.

라. 형사사법(Criminal Justice)

1) 도전과제

국제적 기준 및 규범의 확립과 범죄 방지를 위한 경찰 역량의 제고는 지역 형사사법 체계를 개선시키는 데에 필수적이다. 또한 법치주의를 확립하고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며, 특히 성 평등 및 아동의 권리 및 침해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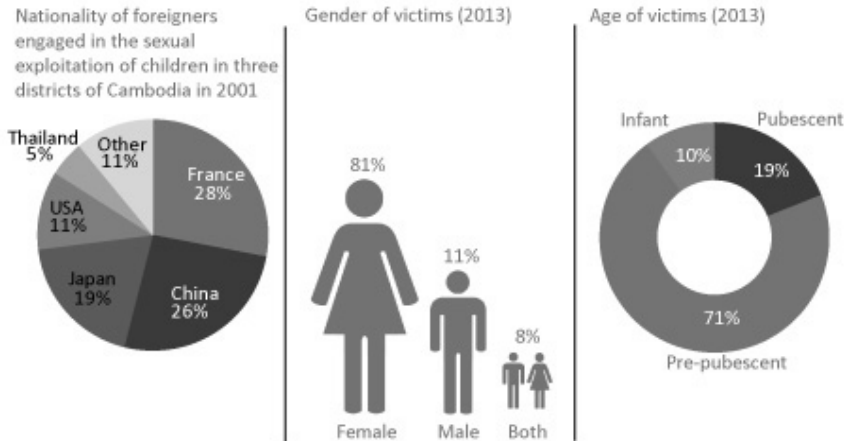
일부 회원국의 경우 여성에 대한 폭력을 범죄화하는 입법이 부실하고 아동을 실정법 상 성인에 준하여 처우하는 경우가 있다. 또한 동남아 지역은 형사사법공조(Mutual Legal Assistance; MLA) 역량 및 네트워크의 부족 및 취약성을 드러내고 있으며 이는 초국가적 조직범죄 근절의 노력을 저해한다. 교도소 관리 체계 역시 각국이 크게 상이하고 해당 관리 체계가 국제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가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

2) 활동

UNODC는 회원국들의 보다 효율적인 범죄 방지를 위해서 증거 기반의 범죄 방지 전략, 실천방안 및 조치를 지원하며, 회원국 및 지역적·국가적 파트너들이 공정하고 효율적인 방식으로 사법정의를 집행할 수 있도록 형사사법체계의 강화를 지원한다. 또한 지역적·국가적 파트너들과 공조하여 국경 관련 형사사법 문제에 대해 보다 효율적인 협력을 도모하는 것을 돕고 있다. 또한 아동 성매매 관광 근절 및 피해자에 대한 적절한 보호 제공을 위해 관련 회원국들에 지속적인 지원을 제공하고 있다. 2013년 유엔 마약 및 범죄 사무소(UNODC) 조사에 의하면 피해자의 성별 중 81퍼센트가 여성이었고, 연령은 사춘기 이전 연령대(Pre-pubescent)가 71퍼센트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그림 2-3> 참조).

교도소 관리 체계의 경우, 교도소 체계를 개혁하고자 하는 회원국들을 지원하기 위한 광범위한 도구를 개발하였고 이는 관련 제도 및 법률 개혁, 교도소 관리 역량 제고, 취약 집단에 대한 보호 및 인권 증진을 포함한다.

Reports and victims



[그림 2-3] 아동대상 성범죄 근절 관련 유엔 마약 및 범죄 사무소(UNODC) 조사 결과²⁷⁾

마. 마약, 보건 및 대체 소득원 개발(Drug and Health, and Alternative Development)

1) 도전과제

유엔 마약 및 범죄 사무소(UNODC)는 합성마약 감시프로그램인 세계합성마약류 프로그램²⁸⁾(Global Synthetics Monitoring: Analyses, Reporting and Trends (SMART) Programme) 연구보고서²⁹⁾에서 경제 통합의 가속화에 따라 동남아 지역의 합성 마약류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아편 및 메스암페타민(methamphetamine)과 같은 암페타민류 각성제(Amphetamine Type Stimulants: ATS)는 동남아 지역에서 지속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다. 따라서 마약 사용자들을 보다

27) <http://www.unodc.org/southeastasiaandpacific/en/what-we-do/criminal-justice/child-sex-offences.html>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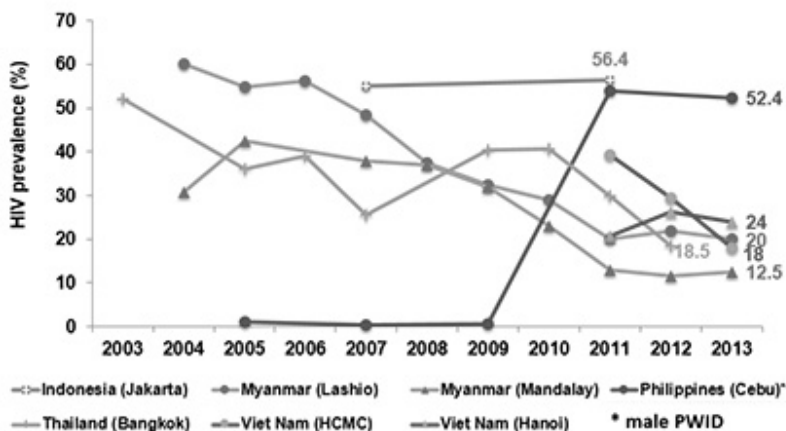
28) 2008년 유엔 마약 및 범죄 사무소(UNODC)가 출범한 합성마약류 감시프로그램으로 유엔 회원국의 역량 강화와 사법당국의 합성마약류 및 전구물질 정보의 생산, 관리, 분석 및 보고 등을 통한 효과적이고 과학적으로 타당한 증거기반 정책 및 프로그램의 고안과 실행이 목표이다. 호주, 캐나다, 일본, 뉴질랜드, 대한민국, 러시아, 태국, 영국 및 미국 정부로부터 재정지원을 받고 있다.

29) http://www.unodc.org/documents/southeastasiaandpacific/Publications/2015/drugs/ATS_2015_Report_web.pdf 참조.

효율적으로 예방, 치료 및 재활시키기 위해서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 또한 전염성 질병의 확산과 같은 위험 요소들로 인해 주사제 마약 사용자(People Who Inject Drugs; PWID)의 사망률이 여타인구들에 비해 높으며³⁰⁾ 이들에 대한 집중적인 치료가 필요하다(ASEAN 국가 및 도시의 주사제 마약 사용자의 HIV 유병률(有病率)³¹⁾에 대한 자료는 <그림 2-4>를 참조).

한편 양귀비 재배 지역의 가난한 농민들에게 지속가능한 생계수단을 제공하기 위한 대체 소득원 개발(Alternative Development; AD)을 지원하여 아편 공급을 감소시키는 것 또한 주요한 도전과제이다.

Trends in HIV prevalence among PWID in ASEAN states/cities where data is available 2003-2013



Source: Prepared by www.aidsdatahub.org based on 1) Integrated Biological and Behavioural Surveys; 2) HIV Sentinel Surveillance Surveys

[그림 2-4] 2003-2013년 ASEAN 국가 및 도시의 주사제 마약 사용자의 HIV 유병률(有病率)³²⁾

2) 활동

유엔 마약 및 범죄 사무소(UNODC)는 각국의 마약 사용자에 대한 예방, 치료 및

30) http://www.unodc.org/documents/wdr2015/World_Drug_Report_2015.pdf
UNODC 세계 마약 보고서 2015(World Drug Report 2015) 참고.

31) 유병률(prevalence)은 대상 집단에서 특정 상태를 가지고 있는 개체의 수적(數的) 정도를 나타내는 측도이다.

32) <http://www.unodc.org/southeastasiaandpacific/en/what-we-do/drugs-health-ad/drug-use-hiv.html> 참조.

재활 노력을 지원하고 있다. 기술적 지원은 주로 CLMV³³⁾ 국가들의 제도적 역량 구축에 집중되어 있으며 특히 의학적 증거 기반 및 예방적 접근방식을 통한 아편과 암페타민류 각성제 문제의 해결에 중점을 두고 있다. 유엔 마약 및 범죄 사무소(UNODC)는 각 회원국들의 세계보건기구(WHO) 및 아세안 정신 보건 대책 위원회(ASEAN Mental Health Task Force)를 포함한 지역적·국가적 차원의 파트너 관계 구축을 지원하고 있다. 또한 회원국 및 아세안 에이즈 대책 위원회(ASEAN Task Force in AIDS; ATFOA) 등과 함께 마약 사용자 및 죄수들을 대상으로 HIV 예방 및 치료 서비스에 대한 접근권을 향상시키는 것에 집중하고 있다. 한편 지난 10년 동안 유엔 마약 및 범죄 사무소(UNODC)는 미얀마와 라오스에서의 대체 소득원 개발(AD) 프로젝트를 추진해 왔으며 회원국들의 지속가능한 대체 소득원 개발 정책 및 프로그램 개발·이행을 지원하고 있다.

2. 2014-2017 동남아시아 지역 프로그램(Regional Programme for Southeast Asia 2014-2017): 동남아시아 지역의 법치주의 증진 및 마약 기타 범죄에 대한 대응³⁴⁾

2014-2017 동남아시아 지역 프로그램(RP)의 활성화를 위해 관련 거버넌스의 구축 및 이행이 중요하다. 지역 프로그램의 전략적 관리·감독 및 지시사항은 프로그램 거버넌스 위원회(Programme Governance Committee; PGC)에 의해 제공된다. 당해 위원회는 동남아시아 태평양 지역센터의 지역사무소³⁵⁾(Regional Office for Southeast Asia and the Pacific; ROSEAP)의 사무적·기술적 지원 및 회원국 대표들을 포함한다. 해당 위원회는 지역 프로그램(RP)의 진척 상황을 검토하고 정책적 지침 및 전략적 조언의 제공을 위해 매년 열리고 있다.

지역 프로그램(RP)에 대한 관리·감독 및 조정의 책임은, 동남아시아 태평양 지역센

33) 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 베트남 이상의 4개국.

34) <http://www.unodc.org/southeastasiaandpacific/en/what-we-do/index.html> 참고.

35) UNODC 동남아시아 태평양 지역센터의 지역사무소는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라오스, 미얀마, 베트남 총 5곳이다.

터의 지역사무소 관리 특별팀(ROSEAP management and expert team)의 지원을 받는 방콕 소재 동 센터의 소장³⁶⁾(Regional Representative)에 있다. 본 지역 프로그램(RP)에 대한 계획, 감시 및 평가에 집중하여 당해 사업의 전반적 프로그램이 상호 합의된 성과의 도출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것을 보장하며, 또한 성과 도출 차원의 정기적 보고를 수행한다.

36) 2013년 봄부터 현재까지 동 센터의 센터장(Regional Representative)은 제레미 더글라스(Jeremy Douglas)이다.

제3장

KOREAN INSTITUTE OF CRIMINOLOGY

Towards AsiaJust Programme (2009년-2013년)의 개요

승재현·박상희·김은영

Towards AsiaJust Programme(2009년-2013년)의 개요

제1절 아시아저스트 프로그램 개발 및 도입단계(2009년-2010년)

1. 2009년도 주요 사업 내용

가. 프로그램 개요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은 2009년 7월 27일, UNODC 동아시아 및 태평양 지역 센터³⁷⁾(United Nations Office on Drugs and Crime Regional Centre for East Asia and the Pacific; 이하 UNODC 아태지역센터)와 협력하여 “Towards AsiaJust Programme(이하 아시아저스트)” 사업공동추진을 위한 협력협정을 체결하였다.³⁸⁾ UNODC 아태지역센터는 한국형사정책연구원에 아시아저스트 프로그램의 주요파트너로서 역할을 맡아 줄 것을 제의해 왔다.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이 아시아 형사사법연구기관 중에서는 이 사업에 기여하는 최초의 연구 기관이었기에 한국형사정책연구원에 대한 국제사회의 기대가 높았다.³⁹⁾ 또한, 유엔형사사법프로그램네트워크 소속 연구기관으로서 아시아 지역 내 국제협력사업을 주도하는데 유리한 위치에 있었다.

37) “UNODC 아태지역센터는 동아시아와 태평양지역 34개 국가에서 유엔마약및범죄국의 고유 업무인 불법마약, 범죄, 테러근절을 위한 기술지원, 정책연구, 국제규범의 국내이행지원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AsiaJust 사업 공동추진 협력협정」, 법률신문, 2009.8.12.

<https://www.lawtimes.co.kr/Legal-News/Legal-News-View?Serial=48404>

38) AGREEMENT between The Korean Institute of Criminology and The United Nations Office on Drugs and Crime, 2009; 「한국형사정책연구원, UN마약및범죄국과 사업협력협정 체결」, 대한변협신문, 2009.8.19.

<http://news.koreanbar.or.kr/news/articleView.html?idxno=4140> 참조.

39) UNODC 아태지역센터 공식홈페이지 소식란 내용(영문). 링크참조.

<http://www.unodc.org/southeastasiaandpacific/en/2009/07/Kic-AsiaJust/story.html>

‘유로저스트⁴⁰⁾’ 설립 배경을 바탕으로 한 아시아저스트 프로그램은 아시아 지역의 특성에 맞게 기획되었다. 2009년부터 2013년까지 진행될 제1 단계 사업으로서는, 국제형사사법공조⁴¹⁾(Mutual Legal Assistance; 이하 MLA)을 담당하고 있는 중앙기관을 포함한 각 지역 국가의 법원, 검찰 및 법집행기관, ASEAN 사무국, Pacific Islands Forum⁴²⁾ 사무국, 국제공조수사팀 등의 전문가와 협력하여 초국가적조직범죄관련 정보교류 네트워크를 구성하게 된다.⁴³⁾

나. 사업 진행방안

아시아저스트 사업의 본격적인 시작을 앞두고 선행 작업으로 2009년 하반기 동안 본 사업의 책임자가 ASEAN(Association of South East Asian Nations) 회원국⁴⁴⁾을 중심으로 초국가적 조직범죄에 대항하기 위해 국가 간 협력과 공조를 통해 초국가적 형사사법체계를 구축하는 것을 목표⁴⁵⁾로 하는 아시아저스트 프로그램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인식시켰다.

40) 유로저스트는 1999년 10월 15~16일 핀란드의 탐페레 유럽이사회 회의에서 유럽 내 중대 범죄에의 대응의 강화를 위해서 상설의 사법 협력 조직이 필요하다는 건의가 나와서 기구 창설이 결정되었다. 이는 네덜란드 헤이그에 설치되어 있는 사법 협력을 담당하는 유럽연합(EU)의 기관이며, EU 각 가입국의 검찰관, 판사, 경찰관, 또는 이들과 동등의 직권을 가지는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다.

https://ko.wikipedia.org/wiki/%EC%9C%A0%EB%9F%BD_%EC%82%AC%EB%B2%95_%EA%B8%B0%EA%B5%AC

41) 국제형사사법공조의 정의에 의하면 “범죄의 예방과 처벌을 목적으로 국가 간에 이루어지는 모든 형태의 협력행위를 의미한다.” 김주덕, 『國際刑事司法共助法』, 『형사정책연구2(’90.11)』한국형사정책연구원, 서울, 1990, 217-240쪽. 이는 “외국으로부터 형사사건의 수사나 재판 등에 관한 공조 요청을 받아 이를 실시하는 경우 또는 외국에 대하여 이를 요청하는 경우의 범위와 절차를 정하고 있다. 범죄 진압 및 예방에 국제적 협력을 증진하기 위해 제정된 법률이다.” 두산백과, 2015. 아래 링크 참조.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1202034&cid=40942&categoryId=31717>

42) Pacific Islands Forum Secretariat은 태평양 도서국가간 협력강화를 목표로 설립된 정부간 기구이다. 홈페이지 <http://www.forumsec.org/> 참조.

43) UNODC 아태지역센터 공식홈페이지 소식란 내용(영문). 링크참조.

<http://www.unodc.org/southeastasiaandpacific/en/2009/07/Kic-AsiaJust/story.html>

44) 이 사업은 그 대상이 동아시아 및 태평양 지역 34개 국가뿐만 아니라, ASEAN, PIF (Pacific Island Forum) 회원국도 포함하여 이들 지역에 2009년부터 2012년 까지 UNODC 범죄방지 및 형사사법 전략을 추진한다. 표 3-1 Towards AsiaJust 단위프로그램 사업계획서 및 장준오 외 2명, 『국제범죄방지를 위한 유엔·국제협력 및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10, 95쪽 참조.

45) <표 3-3> 유엔마약및범죄국 지원의 우선적 산출성과를 제시한 단위프로그램 목표체계도 참조, 위의 책, 91면

아태지역센터가 주관하게 된 아시아저스트 프로그램은 법치주의와 개발을 위한 아태지역프로그램체계 중 형사사법분야의 단위프로그램(sub-programme)이다. 아태지역내 법치주의실현을 위한 초국가적 사법협력체계(regional transnational justice system)의 구축을 목표로 했다. 즉, 아태지역국가들의 마약, 범죄, 테러분야의 국제규범 비준과 마약, 범죄, 테러대응 국내법제개혁을 통해 공정하고 신뢰할 수 있는 형사사법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다. 이를 바탕으로 형사사법현안에 대한 초국가적 협력을 증진한다.

아시아저스트 프로그램 기획은 다음과 같다.⁴⁶⁾

- 1) 구체적 성과 3.1: 유엔 협약의 비준⁴⁷⁾: ASEAN 국가들 중, 인도네시아, 태국, 베트남이 유엔 부패방지협약을 비준하지 않았고, 라오스, 미얀마, 태국, 베트남은 유엔초국가적조직범죄방지협약(UN Convention on Transnational Organized Crime)을 비준하지 않았다. 캄보디아와 라오스만이 동 협약 밀거래 및 이민자관련 의정서 (Trafficking and Migrants protocol)을 비준하였다. 따라서 우선적으로⁴⁸⁾ 라오스, 미얀마, 태국, 베트남, 인도네시아의 국제협약 수용에 중점을 두었다.
- 2) 구체적 성과 3.2: 법적 기본 틀⁴⁹⁾: 국내 입법과 도구의 구축을 위한 지원은 우선적

46) UNODC, 한국형사정책연구원, 『Towards AsiaJust: 동아시아 및 태평양지역을 위한 유엔형사사법 프로그램』,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09

47) 이 단계에서는 회원 국가들의 유엔 협약의 비준 필요성에 대한 인식과 협조를 도모하기 위하여 UNODC 사무총장과 아태지역본부 대표 주도하에 UNODC 임무관련 유엔협약들의 비준촉구를 위한 회원국가 고위급과의 회합 및 협상의 조직과를 개최, 아시아태평양 지역 내 유엔협약의 보편적 비준을 위한 일정계획수립, 회원 국가들의 비준 필요조건 확정과, 비준촉진에 관한 구체적 실천계획을 지원하기 위한 기술적 지원 제공 등의 활동이 포함되어 있다. 더 자세한 내용은 UNODC, 한국형사정책연구원, 『Towards AsiaJust: 동아시아 및 태평양지역을 위한 유엔형사사법 프로그램』,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09, 16-17쪽 참조.

48) “일차적으로 캄보디아, 중국, 라오스, 미얀마, 태국, 베트남을 대상으로 한 범죄 및 형사사법제도 공동연구, 입법 및 정책자문제공, 워크숍, 컨퍼런스, 캠페인행사 공동주최, 교육훈련프로그램 공동개발, 전문가인력파견 등 다양한 형태로 AsiaJust 프로그램 사업사업 기획 및 참여하고 있다.” 연성진 외 4명, 『유엔 및 국제협력 백서』,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09, 95쪽 참조.

49) 법적 기본 틀이란 법률의 초안과 제정의 과정을 의미한다. 먼저 이해관계 있는 협력대상 정부 및 사법기관 및 기존 국내입법에 대한 협력적 조사검토와 유엔협약 및 의정서 조항의 지원을 위한 신규입법 및 개정의 필요성을 파악하였다. 또한 이를 토대로 입법초안실무그룹 구성을 지원하고 입법초안 실행계획 준비를 지속적인 기술적 지원과 전문적인 법률자문 등을 통해 지원하였다. 더 자세한 내용은 UNODC, 한국형사정책연구원, 『Towards AsiaJust: 동아시아 및 태평양지역을 위한 유엔형사사법 프로그램』,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09, 17쪽 참조.

으로 유엔반부패협약이나 유엔 초국가적 조직범죄방지협약을 이미 비준했으나 적합한 국내 이행입법과 도구를 아직 마련하지 못한 3-4개의 이해관계 국가들에 중점을 두었다. 지원이 요구되는 정확한 범위에 따라,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필리핀, 라오스가 우선적으로 선정되었다.

- 3) 구체적 성과 3.3: 사법체계⁵⁰⁾: 사법의 신뢰성 구축과 사법부와 법 집행기관 간의 협력 증진을 위한 지원 역시 지원의 필요성과 범위에 따라, 인도네시아, 필리핀, 캄보디아, 동티모르를 우선 대상으로 하였다. 지원의 범위는 “인도네시아 사법부의 신뢰성 및 역량강화(Strengthening Judicial Integrity and Capacity in Indonesia)” 프로젝트, 단계 I과 II의 실행을 통해 배운 성취와 교훈들을 토대로 하였다.
- 4) 구체적 성과 3.4: 초국가적 조직적 사법⁵¹⁾: 초국가적인 조직적 사법체계의 구축지원에 초점을 맞춘다. 아시아 지역 내 뜻을 같이하는 국가들의 범죄방지를 위한 형사사법협력 증진이 주된 목표다.

50) 이 단계에서는 전문적인 기준과 감독기제 구축에 중점을 두었다.(지역적, 지방적 단위에서) 이해관계 있는 협력대상 정부 및 사법기관을 파악하고 필요성 평가에 기반을 두어, 사법의 신뢰성과 역량강화를 위한 실행계획의 협력적 개발 지원을 하였다. 또한 법관을 위한 관련교육훈련 사업 활동의 개발 및 제공 지원과 무죄추정 원칙을 강조하였다. 더 자세한 내용은 UNODC,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위의 책, 18쪽 참조.

51) 검찰 지역네트워크 구축과 실행에 중점을 두었고 관련 사업 활동들은 1)국제검사협회(IAP) 지역 내 회원의 아시아저스트 프로그램과 실행기초단위에 대한 비전을 공유, 2)실행지침 마련과 지속적 재정기제(임시 사무국지원서비스)에 관한 구상을 포함하는 검찰 네트워크(정보 교류네트워크)구축 지원, 3)연구결과에 대한 지역적 타당성검토회의 조직 및 개최, 고급전문교육훈련 등을 제공하였다. 더 자세한 내용은 UNODC,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위의 책, 19쪽 참조.

〈표 3-1〉 Towards AsiaJust 단위프로그램 사업계획서



UNODC

United Nations Office on Drugs and Crime

동아시아 및 태평양지역을 위한 단위프로그램 사업계획서

개관

“Towards AsiaJust” 프로그램은 독립적이고 신뢰받을 수 있는 사법체계 구축과, 초국가적 형사사법체계를 통해 초국가적 조직범죄에 효과적 대응할 수 있는 역량을 지원함으로써 아시아와 태평양 지역 내 법치주의 실현을 위한 지역적 기본 틀 (regional framework)을 마련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본 프로그램은 다음과 같은 네 가지 구체적 성과에 중점을 두고 지원하게 된다.

1. 아태지역국가들의 마약, 범죄, 테러분야 국제규범 비준
2. 마약, 범죄, 테러대응 법규체계 구축
3. 공정하고 신뢰할 수 있는, 특히 범죄취약집단에 대처할 수 있는 형사사법체계 구축
4. 형사사법현안에 대한 초국가적 협력증진

초국가적 협력증진은 유엔마약및범죄국(UNODC)이 특히 전략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중요한 부분이다. 초국가적 범죄는 초국가적 대응을 필요로 한다. 그러므로 유엔마약및범죄국은 AsiaJust라는 초국가적 형사사법체계를 단계적으로 구축하는 계획을 추진하고자 한다.

효과적인 초국가적 협력을 위한 토대는 다음과 같은 기제들을 통해 구축된다.

: (i) 검찰네트워크 (Prosecutors Network); (ii) 공조수사팀 (Joint Investigation Team); (iii) 사법협력네트워크 (Judicial Liaison Network); (iv) 상호사법공조담당 중앙기관 (Central Authorities in charge of MLA); (v) 초국가적조직범죄관련 정보 교류네트워크 (Information Exchange Network on TOC).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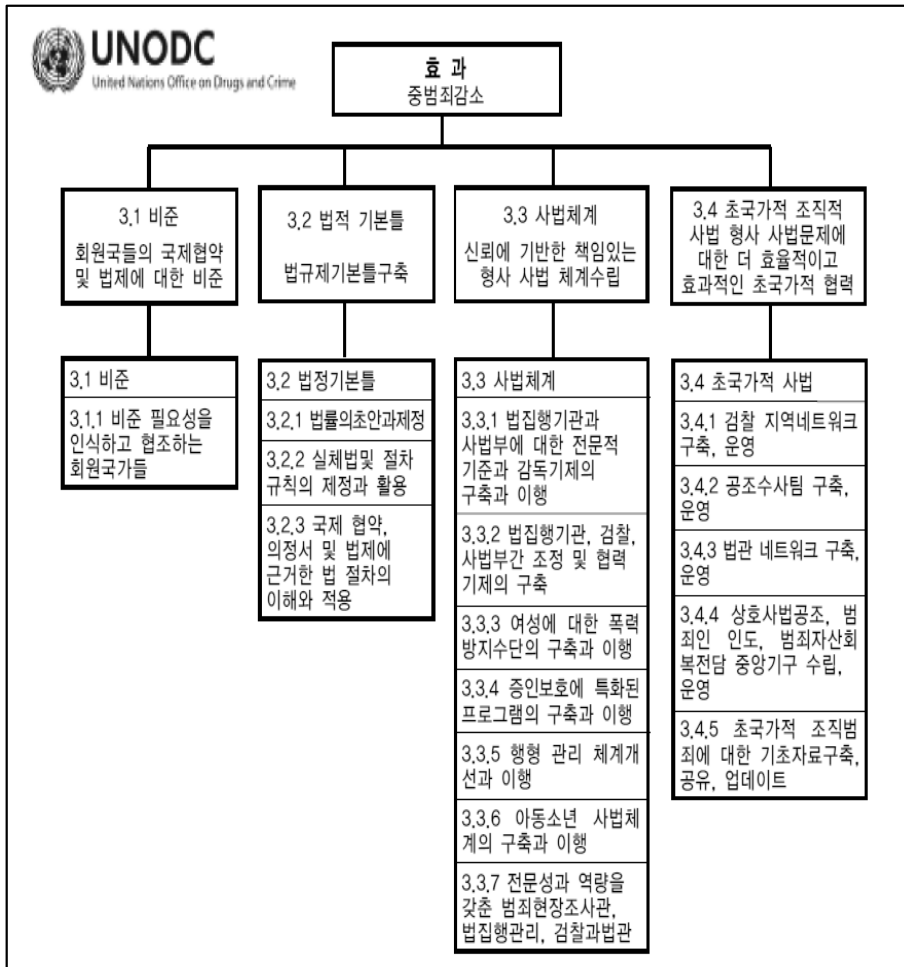
본 프로그램의 주요정부협력기관은 참여국가의 형사사법 및 법 집행기관들이 된다. 본 단위 프로그램에 포함된 기술적 지원(technical assistance)의 실행을 위해 유엔마약및범죄국 아태지역센터는 다음과 같은 서비스와 도구를 균형 있게 조정 활용한다 : (i) 입법 및 정책자문제공; (ii) 시스템개발 지원; (iii) 모니터링과 멘토링; (iv) 기관간, 국가 간, 국제협력의 조정지원; (v) 범죄, 마약, 테러문제에 대한 정책지원 및 인식향상.

〈표 3-2〉 유엔마약및범죄국 성과영역들과의 연계성

사업명칭	형사사법 - 'Towards AsiaJust'
사업기간	4 년
사업시작	2009년 6월
중점대상지역	일차적으로 ASEAN 회원국가들, 동티모르, Pacific Islands Forum(PIF) 회원국가들
유엔마약및범죄국 글로벌전략과의 연계성	〈표 3-2〉 유엔마약및범죄국 성과영역들과의 연계성 참조
지역 프로그램의 구체적 성과	3.1, 3.2, 3.3, 3.4
주요 정부 협력기관	각 지역 국가의 법원, 검찰 및 법 집행기관 특히, 상호사법공조 (MLA)와 범죄인 인도 관할 중앙당국
기타 협력기관	ASEAN 사무국, PIF 사무국, 국제검사협회(IAP), 인터폴, 아세안폴 (ASEANPOL)
목표기금	820만 달러
승인예산	

유엔마약및범죄국 전략 성과영역 (2008~2011) 1.1 1.2 1.3 1.4 2.1 2.2 3.1 3.2 3.3 3.4 3.5 3.6 3.7 3.8		협약 및 의정 서의 비준과 이행	형사 사법 문제에 대한 국제 협력	보다 접근 용이 하며 신뢰성 있고, 효과 적인 형사 사법 체제	테러 방지	위협 및 위험 분석	과학 적, 법의 학적 역량	지역 공동체 중심의 범죄 방지	부패 방지	HIV/ AIDS 예방 및 관리	대안적 개발	마약 중독 자의 치료 및 사회 복귀	교정 시설 개혁	소년 사법	피해자 지원
동아시아 태평양지역을 위한 유엔마약및범죄국 지역프로그램의 기본틀 성과(2009~2011)															
1. 불법 거래	1.1 국경관리	x	x	x		x		x	x						
	1.2 인신매매	x	x	x		x		x	x					x	x
	1.3 마약 및 유사 물질	x	x	x		x	x		x						
	1.4 환경범죄	x	x	x		x			x						
	1.5 밀입국	x	x	x		x		x	x					x	x
2. 부패 방지	2.1 부패방지 지원	x	x	x		x			x						x
	2.2 부패방지 기구	x	x	x		x			x						
	2.3 범죄자산환수	x	x	x		x			x						
	2.4 자금세탁	x	x	x		x			x						
3. 형사 사법	3.1 비준	x	x	x	x										
	3.2 법적인 틀			x			x								
	3.3 사법 체계			x		x			x				x	x	x
	3.4 초국가적 사법	x	x		x										
4. 마약 수요 감축	4.1 방지					x		x							
	4.2 치료					x						x			
	4.3 재사회화							x				x			
5. HIV/ AIDS	5.1 적용범위							x		x			x		
	5.2 전략적 지식					x									
	5.3 사회편입									x					
6. 지속 가능한 삶	6.1 불법작물 모니 터 및 평가					x					x				
	6.2 대체적 생계 수단							x			x				
	6.3 지속가능성 및 보전							x			x				

〈표 3-3〉 유엔마약및범죄국 지원의 우선적 산출성과를 제시한 단위프로그램 목표체계도



아시아저스트 프로그램의 구성과 내용에 따르면 형사사법분야에서 초국가적 협력 증진은 유엔마약및범죄국이 특히 전략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중요한 분야다. 따라서 아시아저스트 프로그램이라는 초국가적 형사사법체계를 단계적으로 구축하는 계획을 추진했다.

아시아저스트 프로그램을 위해 아태지역센터는 입법 및 정책자문제공, 시스템개발 지원 및 모니터링, 교육훈련 (교육프로그램 개발, 우수제도전파), 기관간, 국가 간,

국제협력의 조정지원 (국제 실무자네트워크협의체 설립), 범죄, 마약, 테러문제에 대한 인식 향상 (캠페인, 컨퍼런스) 사업을 기획했다.

2. 2010년도 주요 사업 내용

한국형사정책연구원과 UNODC 아태지역센터의 2010년도 사업계획은 2010년도 실행계획 수립, 프로젝트 실행 팀 확정, 2010년도 프로그램 참여국가 확정 및 협의서 (Letter of Agreement) 확보, 고위급 검사회의 및 전문가회의 등 네 가지 추진항목을 설정하였다.⁵²⁾

가.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원 파견

2009년 7월 한국형사정책연구원과 UNODC 아태지역센터가 아시아저스트 사업 업무협정을 체결한 후,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은 양 기관 간의 본격적인 협력 네트워크 정착을 위해 2010년 6월 1일부터 2010년 10월 31일까지 5개월간 연구원을 1차로 파견하였다. 파견 연구원은 본 프로그램의 코디네이터인 대검찰청 파견 검사와 함께 협력하여 아시아저스트 사업의 기초와 기반을 다지는 연구 활동을 수행하였다.

특히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의 연구원 파견을 통해 UNODC 아태지역센터 실무진 간에 직접적인 업무 수행과 즉각적인 피드백이 이루어질 수 있었고, 아시아저스트 사업의 전반적 진행상황이 파견연구원을 통해 즉각 전달됨으로써, 아시아저스트 사업을 보다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이해가 가능하도록 하는데 기여하였다. 또한, 파견은 초국가적 조직범죄에 관한 사법협력 체제 틀을 위한 발판을 마련하였다는 평가를 받았고, 한국형사정책연구원과 UNODC 아태지역센터, 양 기관 간 활발한 의사소통과 직접적 접촉 및 조율을 통해 협력관계 형성에 기여하였다.⁵³⁾

52) <표 3-4>2009년-2010년도 아시아저스트 사업 활동 개관 참조; 장준오 외 2명, 앞의 책, 105쪽

53) 장준오 외 2명, 앞의 책, 109쪽

〈표 3-4〉 2009년-2010년도 아시아저스트 사업 활동 개관

날짜	내용
2009년 7월	UNODC아태지역센터와 아시아저스트 사업공동추진협력협정 체결 ⁵⁴⁾
2009년 9월	UNODC아태지역센터 및 대검찰청 관계자와 아시아저스트 프로그램 도입 메커니즘 및 세부사항 논의 ⁵⁵⁾
2010년 3월	2010년도 실행계획 수립 ⁵⁶⁾
2010년 4월	프로젝트 실행 팀 확정 ⁵⁷⁾ - 프로젝트 실행 지원팀 - 프로젝트 관리자(Manager) 1명 - 연구원(Researcher) 1명 - 프로젝트 비서(Project Assistant) 1명
2010년 5월	2010년도 참여국가 확정 및 협의서(Letter of Agreement) 확보 ⁵⁸⁾
2010년 6월	형사정책연구원 연구원을 UNODC아태지역센터의 Junior Researcher로 파견 ⁵⁹⁾
2010년 8월	- 한국-ASEAN 검찰 고위급 회의 개최 지원 - 각국 고위급 검사들과 UNODC 아태지역센터 관계자들 형정원 기관 방문 ⁶⁰⁾
2010년 12월	연례보고서 발간 (UNODC-KIC 공동명의로 아시아저스트 연구총서 형태로 발간) ⁶¹⁾

나. 한국-ASEAN 고위급 검사회회의 개최

2010년 8월 23-25일, 한국 대검찰청 15층 대회의실에서 국제적인 범죄수익 환수와 테러자금 지원에 대한 대응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한국-ASEAN 고위급 검사회’가 개최되었다. 본 회의는 UNODC와 대검찰청이 공동으로 주최하였다. ‘범죄수익 환수 및 테러자금 지원에 대응하기 위한 검찰의 역할 (Role of Prosecutor Against Proceeds of Crime and Financing of Terrorism)’이라는 주제⁶²⁾와 4개의 세부세션을 통해 “갈수록 지능화되는 초국가적 범죄와 이를 지원하는 새로운 자금세탁기법⁶³⁾”에 대응하기 위한 협력체제 구축 방안을 협의 하였다.⁶⁴⁾

54) UNODC Regional Centre for East Asia and the Pacific. “Towards AsiaJust: Action Plan for 2010.” October 2009. PowerPoint presentation.

55) UNODC Regional Centre for East Asia and the Pacific. “Towards AsiaJust: Action Plan for 2010.” October 2009. PowerPoint presentation.

56) 장준오 외 2명, 『국제범죄방지를 위한 유엔 · 국제협력 및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10, 103-115쪽

57) 장준오 외 2명, 『국제범죄방지를 위한 유엔 · 국제협력 및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58) 장준오 외 2명, 『국제범죄방지를 위한 유엔 · 국제협력 및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59) 장준오 외 2명, 『국제범죄방지를 위한 유엔 · 국제협력 및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60) 장준오 외 2명, 앞의 책, 111쪽

61) 장준오 외 2명, 앞의 책, 111쪽

62) 표 2 및 「한국+ASEAN 검찰 고위급 회의 개최」, 국제협력단 보도자료, 2010.8. 참조.

63) 테러자금 차단 위한 국제 사법공조 논의, 헤럴드경제뉴스, 2010.8.22.

http://news.heraldcorp.com/view.php?ud=20100822000032&md=20100822104002_BL

64) 테러자금 차단 위한 국제 사법공조 논의, 헤럴드경제뉴스, 2010.8.22.

http://news.heraldcorp.com/view.php?ud=20100822000032&md=20100822104002_BL

먼저 8월 23일 개회식을 시작으로 “자금세탁 대처, 범죄수익·테러자금 환수에 대한 각국의 최근 동향 및 검찰의 역할”과 “자금세탁, 테러 및 그 자금 지원에 대처하기 위한 입법 및 그 적용”이라는 주제로 발표와 토론을 진행했다. 24일에는 “UNODC 검찰 역량 강화 지원 사업”에 대한 소개 발표와 “국제검사협회와 ASEAN의 파트너십”을 주제로 발표와 토론이 이어졌다.⁶⁵⁾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은 회의 중 워크숍을 위한 재정지원을 제공하고 대검찰청 및 UNODC 아태지역센터와 공동으로 협력하여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한 준비와 행정적 지원에 노력하였다. 동 회의의 폐회선언에서 모든 참가국은 초국가적 조직범죄에 대응하여 국제사회의 형사사법관련 전문가들 및 UNODC와 함께 초국가적 사법협력을 위한 법적 제반 마련, 검찰 및 판사 교육훈련, 검사교류프로그램, 국제검사협회·ASEAN·UNODC 아태지역센터와 형사사법적 협력과 파트너십 강화 등을 시행하는 데에 합의 하였다.⁶⁶⁾

〈표 3-5〉 한국+ASEAN 검찰 고위급 회의 일정⁶⁷⁾

일시		내용
8. 23. (월)	09:30 - 10:00	○ 개회식
	10:00 - 13:00	○ Session 1: 자금세탁 대처, 범죄수익·테러자금 환수에 대한 각국의 최근 동향 및 검찰의 역할
	13:00 - 14:30	○ 오찬
	14:30 - 15:30	○ Session 1 속행
	15:30 - 18:00	○ Session 2: 자금세탁, 테러 및 그 자금 지원에 대처하기 위한 입법 및 그 적용
	19:00 - 21:00	○ 환영 만찬
8. 24. (화)	09:30 - 12:00	○ Session 3: UNODC 검찰 역량 강화 지원 사업
	12:00 - 14:00	○ 오찬
	14:00 - 15:30	○ Session 4: IAP와 ASEAN의 파트너십
	15:30 - 17:30	○ Conclusion
	19:00 - 21:00	○ 환송 만찬
8. 25. (수)	10:00 - 12:00	○ 대검 DFC 견학
	12:00 - 14:00	○ 오찬
	15:00 - 17:00	○ 현지 시찰
	19:00 - 21:00	○ 만찬

65) 장준오 외 2명, 앞의 책, 112쪽

66) 김은경 외 9명, 위의 책, 285쪽

67) 장준오 외 2명, 『연구총서 10-16-07』, 한국형사정책연구원.

다. 한국형사정책연구원 방문

한국-ASEAN 고위급 검사회 의 셋째 날인 8월 25일에는 회의에 참여한 각국 고위급 검사들과 UNODC 아태지역센터 관계자들이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을 방문하였다. 참석 고위급 검사와 간부급 인사들이에게 연구원을 소개하고, 아시아저스트 사업과 초국가적 사법협력을 위한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의 다양한 노력을 알리는 기회를 가졌다.

본 방문을 통해 아태지역 국가들과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은 마약, 테러, 인신매매와 같은 초국가적 조직범죄에 대응하여 적극 협력하자는 서로의 공통적인 관심사와 이를 위한 지속적 협력 강화를 하자는 다짐을 확인하였다.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은 2011년 3월부터 주축이 돼 아시아 각 나라의 사법제도에 대한 연구조사를 시작하고 사이버범죄 교육 등 관련 사업들이 추진하며⁶⁸⁾ 2012년까지 UNODC와 함께 역내 다른 나라의 사법시스템 연구조사와 입법·정책 자문, 사법시스템 정비 및 개발 지원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지속적으로 교류협력활동을 펼쳤다.⁶⁹⁾

라. 기타사업

2010년도에는 태국의 형사법 일반 및 형사법상 특수제도 연구 계획을 수립하여, 4권의 태국 형사법 서적이 번역⁷⁰⁾되었고, 태국 자금세탁방지 법안 연구사업 계획이 이루어졌다. 또한 2010년 9월 1일, 라오스, 인도네시아 그리고 각국 해당 아태지역센터 간 협의서(Letter of Agreement)를 체결하여 본 프로그램의 참여에 관한 동의가 이루어졌다.

68) 「아시아 사법협력 주도하는 한국의 리더십」, 연합뉴스, 2010.1.31.
<http://www.yonhapnews.co.kr/society/2010/01/29/0702000000AKR20100129208700004.HTML>

69) 「초국적 亞사법공조체제 구축...한국이 주도」, 연합뉴스, 2010.1.31.
<http://www.yonhapnews.co.kr/society/2010/01/29/0701000000AKR20100129202900004.HTML>

70) 승재현, 『태국 형사법 해석본』,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12.
http://academic.naver.com/view.nhn?doc_id=61593649&dir_id=0&page=0&query=%ED%83%9C%EA%B5%AD%20%ED%98%95%EC%82%AC%EB%B2%95%20%EC%84%9C%EC%A0%81%202010&nbsCategoryId=10315&library=25

제2절 아시아저스트 프로그램 실행단계(2011년-2012년)

1. 2011년도 주요내용

가. 검사교류프로그램 (Prosecutor Exchange Program)

아태지역 검사들이 상호이해를 증진시키고 검사 간 네트워크를 구축할 목적으로 계획된 검사교류프로그램(Prosecutor Exchange Program)의 실행을 위해 태국, 인도네시아, 베트남, 캄보디아 등과 동 프로그램을 시행관련 양해각서 체결 노력을 기울였다. 인도네시아, 태국, 베트남이 본 프로그램에 참여하기를 희망하였으므로 각 해당 국가의 검찰총장에게 공식 초대장이 발송 되었으며 각 해당 국가는 2012년부터 본 검사교류프로그램이 시행될 것을 기대하며 적합한 자질과 자격을 갖춘 검사를 선발하였다.

나.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제2차 파견 연구자 업무

파견 연구원이 아시아저스트 사업의 시행과 UNODC을 지원하기 위해 수행한 업무는 다음과 같다.⁷¹⁾

1) 아시아저스트 사업 지원

- 초국가적 조직범죄에 대항하기 위한 효과적인 전략으로서의 자산회복⁷²⁾ 연구
- 아세안 10개 국가의 검찰조직에 관한 개관 작성
- 자산몰수관련 수사매뉴얼 한-영 번역물 검토 및 교정
- 검사교환 프로그램 시행 준비: 초대장, 콘셉트 노트, 절차와 규정 작성
- 사이버 범죄 워크숍 준비 및 지원: 초대장, 콘셉트노트, 어젠더, 회의록 작성

2) 유엔 마약 및 범죄국 동아시아 태평양지부 업무지원

- 태국을 위한 지역 국가 프로그램(Country Programme for Thailand) 제안서 제출: 소년사범 및 성인사범 수형자 처우 개선

71) 김은경 외 9명, 『2012 유엔·국제협력사업 성과보고서』,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12, 283-284쪽.

72) 장준오 외 2명, 『아시아저스트 사업: Towards AsiaJust Programme Report 2011』,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11, 47-92 쪽.

- UNODC와 인권의 촉진(UNODC and the Promotion of Human Rights)을 위한 제안서 제출: 방콕 선언서⁷³⁾에 기반을 둔 여성 수형자 처우 개선
- UNODC 동아시아 태평양지부 사업, “아동을 위한 프로젝트 (childhood project)” 팀 지원을 위한 아동성매매 관광에 관한 견해서 작성 및 제출: 국내법 제정과 국제적 대응방안
- UNODC 비엔나 본부 요청: UNODC 국장과 주오스트리아 대사와의 회담을 위한 “한국의 UNODC 사업의 기여와 참여”에 관한 기본 자료 제출
- 태국정부가 개최한 “여성 수형자의 삶의 질 향상(Enhancing Lives of Female Inmates⁷⁴⁾)” 프로젝트의 성공과 태국 사법연구원⁷⁵⁾ 발족을 축하. 고위급 외교관 환영회에 관한 UNODC 홈페이지 뉴스 기사 초안 작성
- UNODC 동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인신매매 사업팀을 위한 한국의 인신매매 관련 두 개의 법원 판결문 영문으로 번역, 제공

다. ASEAN 10개국 형사사법체제에 관한 연구 시작

아시아저스트 사업의 대상국들은 상호 간 형사사법체제에 관한 이해가 부족한 실정이며 이는 동 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하는데 걸림돌이 되어 왔다. 사법공조는 일방향이 아니라 쌍방향으로 진행되어야 하므로 해당국가의 사법제도에 관한 연구가 기반이 되어야 아시아저스트 사업의 사법공조체제 구축은 물론 초국가적 조직범죄에 대항하기 위한 초국가적 사법체제 구축이 가능할 것이다. 따라서 한국형사정책 연구원은 사업의 주 대상국인 ASEAN 국가들⁷⁶⁾의 형사사법체제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였다.

73) 『FINAL DECLARATION OF THE REGIONAL MEETING FOR ASIA OF THE WORLD CONFERENCE ON HUMAN RIGHTS』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 참조.
faculty.washington.edu/sw/whiting/pols469/Bangkok_Declaration.doc

74) <http://www.bangkokdialogue.org/about-the-bangkok-dialogue/speakers/hrh-princess-bajrakitiyabha/>

75) 태국 사법연구원 (Thailand Institute of Justice): <http://www.tijthailand.org/main/en>

76) 첫 연구대상 국가로 베트남과 필리핀을 선정하여 각 해당국가의 형사사법체제 연구를 수행하였다. 본 연구의 제1절은 필리핀의 형법의 체계, 필리핀 형법총칙의 주요 내용, 필리핀 형법각칙의 주요 내용 그리고 필리핀 형사법 연구의 시사점 및 후속과제를 다루었고, 제2절은 베트남 형법의 성립과 특징, 형벌 가중사유와 세분화, 베트남의 형사절차에 대해 다루고 있다. 장준오 외 2명, 『아시아저스트 사업』,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11, 34-44쪽

라. 자금몰수 및 환수 매뉴얼 작성 시작

자금몰수/환수는 초국가적 조직범죄에 대응책으로 매우 효과적임에도 불구하고 동 프로그램의 대상국인 ASEAN 회원국들은 자금몰수/환수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한국형사정책연구원에서 UNODC 아시아저스트 사업 수행을 위해 파견된 연구일력은 자금몰수/환수에 관한 안내서⁷⁷⁾를 2011년 3월에 작성하였으며 안내서에는 최신 자금세탁 범죄 동향과 자금몰수/환수에 있어서 선진국인 국가들의 기법과 사례 등이 포함되었다.

마. UNODC-ITU (International Telecommunication Union)⁷⁸⁾ 사이버범죄 대응에 관한 아태지역 워크숍 공동 개최⁷⁹⁾

ITU(International Telecommunication Union)⁸⁰⁾와 공동으로 2011년 9월 서울에서 사이버 범죄 대응에 관한 아태지역 워크숍을 개최하였다. 본 워크숍에는 사업의 중점대상국인 ASEAN 회원국들은 물론, 태평양 연안 국가, 몽고, 부탄, 아프가니스탄 등의 국가들이 참여하였으며, 민간부분, 국제기구, 연구기관 또한 참여하였다.

한국형사정책연구원에서는 김일수 원장, 장준오 국제형사사법센터장, 이원상 부 연구위원 등 총 8명이 본 워크숍에 참여하였다.⁸¹⁾

77) 장준오 외 2명, 『아시아저스트 사업』,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11, 47-92쪽

78) "In May 2011, ITU and UNODC signed a Memorandum of Understanding (MoU) to collaborate globally on assisting Member States in mitigate the risks posed by cybercrime with the objective of ensuring secure use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ies." 자세한 내용은 <http://www.itu.int/en/ITU-D/Cybersecurity/Pages/UNODC.aspx> 참조.

79) 참가자 명단 및 워크숍 아젠다, 자세한 회의 의제별 심의 내용은 장준오 외 2명, 『아시아저스트 사업: Towards AsiaJust Programme Report 2011』,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11, 113-147쪽 참조.

80) 국제전기통신연합(ITU, International Telecommunication Union)는 국제주파수 분배 및 전파기술·전기통신망 표준화를 논의하는 정부 중심의 국제기구로서 189개 회원국과 600여 개의 민간회원으로 구성되어있다. 주요 사업은 개발도상국에 대한 기술 지원, 범세계적인 전기통신표준화 촉진, 각국 무선국 간 유해한 혼선 방지를 위하여 효율적인 주파수 스펙트럼의 관리 및 이용도 제고하고 있고, 대한민국은 1952년도에 ITU 가입하였다. 자세한 내용은 국제전기통신연합 [International Telecommunication Union] 정보통신관련 국제기구 지식정보원, 2009. 7. 31.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2273020&cid=51299&categoryId=51305>와 국제전기통신연합 공식홈페이지 (영문) <http://www.itu.int/en/Pages/default.aspx> 참조.

81) 김은경 외 9명, 위의 책, 287쪽

1) 회의목적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이 UNODC와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는 아시아저스트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개최된 본 회의는 사이버범죄 관련 전문가와 아시아·태평양 지역내 검사간의 연락망구축을 위해 개최되었다. 더불어 상호 교류를 통하여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발생하는 사이버범죄에 더욱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개최되었다. 사이버범죄자들은 나날이 더욱 교묘한 수법으로 국경선을 넘나들며 범죄를 저지르고 있다. 그러나 각 국가의 법집행기관들은 빠른 속도로 발전하는 새로운 정보통신기술에 대한 지식 부족으로 인해 사이버범죄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고 있었다. 이에 UNODC와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은 이번 워크숍을 통해 아시아·태평양의 법집행기관 종사자들을 한자리에 모아 최근의 사이버범죄 유형 및 동향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자 하였다. 본 워크숍에는 유엔 산하기구인 국제전기통신연합(International Telecommunication Union, ITU), IMPACT 및 Symantec과 같은 민간 사이버보안 업체들이 참가하였고, 한국인터넷진흥원을 포함한 다른 전문가집단이 참여하였다. 한국형사정책연구원에 서도 이원상 부연구위원이 회의 둘째 날 Session 5의 발표자로 참여하였다.⁸²⁾

2) 참가자 명단

〈표 3-6〉 한국형사정책연구원: 김일수 원장 외 8명⁸³⁾

성 명	직 함	비 고
김일수	원장	
장준오	선임연구위원	
이원상	부연구위원	
이윤미	전문연구원	
최주영	연구원	
이창진	연구원	
Michael Joyce	연구원	
심인식	연구원	
차보람	인턴연구원	

82) 『아시아저스트 사업: Towards AsiaJust Programme Report 2011』,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11, 113-147쪽 참조.

83) 『아시아저스트 사업: Towards AsiaJust Programme Report 2011』,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11, 114쪽 참조.

〈표 3-7〉 원외참석자: UNODC 아태지역사무소장 Mr. Gary Lewis 외 65명⁸⁴⁾

	성 명	직함 및 기관	국 가
1	Mr. Khalil Urahman Kabirzada	AFCERT Officer, Ministry of Comm IT	아프가니스탄
2	Mr. Reaz Ahmed Sheikh	Deputy Secretary, Ministry of Post & Telecom	방글라데시
3	Mr. Sonam Dorji	Assistant Legal Officer	부탄
4	Ms. Mian Yie Yeo	Counsel, Attorney General's Chambers	부르나이
5	Ms. Karen Chai Mei Tan	Counsel, Attorney General's Chambers	부르나이
6	Mr. Vanrath Phann	Chief Prosecutor Prosecution Office to the Banteay Meanchey Provincial Court of First Instance	캄보디아
7	Mr. Bunkheang Seng	Prosecutor, The General Prosecution Office to the Supreme Court	캄보디아
8	Mr. Hean Davuthda	Assit. DG, Ministry of Posts & Telecom	캄보디아
9	Mr. Ricardo Sitinjak	Head of International Relation, Attorney General Office	인도네시아
10	Ms. Raden Eddyana Djuanita Prawirakusuma	Prosecutor, Attorney General Office	인도네시아
11	Mr. Luat Sihombing	Staff Inspectorate, Ministry of CIT	인도네시아
12	Mr. Haryu Widhiputranto	Officer Telecom Service, Ministry of CIT	인도네시아
13	Mr. Mohan Virhani	Officer Legal, Ministry of CIT	인도네시아
14	Mr. Hajirajabi	Info Security Expert, TCI Co.	이란
15	Mr. Ahmadian	Security Expert	이란
16	Mr. Amphonesak Thepphoumy	Ministry of Post and Telecom	라오스
17	Mr. Langsy Sibounheuang	Deputy Supreme People's Prosecutor	라오스
18	Mr. Khamphet Somvolachith	Director of Treaties and International Cooperation Division	라오스
19	Mr. Nur Atina Markiman	Federal Counsel, International Affairs Division, Attorney General's Chambers	말레이시아
20	Mr. Mohamad Sazly Musa	IMPACT	말레이시아

84) 『아시아저스트 사업: Towards AsiaJust Programme Report 2011』,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11, 115-117쪽 참조

48 동남아시아 형사사법 협력(AsiaJust) 사업 정책성과 연구

	성 명	직함 및 기관	국 가
21	Mr. Amarjargal Tsoijil	The Information, Com, Technology and Post	몽골리아
22	Mr. Batbold Toiruul	Communications Regulatory Commission	몽골리아
23	Mr. Win Myint	Deputy Director General, Union Attorney General's Office	미얀마
24	Ms. Maw Maw Aye	Director, Chief Information Officer, Union Attorney General's Office	미얀마
25	Mr. Jhalak Thapa	Assit. Director, NTA	네팔
26	Mr. Kailash Neupane	Deputy Director, NTA	네팔
27	Mr. Muhammad F Murawat	National telecom & Info Technology	파키스탄
28	Mr. Ian Godfrey Mileng	NICTA	파푸아뉴기니
29	Mr. Severino Hunt Jr Gana	Senior Deputy State Prosecutor, Department of Justice	필리핀
30	Mr. Leo Dofiles	Philippines National Police	필리핀
31	Mr. Jason Antonio Amante	City Prosecutor, Office of the City Prosecutor, Marikina City	필리핀
32	Mr. G Kannan	Deputy Senior State Counsel State Prosecution Division	싱가포르
33	Mr. Fetufou Aiono	Asst. CEO, Policy, Ministry of Com & IT	사모아
34	Mr. Christopher Ong Siu Jin	Deputy Senior State Counsel Economic Crimes and Governance Division	싱가포르
35	Mr. Thanongsak Sukhanindr	Director of Info Development, NBTC	태국
36	Mr. Sorajj Sriput	Legal Officer, NBTC	태국
37	Mr. Ayothai Ngodngam	Public Prosecutor, The office of the Attorney General	태국
38	Ms. Pinthip Leelakriangsak Srisanit	Public Prosecutor, The office of the Attorney General	태국
39	Mr. Alexandre Freitas	Ministry of Infrastructure	티모르 라세테
40	Ms. Mai Thi Huong Truong	Senior Prosecutor, The Supreme People's Procuracy of Vietnam	베트남
41	Ms. Ngan Khanh Nguyen	District-Level Prosecutor, The Supreme People's Procuracy of Vietnam	베트남

	성 명	직함 및 기관	국 가
42	Ms. Anh Hai Do	Deputy Director, VINCERT	베트남
43	Mr. Alisdair Walker	Political Counsellor British Embassy Seoul	영국
44	Mr. San-Dae Han	Prosecutor General of the Republic of Korea	대한민국
45	Dr. Il-Su Kim	President of Korean Institute of Criminology	대한민국
46	Mr. Jongryeol Suh	Korea Internet & Security Agency	대한민국
47	Ms. Gillian Murray	Chief, Conference Support Section, Focal Point for Cybercrime, UNODC	
48	Mr. Gary Lewis	Regional Representative, UNODC	바베이도스
49	Mr. Keebong Paek	Public prosecutor, Judicial advisor, UNODC	대한민국
50	Ms. Eun-Ju Kim	Regional Director, ITU	
51	Mr. Ashish Narayan	Advisor, ITU	
52	Mr. Marco Obiso	ITU	
53	Dr. Raymond Choo	University of South Australia	
54	Dr. Minwoo Yun	Hansei University	대한민국
55	Dr. Heung Youl Youm	Professor, Soonchunhyang University	대한민국
56	Mr. Anuj Singh	IMPACT	
57	Mr. Kai Koon Ng	Sumantec	
58	Mr. Jinhyun Cho	Korea Internet & Security Agency	대한민국
59	Ms. Sunyoung Park	Junior researcher, UNODC	대한민국
60	Ms. Duangjai Pattanarudee	Project assistant, UNODC	태국
61	Ms. Tanitta Virayavanich	Secretary, ITU	태국
62	Mr. Gi Young Cky	Supreme Prosecutors' Office	대한민국
63	Mr. Wan Keun Jeon	Supreme Prosecutors' Office	대한민국
64	Ms. Eun Jin Kim	Supreme Prosecutors' Office	대한민국
65	Mr. Kwang Jae Lee	Supreme Prosecutors' Office	대한민국
66	Mr. Chi Heoun Song	Supreme Prosecutors' Office	대한민국
67	Mr. Deok Soo Woo	Supreme Prosecutors' Office	대한민국

3) 일정

사이버범죄 대응에 관한 아태지역 워크숍의 개최사⁸⁵⁾는 한상대 대검찰청 총장, Mr. Gary Lewis UNODC 아태지역사무소장, 김은주 ITU 방콕사무소장, 김일수 한국 형사정책연구원장, 서종렬 한국인터넷진흥원장의 순으로 진행되었다.

이어 총 27편의 발표가 (1) 워크숍 개관, (2) 사이버범죄와 경제적 영향 개관 I, (3) 사이버범죄와 경제적 영향 개관 II, (4) 국가별 사이버범죄 대응실태 및 도전과제, (5) 국제 법규적인 접근 / 사이버범죄 대처 규제체제, (6) 사이버범죄 대처의 기술적인 방안 I, (7) 사이버범죄 대처의 기술적인 방안 II, (8) 사이버범죄 대처-사례분석, (9) 사이버범죄 대처를 위한 국제 및 지역적 협력: 동향과 실제, (10) 원탁토의, (11) 결론 등 총 11개 세션으로 나뉘어 진행되었다.

〈표 3-8〉 워크숍 일정⁸⁶⁾

2011년 9월 21일 (1일차) 사이버범죄 대처 : 현 상황 평가	
0830 - 0900	등록
09:00 - 09:50	개회 Session : 환영사 : a) 대검찰청 한상대 검찰총장 b) UNODC Mr. Gary Lewis c) ITU 김은주 박사 d) 형사정책연구원 김일수 원장 e) 한국인터넷진흥원 서종렬 원장
09:50 - 10:15	1 Session : 워크숍 개관 발표 : 백기봉 검사, UNODC
10:15 - 10:30	휴식
10:30 - 12:00	2 Session : 사이버범죄와 경제적 영향 I 목표 : 이번 세션은 사이버 데이터와 시스템의 기밀성, 안정성 그리고 가용성을 침해하는 형태의 사이버범죄, 사이버 상에 불법내용을 게재하는 행위, 저작권과 상표권과 관련된 범죄, 컴퓨터 관련 범죄, 사이버 테러리즘, 사이버 전쟁, 사이버 돈세탁 및 피싱 등을 포함한 사이버범죄 유형을 참가자들에게 소개하기 위함. 또한 이번 세션은 사이버 범죄의 경제적인 영향에 관해서도 논의함. 사회자 : Mr. Gary Lewis, UNODC 발표자 : a) 사이버범죄의 개관(Dr. Marco Gercke, Cybercrime Research Institute) b) 국제조직범죄단체와 사이버범죄(Dr. Raymond Choo, University of South Australia)

85) 자세한 개최사 참여자들의 주요 발언 내용은 『아시아저스트 사업: Towards AsiaJust Programme Report 2011』,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11, 121-123쪽 참조.

12:00 - 13:30	오찬
13:30 - 14:30	3 Session : 사이버범죄와 경제적 영향 II 목표 : 세션 2의 목표와 동일함. 사회자 : Mr. Gary Lewis, UNODC 발표자 : a) 사이버범죄의 경제적 영향(Dr. Marco Gercke, Cybercrime Research Institute) b) 사이버공간에서의 돈세탁(윤민우 박사, 한세대학교)
14:30 - 15:00	휴식
15:00 - 17:00	4 Session : 국가별 사이버범죄 대응실태 및 도전과제 목표 : 발표로 참가하는 국가들이 사이버범죄 수사 시 겪는 실제적인 문제점 등을 다른 참가자들에게 소개하기 위함. 사회자 : 백기봉 검사, UNODC 발표자 : a) 필리핀 b) 베트남 c) 미얀마 d) 대한민국
2011년 9월 22일 (2일차) 검찰수사와 기술적 현실 간 차이 극복	
09:00 - 10:00	5 Session : 국제 법규적인 접근 / 사이버범죄 대처 규제체제 목표 : 이번 세션은 사이버범죄 문제와 관련한 상이한 시각을 다루기 위해서 국제적 지역적 법 규제체에 관해 논할 것임. 사회자 : 장준오 국제형사사법센터장, 형정원 발표자 : a) 사이버범죄 관련 국제입법동향(이원상 박사, 형정원) b) 사이버범죄 관련 국제조약적인 측면(Ms. Gillian Murray, UNODC) c) ITU의 사이버범죄관련 이니셔티브(Mr. Ashish Narayan, ITU)
10:00 - 10:30	휴식
10:30 - 12:00	6 Session : 사이버범죄 대처의 기술적인 방안 I 목표 : 이번세션은 사이버범죄 대응에 사용되는 기술적 방안을 참가자들에게 소개하기 위함. 사회자 : 김은주 박사, ITU 발표자 : a) 사이버범죄 대처의 기술적인 방안(염흥렬 교수, 순천향대) b) 컴퓨터 사건 대응 팀 - 사이버범죄에 있어서의 역할 (Mr. Anuj Singh, IMPACT) c) 사이버범죄 대처의 기술적 해결책(Mr. Kai Koon Ng, Symantec)
12:00 - 13:30	오찬
13:30 - 14:30	7 Session : 사이버범죄 대처의 기술적인 방안 II 목표 : 세션 6의 목표와 동일함. 사회자 : 김은주 박사, ITU 발표자 : a) 국가 컴퓨터보안 사건 대응팀의 국제적 협력 : 한국 인터넷 침해대응센터의 경험 (조진현 선임연구원, 한국인터넷진흥원) b) 사이버범죄 대처 협력도구(Mr. Mohamad Sazly Musa, IMPACT)
14:30 - 15:00	휴식
15:00 - 17:00	8 Session : 사이버범죄 대처 - 사례 분석 목표 : 발표로 참가하는 국가들이 사이버범죄 수사 시 겪는 실제적인 문제점 등을 다른 참가자들에게 소개하기 위함. 사회자 : 백기봉 검사, UNODC 발표자 : a) 타일랜드 b) 브루나이 c) 라오스 d) 싱가포르 e) 인도네시아

86) 『아시아저스트 사업: Towards AsiaJust Programme Report 2011』,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11, 118-120쪽 참조

4) 세션별 주요발표 내용⁸⁷⁾

2011년 9월 23일 (3일차) 사이버범죄 대처 국제협력	
09:00 - 10:00	9 Session : 사이버범죄 대처를 위한 국제 및 지역적 협력 : 동향과 실제 목표 : 이번 세션은 사이버범죄 대처를 위한 국제협력의 실태와 국제·지역적 협력을 통해 얻어진 교훈, 그리고 현재 진행되고 있는 이니셔티브 등을 참가자들에게 소개하기 위함. 사회자 : Ashish Narayan, ITU 발표자 : a) 사이버범죄 국제적 대응에 있어서 UNODC의 역할(Ms. Gillian Murray, UNODC) b) 사이버범죄 입법에 관한 ITU의 이니셔티브(Mr. Marco Obiso, ITU)
10:00 - 10:30	휴식
10:30 - 12:00	10 Session : 원탁회의 목표 : 이번 세션은 사이버범죄 대응에 있어서 향후 국제협력을 증진시킬 수 있는 절차를 모색하기 위함. 사회자 : Mr. Gary Lewis, UNODC
12:00 - 12:30	결론 Session 목표 : 참가자로부터 이번 워크숍에 대한 피드백(feedback)을 듣고 이번 워크숍에 참가한 것에 대한 감사를 표하기 위함. a) 진경준 검사, 대검찰청 b) 김은주 박사, ITU c) Mr. Gary Lewis, UNODC
12:30 - 13:30	환송 오찬

i) 워크숍 개관

제 1세션에서는 이번 워크숍의 전반적인 진행순서를 개관하기 위해 기획되었으며 UNODC 아태지역사무소 선임검찰법률자문관 백기봉 검사의 사회로 진행되었다. 백기봉 검사의 이번 워크숍의 진행순서 및 의제에 관한 개관 이후 참석자들의 간략한 자기소개가 이어졌다.

ii) 사이버범죄와 경제적 영향 개관 I

제 2세션에서는 ‘사이버범죄와 경제적 영향 I’을 주제로 컴퓨터 데이터 및 시스템의 기밀성, 안정성 그리고 가용성을 침해하는 형태의 사이버범죄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또한 사이버 상에 불법내용 게재, 저작권 및 상표권 침해 범죄, 사이버 테러리즘, 사이버 전쟁, 사이버 상에서의 돈세탁 및 피싱 등과 같은 사이버범죄 유형과 동향을 참가자들에게 제공하였고, 사이버범죄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도 집중논의 하였다. 본 세션에서는 ‘사이버범죄의 개관’과 ‘국제조직범죄단체와 사이버범죄’에

87) 세션별 주요발표 내용은 『아시아저스트 사업: Towards AsiaJust Programme Report 2011』,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11, 123-141쪽을 토대로 작성하였다.

대하여 발표 및 논의가 있었다.⁸⁸⁾

iii) 사이버범죄와 경제적 영향 개관 II

제 3세션에서는 ‘사이버범죄와 경제적 영향 II’를 주제로 제 2세션에 이어 계속해서 논의하였으며 ‘사이버범죄의 경제적 영향’과 ‘사이버공간에서의 돈세탁’에 대한 발표와 논의가 있었다.

iv) 국가별 사이버범죄 대응실태 및 도전과제

제 4세션에서는 ‘국가별 사이버범죄 대응실태 및 극복과제’라는 주제로 진행되었다. 이번 세션은 워크숍 참가국들이 실제로 사이버범죄를 수사를 진행하면서 경험했던 실질적인 문제점 및 교훈 등을 서로 공유하고 상호간의 이해를 증진시키기 위해 계획되었다. 필리핀, 베트남, 미얀마 그리고 대한민국을 포함한 총 4개국의 발표로 구성되었다.

‘필리핀의 사이버범죄 동향(Cybercrime Trends in Phillipines)’, ‘베트남의 사이버범죄(Cybercrime in Vietnam)’, ‘미얀마의 사이버범죄 동향 보고(Cybercrime Trend Report of the Republic of the Union of Myanmar)’ 그리고 대한민국의 ‘공격목표(Targeting)’라는 주제가 발표되었다.

v) 국제 법규적인 접근 / 사이버범죄 대처 규제체제⁸⁹⁾

국제 법규적 접근/사이버범죄 대응 규제체제라는 주제로 진행된 제5세션에서는 사이버범죄 문제와 관련한 상이한 시각을 다루기 위해서 국제적 지역적 법규체제에 관해 논하고 이와 관련한 최신 동향을 알아보았다. 본 세션에서는 ‘사이버범죄 관련 국제입법동향(Global trends in Cybercrime legislation)’, ‘사이버범죄 관련 국제조약 현황(An International Treaty on Cybercrime? Current Status)’과 ‘ITU의 사이버범죄 관련 아젠다(Global Cybersecurity Agenda)’에 대한 발표와 논의가 있었다.

88) 제 2세션 발표자들의 주요 발언요지는 『아시아저스트 사업: Towards AsiaJust Programme Report 2011』,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11, 124-126쪽 참조.

89) 『아시아저스트 사업: Towards AsiaJust Programme Report 2011』,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11, 131쪽 참조.

vi) 사이버범죄 대처의 기술적인 방안 I

제6세션에서는 ‘사이버범죄 대응의 기술적인 방안(Technical Measures to Combat Cybercrime)’이라는 주제로 진행되었다. 제5세션이 사이버범죄 대응에 있어서 법적인 측면에서 해결책을 모색하였던 것에 반해, 제6세션은 기술적인 측면에서 사이버범죄 해결책을 모색하려 했다는 점에서 제5세션과 구별된다. ‘사이버범죄 대응의 기술적인 방안(Technical measures to fight Cybercrime)’, ‘사이버범죄에 있어서 컴퓨터 사건 대응팀의 역할(Computer Incidence Response Team - Role in combating Cybercrime),’ ‘사이버범죄 대처의 기술적 해결책(Technology solutions to fight Cybercrime)’에 대한 발표와 논의가 진행되었다.

vii) 사이버범죄 대처의 기술적인 방안 II

제7세션은 제6세션과 같은 ‘사이버범죄 대처의 기술적인 방안’이라는 주제로 진행되었다. ‘한국 컴퓨터 보안사건 대응 팀의 국제적 협력/경험(Cross-Border Cooperation of National CSIRT : KrCERT/CC's Experience)’과 ‘사이버범죄 척결의 협력도구(Collaboration tools for combating Cybercrime)’에 대한 발표와 논의가 있었다.

viii) 사이버범죄 대처-사례분석

제8세션은 제4세션과 같이 ‘국가별 사이버범죄 대응실태 및 극복과제’라는 주제로 진행되었다. 태국, 브루나이, 라오스, 싱가포르 그리고 인도네시아 대표단이 발표자로 참여하였고, ‘태국에서의 사이버범죄(Cybercrime in Thailand),’ ‘(사이버범죄에 관련한) 브루나이의 관점(BRUNEI Darussalam's Perspective),’ ‘라오스의 사이버범죄 대응 노력,’ ‘사이버범죄에 대한 싱가포르 정부의 대응,’ ‘인도네시아의 사이버범죄 기소(Prosecution of Cybercrime Offences in Indonesia)’를 주제로 한 발표와 논의가 있었다.

ix) 사이버범죄 대처를 위한 국제 및 지역적 협력: 동향과 실제

제9세션은 ‘사이버범죄 대응을 위한 국제 및 지역적 협력: 동향과 실제(International and Regional Cooperation in fighting Cybercrime : Trends and Practices)’라는 주제로 진행된 되었고 이번 워크숍 참가자들에게 국제협력의 실태와 국제·지역적 협력을 통해 얻어진 교훈, 그리고 현재 진행되고 있는 사이버범죄 대응 관련 이니셔티브

브 등을 소개하였다. ‘전 세계적 사이버범죄 대응에 있어서 UNODC의 역할,’과 ‘사이버범죄 입법에 관한 ITU의 이니셔티브’에 대한 발표가 있었다.

x) 원탁토의 및 결론

제10세션의 원탁토의(Roundtable Discussion)는 제1~9세션에서 논의된 사항을 확인하고 이를 바탕으로 워크숍결과 성명서 작성하였다. 결론세션은 제10세션에서 작성한 워크숍결과 성명서를 채택하였다. 제10세션과 결론세션을 통해 다음의 ‘아시아태평양 사이버범죄 대응 워크숍 결과 성명서⁹⁰⁾’가 채택되었다.

2. 2012년도 주요내용⁹¹⁾

가. 사업 조직체계의 준비

1)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제3차 연구자 파견

2012년 4월 15일 제3차로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제3차 연구원을 파견하였다.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이 UNODC 아태지역센터와 체결한 파견계약 서류에 기재되어 있는 연구 활동 및 단순한 사업지원을 넘어서, 보다 실무적이고 실제적인 업무 행과 아시아저스트 사업과 관련한 파트너십 형성 및 향후 지속적이고 성공적인 사업을 위한 역할을 적극적으로 수행하였다.

나. 연구사업

1) 상호사법공조 (Mutual Legal Assistance) 연구⁹²⁾

본 연구의 목적은 아시아태평양지역 내 국가들 (특히 ASEAN 10개국과 한국, 중국,

90) 『아시아저스트 사업: Towards AsiaJust Programme Report 2011』,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11, 142-147쪽 참조.

91) 2012년도 주요내용은 김은경 외 9명, 『2012 유엔·국제협력사업 성과보고서』(한국형사정책연구원 발간)를 토대로 하여 작성하였다.

92) Paek, Keebong (UNODC). "MLA Treaty Among Like-minded ASEAN Countries: Senior-level Workshop on Mutual Legal Assistance in East-Asia and the Pacific." July 2012. PowerPoint presentation.
https://www.unodc.org/documents/southeastasiaandpacific/2012/07/mla-workshop/UNODC_-_ASEAN_MLA_Treaty_as_of_9_July_2012.pdf

일본, 호주, 뉴질랜드)의 상호사법공조 실무자들이 양자/다자간 상호사법공조를 좀 더 효과적으로 사용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을 찾기 위한 것이다.

양자 간 상호사법공조와 관련해서는 각 국가의 상호사법공조에 관한 국내법과 관련한 자료 수집/분석을 해오고 있으며 특히나 양국공통범죄성인정 (dual criminality) 및 공조 요청경로 (Channels of Transmission) 등 다양한 법적 기술적 부분에 초점을 두고 연구를 진행하였다.

또한 상호사법공조 고위급 실무자 회의에서 발표된 자료들도 본 연구에 중요한 자료로 활용하였으며, 다자간 상호사법공조와 관련해서는 현존하는 타 지역 내 다자간 상호사법공조 네트워크와 아태지역에 존재하는 ASEAN 국가 간 맺은 다자간 상호사법공조 네트워크를 비교법적 측면에서 분석하였다.

상기 6개 다자간 상호사법공조 네트워크에 관한 연구 자료는 7월 11일 부터 12일까지 열린 “아시아태평양 상호사법공조 고위급 실무자 회의⁹³⁾”에서 발표되었다.

이후 9월 5일부로 상호사법공조에 관한 연구 보고서⁹⁴⁾를 제출하였으며 본 연구에는 아시아태평양지역 내 국가들 중 ASEAN 10개국과 한국, 중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의 상호사법공조에 관한 법률 및 통계 등을 분석하였다. 본 연구서는 2012년 아시아리스트 연례보고서⁹⁵⁾에 수록하였다.

2) 자금몰수 관련연구

12월에 개최된 자금몰수에 관한 워크숍에서 발표된 연구 자료를 중심으로 자료를 수집하였다. 보고서의 초점은 자금몰수에 ASEAN + 5개국(한국, 중국, 일본, 호주 그리고 뉴질랜드)의 법규에 관한 비교분석적인 측면에서 진행 되었다. 이미 다른 지역에서 운영되고 있는 자금몰수 네트워크를 분석하는 부분도 본 연구에서 다루었다. 특히 The Camden Asset Recovery Inter-Agency Network(CARIN)⁹⁶⁾ 자금몰수 네트워크가 중점적 검토 대상이다.

93) <https://www.unodc.org/southeastasiaandpacific/en/events/2012.html>

94) 『Manual on Mutual Legal Assistance and Extradition』, UNODC, 2012
https://www.unodc.org/documents/organized-crime/Publications/Mutual_Legal_Assistance_Ebook_E.pdf

95) 김은경 외 9명, 『2012 유엔 · 국제협력사업 성과보고서』,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12, 288쪽

96) <https://www.europol.europa.eu/content/camden-asset-recovery-inter-agency-network-carin-leaflet>

다. 아시아저스트 프로그램과 UNODC를 위한 기술적 지원

1) 검사교류프로그램 관련

UNODC의 검사교류프로그램(Prosecutor Exchange Programme(PEP))과 2010년 8월에 개최된 ‘한-아세안 고위급 회의’ 후속 조치에 따라, 라오스의 소울리야봉 검사(Mr. Xansana Souliyayong)가 2012년 4월 30일부터 2012년 6월 22일까지 총 8주간의 일정으로 한국을 방문하였으며 이 기간 중에 대검, 서울중앙지검, 서울남부지검, 형사정책연구원에 체류하며 연수를 받았다.⁹⁷⁾

한국의 검찰제도, 수사실무(신문기법 포함) 및 공판 참관, 특별 수사와 조직범죄 수사 실무·사례, 한국의 과학수사 실무·사례, 형사사법분야의 국제협력, 한국의 압수·수색제도 및 범죄수익환수제도에 관해 연수를 받았다.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수기간 중에는 행정원 기능 및 역할 소개와 연구 성과 공유, 사이버 범죄방지를 위한 가상포럼 소개 및 논의를 하였고 라오스 및 우리나라 형사사법체계 이해 도모를 위한 월례집담회를 개최하였다. 라오스 검사의 업무 수행과정에서 관한 사항을 주간보고서 형태로 보고 받았다. 라오스 검사의 한국 방문으로 시작된 첫 번째 검사교류프로그램이 성공적으로 종료되었으며, 아시아저스트 팀은 라오스 검사의 최종 보고서를 토대로 검사교류프로그램의 실효성에 대해서 평가한 후 향후 프로그램의 지속 여부에 관한 논의를 진행하였다.

2) UNODC 본부 주관 사이버 워크숍 참가 및 지원활동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은 2012년 5월 7-8 일 양일간 방콕에서 개최된 사이버범죄 관련 교육훈련 워크숍⁹⁸⁾ 사무국역할을 담당하였다. 워크숍 종료 후에는 본 워크숍에 관한 내용을 기사형식으로 작성하여 UNODC 홈페이지에 게재하였다.

97) “The Prosecutor Exchange Programme (PEP) involving Lao PDR and Republic of Korea was launched. A prosecutor from Lao PDR successfully completed an eight-week programme in Korea, carrying out research on the legislature and investigation and confiscation systems in Korea for the purposes of AML”

출처: UNODC 홈페이지

<http://www.unodc.org/southeastasiaandpacific/en/topics/criminal-justice/index.html>

98) UNODC global cybercrime study workshop. 관련기사 아래 링크 참조

<http://www.unodc.org/southeastasiaandpacific/en/2012/05/cybercrime-workshop/story.html>

3) 아시아태평양 상호사법공조 고위급 실무자 워크숍 개최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은 본 워크숍의 개최를 위해 필요한 Conceptual Note 및 초청 편지 작성, 장소물색, 참가자선정 등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였다. 당시 ASEAN 10개국 및 한국과 일본의 참가는 결정되었으며 호주, 뉴질랜드, 중국과는 계속해서 접촉하여 본 워크숍의 참여를 유도하였다.

또한 UNODC가 개발한 상호사법공조 Tool⁹⁹⁾을 본 워크숍 참가자들 앞에서 시현할 수 있도록 이와 관련한 업무도 진행 하였다. 아시아저스트 팀은 7월 11일 부터 12일 까지 태국 방콕에서 “아시아태평양 상호사법공조 고위급 실무자 회의”를 개최하였다. 본 회의는 말레이시아를 제외한 ASEAN 9개국과 한국과 일본에서 약 20명의 참가자들이 참여하였으며 성공적으로 마무리 되었다고 평가하였다.

특히 본 회의의 마지막에는 참가자 전원이 “Report on the Meeting of Senior-level Workshop on Mutual Legal Assistance in East Asia and the Pacific¹⁰⁰⁾,” 문서를 함께 작성하고 채택하였다. 본 회의의 가장 큰 의의는 각 국가의 고위급 실무자들간 비공식 상호사법공조 Channel이 구축되었다는 데 있다. 본 연구원은 다자간 상호사법공조 네트워크에 관한 발표를 담당하였다.

4) 소년사법 워크숍 참가

UNODC 본부의 요청으로 아시아저스트 팀은 2012년 6월 12일 부터 15일 까지 태국 방콕에서 개최된 소년사법 워크숍에 UNODC 아태지부를 대표하여 참여하였다. 본 워크숍은 총 23개국에서 파견된 약 250명의 실무자와 학자 그리고 아태지역 내 국제기구 등이 참여한 대규모의 워크숍이다.

아시아저스트 팀은 회의의 첫째 날인 12일 그리고 셋째날인 14일 UNODC 아태지부의 Regional Programme Framework, 아시아저스트 사업 그리고 소년사법과 관련한 국제법규 등을 소개하였고, 15일에는 Ban Kanchanpisek Juvenile Vocational

99) Mutual Legal Assistance Request Writer Tool 관련 정보 링크 참조. <https://www.unodc.org/mla/en/index.html>

100) “Report on the Meeting of Senior-level Workshop on Mutual Legal Assistance in East Asia and the Pacific” 원문 (영문)은 아래 링크 참조. https://www.unodc.org/documents/southeastasiaandpacific//2012/07/mla-workshop/Report_of_the_Meeting_on_the_MLA_workshop.pdf

Training Centre for Boys 및 Sirindhorn Juvenile Vocational Training Centre for boys의 태국 내 소년사법 관련 기관들을 방문하여 아시아저스트 사업과의 연계성을 모색하였다. 향후 UNODC 아태지부에서 소년사법과 관련한 업무는 아시아저스트 팀이 담당할 것이며 이는 UNODC 아태지부 사업에 행정원이 더욱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아시아저스트 사업에 소년사법과 관련된 업무를 추가시키려는 노력을 계속 진행하였으며, 이를 위해 7월 3일 UNODC 의 Project Childhood팀과 함께 태국 방콕에서 아동권리에 관한 주제로 열린 워크숍에 참여하였다. 또한, 국제연합아동기금(UNICEF) 아태지역 사무소에서 소년사법관련 업무 담당자와 향후 협력에 관한 논의를 진행하였다.

2012년 10월 초 소년사법과 관련한 워크숍을 개최할 목표로 하고 워크숍에는 국제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을 포함한 지역 내 UNPNI 기관 그리고 국제시민단체 등이 포함되도록 추진했으나 소년사법워크숍의 개최는 현재 잠정적으로 연기되었다.

UNODC 아태지역센터 본부장, 한국검찰청 파견 검사 그리고 본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은 소년사법 워크숍을 조속히 개최할 수 있는 방향으로 UNODC 본부 및 관련 실무자들과 논의를 진행하였다. 본 연구원은 아태지역 국가들의 소년사법과 관련한 자료를 수집하고 정리하는 역할을 계속해서 진행하였다.

5) 초국가적 조직범죄위협도 평가 (Transnational Organized Crime Threat Assessment (TOCTA)) 관련업무¹⁰¹⁾

UNODC 아태지역 사무소가 지난 1년간 준비한 연구 자료로 2012년 10월 이를 공식적으로 출간할 예정이다. 본 연구원은 UNODC 아태지역 사무소장에게 상기 보고서와 관련한 업무를 주도적으로 해줄 것을 요청받았으며, 이를 위해 Executive

101) 본 TOCTA 연구서에 관한 Feedback을 받기 위해 지역 내 20여개의 국가 그리고 ASEAN, The Pacific Island Forum, Interpol 등 국가 간 협력기구에 전송하였으며 이들의 Feedback을 수집하고 이를 보고서에 반영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TOCTA 보고서 중 Heroin 및 Counterfeit Goods에 관한 Chapter의 연구방법에 관한 검증 작업 또한 담당하고 있으며 또한 본 연구원은 TOCTA 보고서 공식 출간에 앞서서 미디어 관련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인신매매에 관한 보도 자료를 작성 완료하였다. 또한, Facebook 및 Tweeter 등과 같은 소셜미디어의 활용에 관한 방안도 관련 실무자들과 논의하고 있으며 UNODC 아태지역 홈페이지에 본 보고서를 효과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 웹페이지를 작성하였다.
<http://www.unodc.org/eastasiaandpacific/en/tocta/index.html?testme>

Summary, Speaker Note, Fact Sheet 등 관련 문서들의 집필 그리고 홍보업무 등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였다.

본 보고서에 이용된 연구방법론적인 측면에서 문제가 없는지에 관한 작업 또한 수행하였다.

6) 제4회 아시아범죄학 대회에서 아시아저스트 홍보활동

2012년 8월 20일 부터 22일 까지 한국 서울에서 형사정책연구원이 개최한 “제 4회 아시아범죄학대회”에 참여하여 아시아저스트의 홍보 업무를 담당하였는데, 약 200부의 소책자 배포를 통해 아시아범죄학 대회 참가자들에게 아시아저스트 사업을 홍보하였다. UNODC 아태지역사무소장인 Mr. Gary Lewis에 관한 보도 자료를 작성하여 언론사에 배포하였으며, Mr. Gary Lewis에 관한 기사¹⁰²⁾가 여러 뉴스미디어에 소개되었다. 이를 통해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이 주도하고 있는 아시아저스트 사업을 언론을 통해 소개하는 기회도 마련하였다.¹⁰³⁾

7) HONLEA Meeting 참가¹⁰⁴⁾

HONLEA Meeting은 UNODC 본부차원에서 매년 각 지역에서 개최하는 회의로 각 지역의 법집행기관의 선임급 실무자들이 참여하여 마약에 관한 정보를 공유하는 회의이다.¹⁰⁵⁾ 2012년 아태지역의 HONLEA Meeting은 태국 방콕에서 10월 29일 ~ 11월 2일까지 개최되었으며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의 파견 연구원은 UNODC 본부와 UNODC아태지역 사무소의 연락담당기관으로 활동하며 본 회의의 성공적인 개최를

102) 「서울서 열린 제4회 아시아범죄학대회, 22일 성황리 폐막 UN 마약범죄국 아·태지역 대표, '초국가적 범죄조직' 동향 발표」, News1Korea, 2012.8.22., <http://news1.kr/articles/?786086>

「형사정책연구원, 20~23일 제4차 아시아범죄학대회 개최」, 법률신문, 2012.8.16., <https://www.lawtimes.co.kr/Legal-News/Legal-News-View?Serial=66339>

103) 더 자세한 내용은 UNODC 홈페이지 참조.

<http://www.unodc.org/eastasiaandpacific/en/2012/08/acs-meeting/story.html>

104) 더 자세한 내용은 UNODC 홈페이지 참조.

<http://www.unodc.org/eastasiaandpacific/en/2012/10/honlea/story.html>

105) 「Heads of National Drug Law Enforcement for Asia-Pacific meet to counter illicit drugs」, UNODC ROSEAP, 2012.10.30.,

<https://www.unodc.org/southeastasiaandpacific/en/2012/10/honlea/story.html>
관련 기사 참조.

위해 공헌하였다.

또한 회의기간 동안 대검찰청, 경찰청, 식약청, 해경 등에서 참가한 대한민국 대표단을 수행하는 역할도 담당하였다. 회의의 종료 후 식약청에서 2014년 HONLEA Meeting을 한국에서 개최하고 싶다는 의사를 피력하였으며 파견연구원을 통해 식약청과 UNODC 본부를 연결하여 한국에서 본 회의를 2014년에 개최할 수 있도록 추진할 것을 보고하였다.

8) (UNODC Opium Survey for Southeast Asia) 2012 출간 홍보

(UNODC Opium Survey for Southeast Asia 2012) 는 지난 10월 28일 미얀마 네퓸타에서 진행되었다. 계속해서 상황이 악화되고 있는 미얀마의 아편(헤로인) 재배 현실과 요사이 미얀마가 추진하고 있는 개혁개방 정책으로 인해서 이번 행사에는 전 세계의 많은 언론이 관심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이루어 졌다.

한국형사정책연구원 파견연구원은 방콕에서 본 행사의 미디어 홍보담당을 맡아 방콕주재 유수 미디어 주재원들 (BBC, 알자지라, 월스트리트 등)과 UNODC 아태지역 사무소를 연결하는 역할 및 기사배포, CD 롬 제작 등의 다양한 역할을 수행하였다.

9) 범죄수익환수(자금몰수) 아 · 태지역 전문가 워크숍 개최

아시아저스트 팀은 2012년 12월 4-5일 '아시아태평양 범죄수익환수 네트워크 구축 준비를 위한 전문가 회의¹⁰⁶⁾ (Expert Meeting to develop Asset Recovery Inter-Agency Network for Asia and the Pacific, ARIN-AP)'를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에서 개최하였다.

본 범죄수익환수 회의는 아시아저스트 사업이 추구하고 있는 지역 내 검찰/법집행기관 간 준 공식(Semi-formal) 협력 네트워크 구축의 일환으로 개최되었다. 당시 UNODC는 본부차원에서 범죄수익환수 네트워크 구축에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¹⁰⁷⁾.

106) 아시아태평양 범죄수익환수 네트워크 구축 준비를 위한 전문가 회의 성과
<http://www.unodc.org/documents/southeastasiaandpacific/2012/12/arinn/Conclusions.pdf>

107) 「UNODC promotes Asia Pacific asset recovery inter-agency network」, UNODC ROSEAP, 2012.12.6.
<http://www.unodc.org/southeastasiaandpacific/en/2012/12/arinn-meeting/story.html>

유럽의 국가들이 주축이 되어 설립된 Camden 자금몰수 네트워크¹⁰⁸⁾를 모델로 한 남아프리카 지역의 ARIN-SA¹⁰⁹⁾와 남아메리카 지역의 RRAG¹¹⁰⁾는 UNODC 본부의 자금세탁방지(Anti-money laundering) 부서가 주축이 되어 설립 되었다. 아태지역의 범죄수익환수 네트워크 (ARIN-AP) 는 아시아저스트 사업이 주축이 되고 UNODC 본부가 지원을 하는 형태로 추진되고 있는 것이 차이점이 있다.

다른 지역 네트워크와의 협력도 꾀한다. 현재 유럽과 북미(CARIN), 남아메리카(RRAG), 남아프리카(ARINSA) 지역에서 각각 네트워크가 형성돼 활동 중이다.

주요 회의 의제로는 다음과 같다.

- 아태지역 국가들의 범죄수익환수 네트워크 필요성 인식 증대 방안
- 기타 기관의 아태지역 범죄수익환수 네트워크 사무국 역할 수행가능성 타진
- 아태지역 범죄수익환수 네트워크 설립에 있어서 다른 지역의 자금몰수 네트워크의 교훈
- 회의의 결과를 바탕으로 내년 상반기 중 '설립 총회' 추진 가능성 타진

〈표 3-6〉 범죄수익환수 전문가워크숍 주요 참가자 현황

	Country	Name	Position	Organization
1	Australia	Mr. Michael PETTY	Law Enforcement Advisor	Anti-MoneyLaunderingAssistanceTeam InternationalLegalAssistanceBranch Attorney-Attorney-General's Department
2	Costa Rica	Ms. Natalia SARKIS FERNANDEZ	Prosecutor	General Attorney Office
3	Indonesia	Ms. Apsari DEWI	Head of Sub Division of International Cooperation	Indonesian Attorney General's Office

108) Camden Assets Recovery Interagency Network

https://en.wikipedia.org/wiki/Camden_Assets_Recovery_Interagency_Network

109) 남아프리카 범죄수익환수 네트워크 (ARIN-SA) <http://new.arinsa.org/>

110) 남아메리카 범죄수익환수 네트워크 (Red de la Recuperación de Activos de GAFISUD) <http://www.gafilat.org/content/cooperacion/#1>

	Country	Name	Position	Organization
4	Indonesia	Mr. Chuck SURYOSUMPENO	Chief of Asset Recovery Task Force	Indonesian Attorney General's Office
5	Japan	Mr. Kazuu WAKAEDA	Official	International Safety and Security Cooperation Division, Foreign Policy Bureau, Ministry of Foreign Affairs of Japan
6	Malaysia	Mr. Sani Bin AB HAMID	Director/Project Manager	Special Taskforce, Attorney General's Chambers' Malaysia
7	Malaysia	Mr. Shahidi Bin SAMSUDIN	Financial Investigator	Special Taskforce, Attorney General's Chambers' Malaysia
8	Malaysia	Mr. Mohamad Zamri ZAINUL ABIDIN	Senior Assistant Commissioner	Malaysian Anti-Corruption Commission
9	Singapore	Mr. Keng Siong KOW	Senior State Counsel	Attorney-General's Chambers
10	Thailand	Ms. Intranee SUMAWONG	Executive Director	International Affairs Department Office of the Attorney General
11	UK	Ms. Jill THOMAS	Specialist	Europol
12	UNODC	Ms. Jennifer BRAMLETTE	Programme Manager/Senior Advisor	
13	UNODC	Mr. Fitz-Roy DRAYTON	Adviser (Asset Forfeiture/Anti-Money Laundering/Proceeds Of Crime)	
14	UNODC	Mr. Keebong PAEK	Senior Prosecutorial and Judicial Adviser	
15	UNODC	Mr. Inshik SIM	Criminal Justice Researcher	
16	UNODC	Ms. Duangjai PATTANARUDEE	Project Assistant	

제3절 아시아저스트 프로그램 후속사업 단계(2013년)

1. 2013년도 주요사업 내용

2013년에도 지난 사업기간의 성과를 기반으로 하여 아시아저스트사업의 목표인 지역 내 초국가적 형사사법 협력 기본 틀 구축'을 위한 다양한 노력이 전개되었다. 주요 사업의 성과로는 아태지역 불법자금환수 네트워크 (Asset Recovery Inter-Agency Network for Asia and the Pacific; ARIN-AP) 창설, 동남아시아 및 주변국 상호사법공조 네트워크 (Network for Mutual Legal Assistance among ASEAN and Neighbouring States) 구축, 그리고 제 2회 검사교환 프로그램 실행을 들 수 있다.

가. 아시아태평양 불법자금환수 네트워크

1) 제1회 아시아태평양 불법자금환수 네트워크 설립관련 전문가 회의 개최

가) 개최 배경

2013년 4월 UNODC 동남아시아태평양 지부에서 발간한 초국가적 조직범죄 위협도 평가보고서(Transnational Organized Crime in East Asia and the Pacific - A Threat Assessment)¹¹¹⁾에 따르면 동아시아 및 태평양 지역에서 매년 미화 약 90조 달러의 불법자금이 생산된다. 이 수치는 동남아시아에 위치한 미얀마 국내총생산의 2배, 캄보디아의 8배 그리고 라오스의 13배에 달하는 천문학적인 규모이다. 이러한 불법자금은 초국가적 조직범죄단체들이 그들의 불법사업을 계속해서 확장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지역 내 안보 그리고 경제발전에도 큰 위협이 되고 있다.

이를 통해 볼 때 불법자금환수는 초국가적 조직범죄 집단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법자금환수는 매우 어려운 일이다.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UNODC는 회원국들의 실무담당자들이 불법자금환수 역량을 갖추고 불법자금환수 네트워크(Asset Recovery Inter-agency Network, ARIN) 구축을 적극적으로 장려하는 노력을 전개하고 있다.

111) 초국가적 조직범죄 위협도 평가보고서 아래 링크 참조.

https://www.unodc.org/documents/data-and-analysis/Studies/TOCTA_EAP_web.pdf

세계적으로 현재 운영되고 있는 불법자금환수 네트워크는 유럽 국가들이 주축이 된 Camden Asset Recovery Inter-agency Network (CARIN)¹¹²⁾, 남아메리카 국가들이 중심이 된 Red de la Recuperación de Activos de GAFISUD (RRAG)¹¹³⁾, 그리고 남아프리카 국가들이 회원국인 ARIN South Africa (ARIN-SA)¹¹⁴⁾이다. 하지만 우리나라와 아시아저스트 사업의 중점 대상국인 동남아시아 지역에는 불법자금환수 네트워크가 구축되어 있지 않으며 이로 인해 동 지역 내 형사사법기관들은 초국가적 조직 범죄집단에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다.

나) 회의의 목적

아태지역 내 불법자금환수 네트워크 구축의 필요성을 인지한 아시아저스트 사업팀은 지역 내 불법자금환수 네트워크 창설 가능성을 타진하기 위한 목적으로 2012년 12월 4일과 5일 양일간 ‘제1차 아태지역 불법자금환수 네트워크 창설 전문가 회의 (Expert Meeting to develop Asset Recovery Inter-Agency Network in Asia and the Pacific, ARIN-AP)’를 개최하였다.

한국의 대검찰청과 UNODC 동남아시아태평양 사무소가 공동으로 개최한 본 회의에는 상기 언급된 CARIN¹¹⁵⁾, RRAG¹¹⁶⁾, 그리고 ARIN-SA¹¹⁷⁾ 사무국 관계자들 뿐만 아니라 UNODC 본부 관계자, 호주, 일본, 태국, 인도네시아, 뉴질랜드, 그리고 싱가포르의 불법자금환수 실무자들, 그리고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의 연구진들이 참여하여 지역 내 불법자금환수 네트워크를 구축과 관련한 다양한 논의가 진행되었다.

회의기간동안 참가자들은 ARIN-AP 구축 필요성, 한국 대검찰청의 사무국 역할 수행 제안 발표, 현존하는 불법자금환수 네트워크 사무국의 발표, 그리고 그 외 ARIN-AP 구축에 앞서 해결되어야 할 과제들을 집중적으로 논의하였다.¹¹⁸⁾

112) Camden Asset Recovery Inter-agency Network

https://en.wikipedia.org/wiki/Camden_Assets_Recovery_Interagency_Network

113) 남아메리카 범죄수익환수 네트워크 (Red de la Recuperación de Activos de GAFISUD)
<http://www.gafilat.org/content/cooperacion/#1>

114) 남아프리카 범죄수익환수 네트워크 (ARIN-SA) <http://new.arinsa.org/>

115) Camden Asset Recovery Inter-agency Network

https://en.wikipedia.org/wiki/Camden_Assets_Recovery_Interagency_Network

116) 남아메리카 범죄수익환수 네트워크 (Red de la Recuperación de Activos de GAFISUD)
<http://www.gafilat.org/content/cooperacion/#1>

117) 남아프리카 범죄수익환수 네트워크 (ARIN-SA) <http://new.arinsa.org/>

118) 검찰 영문 홈페이지 2014.1.13. 기사 참조

http://www.spo.go.kr/eng/public/activities/news.jsp?mode=view&article_no=568041&pager.offset=0&board_no=521

다) 회의 일정

〈표 3-7〉 제1회 아시아태평양 불법자금 환수 네트워크 설립 관련 전문가회의 일정

12월 4일 (수)	
08:30 - 09:00	등록
09:00 - 09:10	환영사
09:10 - 09:20	참석자 사진 촬영
09:20 - 09:30	워크숍 소개
09:30 - 12:00	세션 1 Is it necessary/appropriate to establish ARIN in the Asia-Pacific region? Moderator Mr. Keebong Paek Discussant Ms. Jennifer Bramlette & Mr. Michael Petty (1) Necessity of Inter-Agency Cooperation and Network for Asset Recovery (2) Current situation and future direction of the Asia-Pacific region (3) Prerequisites, requirements and expectations
12월 5일 (목)	
12:00 - 13:30	오찬
13:30 - 17:00	세션 2 To review a proposal to take the role of ARIN-AP secretariat and other suggestions Moderator Ms. Jennifer Bramlette Discussant Mr. Sangjin Park & Mr. Fitz-Roy Drayton (1) Time frame (AGM, WG) (2) DB & questionnaire (3) Working group (4) Steering committee (5) Fundraising
12월 5일 (목)	
09:00 - 09:30	등록
09:30 - 12:00	세션 3 What to learn from existing regional ARINs? Moderator Mr. Fitz-Roy Drayton Discussant Ms. Jill Thomas & Ms. Natalia Sarkis (1) To take preparatory measures (2) To establish/manage secretariat, website and DB (3) To encourage countries' involvement and participation (4) To determine contact points (Prosecutor+Police/Anti-corruption Agency/AML) (5) To assist countries' capacity-building

12:00 – 13:30	오찬
13:30 – 16:00	세션 4 What else to prepare to establish ARIN in the Asia-Pacific region <i>Moderator</i> Mr. Keebong Paek (1) Technical assistance and training programme (2) Relationship with APG (3) Whether/How to extend from East Asia and the Pacific to South Asia and Middle East (4) Cooperation with CARIN, ARIN-SA, RRAG
16:00 – 17:00	폐회 세션

라) 회의 내용

첫번째 세션의 발제자로 참여한 UNODC 본부의 Ms. Jennifer Bramlette는 아태지역의 불법자금환수 네트워크 구축의 당위성에 대해서 설명하고 이와 관련한 노력에 UNODC가 어떠한 도움을 제공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참가국들에 설명하였다. ARIN-AP는 지역 내 국가가 주인이 되어 그들의 합의에 의해서 운영되는 네트워크이며 UNODC는 지역 내 국가들이 ARIN-AP 창립을 결의할 경우 물질 기술적 지원을 제공할 것임을 약속하며 UNODC 본부의 지원 하에 설립된 ARIN-SA의 경우를 예로 설명하였다.¹¹⁹⁾

두 번째 세션에서는 대검찰청의 박상진 검사가 “KOREA’s Proposal for Asset Recovery Inter-Agency Network in Asia and the Pacific”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진행하였다. 박상진 검사는 발표를 통해 ARIN-AP 설립 시 한국 대검찰청이 사무국의 역할을 수행하겠다는 제안을 하였으며 ARIN-AP 구조, 비전 그리고 운영방안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하였다. 그에 따르면 ARIN-AP는 이미 현존하는 불법자금환수 네트워크와의 연대를 통한 아시아태평양 뿐 만 아니라 전 세계의 불법자금환수 담당자들이 공조가 가능한 네트워크로 발전될 것이라고 참가자들에게 설명하였다. 또한, ARIN-AP 설립에 구체적 타임라인을 제시하며 2013년 상반기 중 ARIN-AP 창립총회 준비회의 그리고 후반기에 ARIN-AP 창립총회를 개최할 것이라고 설명하였다.

119) UNODC 아태지역센터 홈페이지 기사참조.

<http://www.unodc.org/southeastasiaandpacific/en/2012/12/arin-meeting/story.html>

세 번째 세션에서는 이미 현존하는 불법자금환수 네트워크의 사무국 관계자들이 그들의 불법자금환수 네트워크 설립과정 및 운영에 있어서 얻은 시사점을 참가자들에게 소개하는 시간으로 이루어졌다. 동 세션의 발제자로 나선 CARIN의 Ms. Jill Thomas는 CARIN 설립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었던 이유로 CARIN 역할의 명확한 정의, 적절한 참가대상국 및 기관 선정을 꼽았다. 그녀는 ARIN-AP 창립에 앞서서 UNODC 아시아저스트 팀, 대검찰청 그리고 관련기관들이 아태지역 국가들의 ARIN-AP 참가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ARIN-AP의 정확한 역할에 대한 정의를 기술한 Statement of Intent를 작성하여 배포할 것을 제안하였다.

동 세션의 또 다른 발제자로 나선 RRAG의 Ms. Natalia Sarkis는 발표에서 RRAG 사무국이 개발 관리하는 보안된 웹페이지를 통해 상시 RRAG회원국 간 불법자금환수 법률, 불법자금 흐름 및 불법자금환수 수사 공조 요청등과 같은 정보의 공유가 중요하다고 설명하였다. 또한, 불법자금관련 통계 수집, 분석 공유하는 역할도 사무국의 역할이 되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마지막 세션에서는 참가자들의 ARIN-AP 창립에 관한 의견을 개진하는 자리가 제공되었다.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은 ARIN-AP와 현재 UNODC-World Bank가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는 Stolen Asset Recovery (StAR)¹²⁰⁾ 프로젝트와의 차이점에 대해서 질문하였다.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은 동 프로젝트 모두 불법자금환수라는 같은 목적을 가지고 진행되는 프로젝트이기에 아태지역 내 국가들에게 ARIN-AP 창설은 혼란을 야기할 수도 있다는 점에 대한 의견을 개진하였다. 아시아저스트 사업 담당자 백기봉 검사는 이에 StAR 프로젝트는 부패라는 한 가지 범죄를 대상으로 하며 대상회원기관은 반부패기관으로, ARIN-AP는 검사 및 경찰이 주축이 되어 초국가적 조직범죄로 인해 생산되는 불법자금환수가 목표라고 설명하였다.

마) 회의 결과

본 회의는 회의에서 논의된 내용을 정리한 “Conclusions of the Expert meeting to develop Asset Recovery Inter-Agency Network in Asia and the Pacific”을 회의 참석자들이 공동으로 작성하고 채택하는 것으로 마무리되었다. 상기 문서에 따

120) <http://star.worldbank.org/star/>

르면 참가자들은 ARIN-AP 창립 아이디어를 환영하고 차후 계속해서 ARIN-AP 발전 과정에 참여할 것을 희망하였다. 또한, 참가국들은 대검찰청에 지속적으로 ARIN-AP 참가국들을 모집하기 위한 노력을 전개할 것을 요청하였다. 상기 문서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Conclusions of the Expert Meeting to Develop

Asset Recovery Inter-Agency Network in Asia and the Pacific

1. Benefits of a regional Asset Recovery Inter-Agency Network (ARIN) were explained based on experiences of the existing ARINs, along with emphasis on its difference from other existing formal/informal networks.
2. The value of creating a CARIN style network in Asia and the Pacific region was discussed and its feasibility and nature were elaborated considering, inter alia, disparity of economic and judicial development and language differences in this region.
3. A proposal to develop a regional ARIN in Asia and the Pacific (ARIN-AP) was presented by the Korean SPO and was appreciated. Advice thereon was given in terms of drafting a clear statement of intent; selecting the right contact persons through domestic inter-agency coordination; considering manageable geographical coverage; establishing a website; and identifying external funding options.
4. A proposal by the Korean SPO to hold a preparatory meeting in the 1st quarter and launch congress to announce creation of a CARIN style network for Asia and the Pacific by the end of 2nd quarter of next year was presented. This proposal was welcomed.
5. Final minutes of this meeting will be circulated to participants by 18 December 2012; Participants who may have questions agreed to submit them by 21 January 2013 and answers thereon will be reverted back by 28 January. It was agreed that the Korean SPO will be a focal point for answering questions. Depending on the nature of questions and request

of questioners, it will either be shared with meeting participants or answered by SPO.

6. The Korean SPO was encouraged to solicit countries' participation in ARIN-AP with support of UNODC and other regional ARIN Secretariats.
7. Participants expressed their intention to consult further with their relevant national authorities to enhance understanding on ARIN-AP. These issues will be discussed further at future meetings.

2) 제 2회 아시아태평양 불법자금환수 네트워크 설립관련 전문가 회의 개최

가) 회의 개요 및 참석자

2013년 9월 30일부터 10월 1일 양일간 아시아저스트 사업팀은 한국 대검찰청과 공동으로 제2회 아시아태평양 불법자금환수 네트워크(ARIN-AP) 전문가회의를 개최하였다. 참가국은 향후 ARIN-AP 운영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해야 할 한국, 중국, 일본의 동북아 3개국과 동남아시아의 태국과 인도네시아의 불법자금환수 법집행기관 담당자들이 참여하였다. 또한 아시아저스트 사업팀의 백기봉검사 및 UNODC 돈세탁방지 전문가 Christopher Batt이 UNODC 대표로 참여하였다.

〈표 3-8〉 제2회 아시아태평양 불법자금 환수네트워크 설립관련 전문가회의 참가자

국가/ 소속기관	이름	직책	소속부서
Australia	Mr. Michael PETTY	Law Enforcement Advisor	Anti-Money Laundering Assistance Team, International Legal Assistance Branch, Attorney-General's Department
China	Mr. Da Peng WANG	Police Liaison Officer	Embassy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Indonesia	Mr. Chuck SURYOSUMPENO	Head of Asset Recovery Task Force	Asset Recovery Task Force Attorney General's Office
	Ms. Apsari DEWI	Head of International Cooperation Sub Division	International Cooperation Sub Division, Attorney General's Office
	Ms. Retno Kusumastuti SONGKOKUSUMO	Consultant of Asset Recovery Task Force	Asset Recovery Task Force, Attorney General's Office

국가/ 소속기관	이름	직책	소속부서
Japan	Mr. Kazuu WAKAEDA	Official	Foreign Policy Bureau, Ministry of Foreign Affairs
	Mr. Yoshimitsu YAMAUCHI	Deputy Director	Criminal Affairs Bureau, International Affairs Division, Ministry of Justice
	Mr. Ryo ISHIDA	Attorney	Criminal Affairs Bureau, International Affairs Division, Ministry of Justice
	Mr. Hayato KOBAYASHI	Attorney	Embassy of Japan
Korea	Mr. Sangjin PARK	Deputy Director/Prosecutor	International Cooperation Center, Supreme Prosecutors' Office
	Mr. Jooyeon JO	Deputy Director/Prosecutor	International Criminal Affairs Division, Ministry of Justice
Thailand	Mrs. Intranee SUMAWONG	Executive Director	International Affairs Department, Office of the Attorney General
CARIN	Mr. Declan O'REILLY	Bureau Legal Officer	Criminal Asset Bureau
KIC	Dr. Jea Hyen SOUNG	Associate Research Fellow	International Center for Criminal Justice
	Dr. Juyoung SONG	Associate Research Fellow	International Center for Criminal Justice
	Ms. Younmi LEE	Researcher	International Center for Criminal Justice
UNODC	Mr. Keebong PAEK	Senior Prosecutorial and Judicial Advisor	UNODC-ROSEAP
	Mr. Christopher BATT	Advisor	UNODC – Mekong Region

2012년 12월 4일부터 5일까지 진행된 제1회 회의에서는 ARIN-AP 설립에 대한 아태지역 국가들에 대한 의견과 현재 운영중인 타 지역의 불법자금환수 네트워크 사무국으로 부터 ARIN-AP 설립에 관한 조언을 수렴하는 것에 회의의 초점이 맞추어 있었다면, 제2회 회의에서는 ARIN-AP 창립총회를 앞두고 ARIN-AP 회칙, 참가국 선정, 사무국, 사무국 웹사이트, 사용언어 등과 같은 ARIN-AP가 설립에 앞서 논의되어야 할 기술적인 부분이 집중적으로 논의되었다.

나) 회의 일정

제2회 아시아태평양 불법자금 환수 네트워크 설립관련 전문가회의는 9월 30일부터 10월 1일 까지 총 4개의 세션으로 구성되어 양일간 아래와 같은 일정으로 진행되었다.

〈표 3-9〉 제2회 아시아태평양 불법자금환수 네트워크 설립 관련 전문가회의 일정

9월 30일 (월)	
08:30 - 09:00	등록
09:00 - 09:10	환영사
09:10 - 09:20	참석자 사진 촬영
09:20 - 09:30	워크숍 소개
09:30 - 10:45	세션 1 The Establishment of ARIN-AP Moderator Mr. Sangjin Park Presenters Ms. Hyerin Kim (The progress of ARIN-AP) Mr. Declan O'Really (The Launch Committee of CARIN)
10:45 - 11:00	휴식
11:00 - 12:00	세션 2 The Establishment of ARIN-AP Presenter Mr. Sangjin Park (1) Logo, name, working language (2) Informal structure of ARIN-AP (3) Informal sharing of information
12:00 - 13:30	오찬
13:00 - 15:00	세션 3 The Establishment of ARIN-AP Presenter Mr. Michael Petty (1) Statement of intent (2) Central point of contact
15:00 - 15:15	휴식
15:15 - 17:00	세션 4 The Establishment of ARIN-AP Presenter Mr. Michael Petty (Membership)
10월 1일 (화)	
09:00 - 09:30	등록
09:30 - 10:45	세션 1 Website Moderator Mr. Christopher Batt Discussant Ms. Dong-ju Kang (1) Contents (2) Provision of information

10:45 – 11:00	휴식
11:00 – 12:00	세션 2 Website Moderator Mr. Christopher Batt (1) Access (2) Use of message board
12:00 – 13:30	오찬
13:30 – 15:00	세션 3 The future of ARIN-AP Moderator Mr. Keebong Paek (1) Secretariat/Steering Group/Presidency (2) Funding (3) Scope of activity (4) Training programmes (5) Relationship with other organizations and the private sector
15:00 – 15:15	휴식
15:15 – 16:40	세션 4 The future of ARIN-AP Moderator Mr. Keebong Paek (Preparations for the inaugural general meeting of ARIN-AP)
16:40 – 17:40	폐회세션
17:40 – 17:50	폐회 선언
18:30 – 20:00	만찬

다) 회의 결과

본 회의의 결과는 다음과 같이 요약될 수 있다.

첫째, ARIN-AP의 회원 대상국이 동북아시아와 동남아시아에서 더 나아가 남아시아의 국가까지 확대되는 것으로 결정되었다. 둘째, ARIN-AP운영위원회는 총 9명으로 구성될 것이며 읍저버 기관으로 참여하게 될 CARIN, RRAG 그리고 ARIN-SA 사무국 관계자들에게도 상기 운영위원회에 참관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로 합의하였다. 셋째, ARIN-AP의 대표자는 운영위원회 회원 중에서 선정될 것이며 대표자 선정은 매년 개최될 ARIN-AP 연례회의에서 선정하는 것으로 합의되었다. 마지막으로 ARIN-APDML 사무국은 대검찰청이 수행하는 것으로 결정되었다. 이틀간의 회의를 거쳐 참가자들은 ARIN-AP 창립총회를 서울에서 2013년 11월 19일에서 20일에 개최하는 것으로 결정하며 회의를 마무리하였다.

3) 아시아태평양 불법자금환수 네트워크 창립총회 개최

가) 총회 개요

아시아저스트 사업팀이 지속적으로 추진해 온 아시아태평양 불법자금환수 네트워크 (ARIN-AP)는 2013년 11월 19일부터 20일까지 대검찰청 15 층 대회의실에서 아시아 태평양 지역 범죄수익환수 관련 법집행 기관 담당자 38 명(21 개국, 28 개 기관) 및 국제기구 및 국내 관련 기관 전문가 8명(6개 기관) 등 총 46명이 참석한 가운데 창설되었다.

대검찰청이 주최한 이번 회의에서는 ARIN-AP의 회칙, 운영위원회 및 사무국 등 ARIN-AP의 향후 활동과 관련한 중요한 주제들이 결정되고 공식적으로 ARIN-AP가 창설되는 성과를 거두었다. ARIN-AP의 사무국은 대검찰청 내에 2013년 12월 중으로 설치되는 것으로 참석국가 및 기관들에 의해 결의 되었다. 향후 사무국의 역할은 ARIN-AP 홈페이지 설치 관리 및 아태지역 국가들의 ARIN-AP 참여를 유도하는 역할을 담당할 것이다.

나) 회의 일정

〈표 3-10〉 아시아태평양 불법자금환수 네트워크 창립총회 일정

11월 19일 (화)	
08:30 - 09:00	등록
09:00 - 09:10	개회사
09:10 - 09:30	환영사
09:30 - 10:00	회의 참석자 소개
10:00 - 10:10	참석자 사진 촬영
10:10 - 10:40	휴식
10:40 - 10:50	회의 소개
10:50 - 12:00	세션 1 Progress Thus Far Moderator Mr. Eun Jae Park (1) Background of the ARIN-AP (Mr. Keebong Paek) (2) Progress in launching the ARIN-AP (Mr. Sangjin Park) (3) Outcome of the Preparatory Expert Meetings (Mr. Michael Petty)

12:00 – 13:30	오찬
13:30 – 15:00	세션 2 Sharing Other Experiences I Moderator Mr. Christopher Batt (1) CARIN (Camden Asset Recovery Inter-Agency Network)'s experience (Ms. Jill Thomas) (2) Indonesian experience (Mr. Chuck Suryosumpeno) (3) Mongolian experience (Mr. Ganzorig Gomosuren)
15:00 – 15:30	휴식
15:30 – 16:00	ARIN-AP 웹사이트 시연
16:00 – 17:00	그룹 워크숍 1 The Establishment of ARIN-AP (1) Scope of member states/jurisdictions (2) Contact points (3) Informal nature of the network (4) Informal sharing of information (5) Website
11월 20일 (수)	
09:00 – 10:00	세션 3 Sharing of Other Experiences II Moderator Mr. Sangjin Park (1) HSI (Homeland Security Investigation)'s experience (Mr. Taekuk Cho) (2) StAR (Stolen Asset Recovery Initiative)'s experience (Ms. Lindy Muzilla)
10:00 – 10:30	휴식
10:30 – 11:30	그룹 워크숍 2 The Operation of ARIN-AP (1) Presidency/Steering Group (2) Secretariat (3) Annual General Meeting (4) Funding (5) Relationship with other organizations
11:30 – 12:30	그룹 워크숍 3 Finalizing Discussions
12:30 – 14:00	오찬
14:00 – 15:30	세션 4 Comparing the Results of Discussions Moderator Mr. Michael Petty
15:30 – 16:00	휴식
16:00 – 17:00	세션 5 Conclusions Moderator Mr. Keebong Paek

17:00 - 17:10	Introduction of next year's Annual General Meeting plans
17:10 - 17:30	폐회 (1) 축사 (2) 폐회사
17:30 - 20:00	만찬

다) 회의 내용

길태기 검찰총장 직무대행은 환영사에서 전 세계적으로 엄청난 규모의 불법자금의 초국가적 조직범죄 집단에 의해서 생산되고 있으며 이러한 불법자금은 돈세탁 및 또 다른 범죄를 자행하고 있는 최근의 현실을 지적하며 이번 ARIN-AP 창설을 통한 아태지역 불법자금환수 법집행기관 간 공조 강화는 그 의미가 매우 크다고 설명하였다.

아시아저스트 사업 담당자 백기봉검사는 세션 1의 발제자로 나서 ARIN-AP의 설립 배경에 대해서 설명하였다. 백기봉검사는 ARIN-AP의 목적은 국제범죄수익 환수 네트워크 구축, 범죄수익환수 관련 자료 및 정보의 신속한 교환 및 공조, 국제범죄수익환수 관련 모범사례 전문지식 축적 및 연구, 그리고 UNODC와 같은 국제기구 및 타 네트워크와의 협력을 통한 전 세계 네트워크 구성이라고 설명하였다.

백기봉검사에 이어서 발제자로 나선 박상진 검찰연구관은 아시아저스트 팀과 대검찰청이 ARIN-AP 창립을 위해 그동안 기울여온 노력에 대해서 참가자들에게 설명했다. 'ARIN-AP 설립 진행상황'이라는 주제로 진행된 발표에서, 박상진 검찰연구관은 지난 2011년 ARIN-AP 설립에 관한 내용을 아시아저스트 팀과 함께 검토하고 2012년 1월 ARIN-AP 설립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함으로써 본격적인 ARIN-AP 설립에 대한 노력을 전개하기 시작하였다고 설명하였다.

2012년 9월에는 전 세계 불법자금환수 네트워크 사무국 회의에 참석하여 ARIN-AP 설립 구상에 대해 동 회의 참가자들에게 발표하여 ARIN-AP에 설립에 대한 협조를 요청하고 이를 토대로 세계 불법자금환수 네트워크 사무국 담당자들이 참여한 가운데 2012년 12월 제 1회 ARIN-AP 설립 전문가 회의가 개최될 수 있었다고 설명하였다. 이후 2013년 9월 제 2회 ARIN-AP 설립 전문가 회의를 개최하여 ARIN-AP 창립총회 개최에 관한 전반적인 논의를 진행하고 참가국 및 참가기관을 선정하는 작업을 진행

하는 절차를 거쳐 ARIN-AP 창립총회 개최가 가능 할 수 있었다. 발표자는 ARIN-AP 설립에 기술적 지원을 지속적으로 제공해 온 아시아저스트 사업팀에 감사를 표했다.

라) 평가 및 성과

ARIN-AP의 창립을 통해 아태지역의 불법자금환수 법집행기관 간 국제공조를 강화함으로써 회원국들은 해외유출 자본 및 초국가적 조직범죄 집단의 불법자금을 환수하는 업무에 더욱 박차를 가할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될 것이다.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은 이번 ARIN-AP 창립을 통해 앞으로 국제범죄수익환수 관련 모범사례 및 전문지식 축적 및 연구와 관련한 업무에 참여함으로써 ARIN-AP 발전과 국제적으로 불법자금 환수에 관한 연구를 선도할 수 있는 기관으로 발돋움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나. 상호사법공조 및 범죄인인도

1) 제2회 고위급 동남아 및 주변국 상호사법공조회의 개최

가) 회의 개요 및 목적

아시아저스트 사업팀은 2012년 7월 서울 태국 방콕에서 제 1회 고위급 동남아시아 및 주변국 상호사법공조 회의를 개최하였다. 제1회 회의는 말레이시아를 제외한 아세안 회원국 9개국 그리고 한국과 일본의 상호사법공조 관련 실무자들이 참여하여 이루어졌으며 이를 통해 각국 간 상이한 상호사법공조 절차 및 법률에 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졌다. 상기 언급된 제1회 회의의 연장선상에서 아시아저스트 사업팀은 한국 대검찰청과 공동으로 제 2회 고위급 동남아시아 및 주변국 상호사법공조 회의를 개최하였다. 2013년 7월 19일부터 20일 양일간 개최된 이번 회의에는 동남아시아 10개국과 한국 그리고 일본 12개국의 상호사법공조 및 범죄인인도 실무자 총 29명이 참가하였다.

이번 회의의 개최 목적은 지난 제1회 회의에서 논의된 아태지역의 상호사법공조 활성화를 위해 선결되어야 할 과제로 선정된 양국공동범죄성인정(Dual Criminality)과 불법자금환수와 관련한 상호사법공조와 같은 주제들을 좀 더 심도 있게 논의하는 기회를 갖기 위함이다. 또한, 지속적인 아태지역 내 상호사법공조 실무자들의 만남을 주선하여 상호 네트워크를 더욱 공고히 하기 위함도 본 회의 개최의 목적이라고 할 수 있다.

〈표 3-11〉 제2회 고위급 동남아 및 주변국 상호사법공조회의 참석자

	국가	이름	직책	소속기관
1	Brunei	Ms. Norhayati Binti Daud	Deputy Senior Counsel	Attorney-General's Chambers
2	Brunei	Mrs. Lisa Chan Ching Kee	Counsel	Attorney-General's Chambers
3	Cambodia	Mr. Davuth Ngeth	Deputy Director of International Relation Department	Ministry of Justice of Cambodia
4	Cambodia	Mr. Vibol Pov	Bureau Chief of Foreign Affairs	A Member of Cambodia Central Authority
5	Indonesia	Mr. Hendra Andy Satya Gurning	Chief Section for Extradition and TSP Directorate of International Law and Central Authority	Ministry of Law and Human Right
6	Indonesia	Mr. Syaiful Bahry	Legal Officer on Mutual Legal Assistance	Ministry of Law and Human Right
7	Lao PDR	Mr. Nalonglith Norasing	Director General, Department for International Cooperation and Relations	Ministry of Justice
8	Lao PDR	Mr. Souksomboun Khinsamone	Officer, Department for International Cooperation and Relations	Ministry of Justice
9	Malaysia	Mr. Nazran Bin Mohd Sham	Senior Federal Counsel	Attorney General's Chamber
10	Malaysia	Ms. Wan Nor Sakina Binti Saad	Senior Federal Counsel	Attorney General's Chamber
11	Myanmar	Ms. Thi Da Oo	Deputy Director, International Law and ASEAN Legal Affairs Division	Union Attorney General's Office
12	Myanmar	Mr. Sunn Linn	Staff Officer, International Law and ASEAN Legal Affairs Division	Union Attorney General's Office
13	Philippines	Mr. Ricardo III Valera Paras	Chief State Counsel	Department of Justice
14	Philippines	Ms. Mildred Bernadette Baquilod Alvor	Senior State Counsel	Department of Justice
15	Philippines	Mr. Ulyses Aledo Aguila	State Counsel II	Department of Justice
16	Singapore	Mr. Chuin Wei Tan	Senior State Counsel	Attorney-General's Chambers
17	Singapore	Mr. Keng Siong Kow	Senior State Counsel	Attorney-General's Chambers
18	Thailand	Mr. Wanchai Roujanavong	Director-General	International Affairs Dept., Office of the Attorney General
19	Thailand	Mr. Bundit Satjapong	Expert Public Prosecutor	International Affairs Dept., Office of the Attorney General
20	Thailand	Mr. Phoosit Tiravanichpong	Public Prosecutor	International Affairs Dept., Office of the Attorney General
21	Vietnam	Mr. Mai The Bay	Deputy Director	Department for International Cooperation and Mutual Legal Assistance in Criminal Matters
22	Vietnam	Mr. Nguyen Hoanh Dat	Legal Expert	Department for International Cooperation and Mutual Legal Assistance in Criminal Matters
23	Japan	Mr. Tsuneyuki Asahi	Attorney	International Affairs Division, Criminal Affairs Bureau Ministry of Justice
24	Japan	Mr. Masashi Sakai	Official	International Affairs Division, Criminal Affairs Bureau Ministry of Justice
25	Korea	Mr. Seon-wook Lee	Director	International Criminal Affairs Division, Ministry of Justice
26	Korea	Mr. Changjin Kim	Prosecutor	International Criminal Affairs Division, Ministry of Justice
27	Korea	Mr. Joo Yeon Jo	Prosecutor	International Criminal Affairs Division, Ministry of Justice
28	Korea	Mr. Ji Hyung Lee	Prosecutor	International Criminal Affairs Division, Ministry of Justice
29	UNODC	Mr. Keebong Paek	Senior Prosecutorial and Judicial Adviser	UNODC

본 회의가 지난 2012년에 개최된 제1회 회의와 가장 구별되는 점은 상호사법공조와 더불어 범죄인인도를 함께 논의한 사실이다. 아시아저스트 사업팀은 지난 1차 회의에서 범죄인인도와 관련한 아태지역 내 국가들의 네트워크 강화가 필요하다는 점을 인지하고 이번 회의에 범죄인인도를 논의주제로 포함시켰다.

나) 회의 일정

총 6개의 세션으로 구성된 이번 제2회 고위급 동남아 및 주변국 상호사법공조회의는 다음과 같은 일정으로 진행되었다.

〈표 3-12〉 제2회 고위급 동남아 및 주변국 상호사법공조회의 일정

7월 11일 (목)	
09:30 – 10:00	등록
10:00 – 10:30	Opening and adoption of the agenda Introduction and follow-up of 2012 Bangkok Meeting
10:30 – 11:30	세션 1 Legal/Technical Extradition Issues (1) Relationship between extradition and deportation (2) Extradition of nationals (3) Application of dual criminality and rule of speciality (4) Temporary/deferred surrender (Procedures and practices) (5) Provisional arrest, effect of Interpol red-notice
11:30 – 12:00	오찬
12:00 – 13:00	세션 2 Special Session for Two or Three Countries (1) Introduction of extradition procedures and best practices
13:00 – 14:30	오찬
14:30 – 15:30	세션 3 Special Session for Two or Three Countries (1) Introduction of extradition procedures and best practices
15:30 – 16:30	휴식
16:00 – 17:00	세션 4 Legal/Technical MLA Issues (1) Scope of assistance (2) Cooperation of asset forfeiture and recovery (3) Admissibility of foreign evidence obtained through MLA (4) Application of dual criminality (5) Use of video conference in the context of MLA

7월 12일 (금)	
09:30 – 10:30	세션 5 Special Session for Two or Three Countries (1) Introduction of MLA procedures and best practices
10:30 – 11:30	휴식
11:30 – 12:30	세션 6 Wrap-up Session (1) Introduction of ASEAN treaties on extradition and MLA (2) Cooperative regime on extradition and MLA in this region (3) Views and concerns on its establishment in this region (4) Discussion on a possible future meeting
12:30 – 14:00	오찬

다) 회의 내용

아시아저스트 사업팀은 유럽의 유럽사법기구가 회원국들을 대상으로 상호사법공조와 범죄인인도에 관한 정보를 목적으로 개발한 서식을 기반으로 새로운 서식을 개발하여 참가자들에게 회의 참가 전 작성해줄 것을 요청하였다. 상기 서식의 개발 목적은 모든 참가자들이 같은 서식을 기반으로 한 발표를 진행하여 상호사법공조 및 범죄인인도 공조에 있어서 필요한 정보를 공유하기 위함에 있다. 참가자들과 공유된 상호사법공조 및 범죄인인도 서식은 다음과 같다.

GUIDE TO MUTUAL LEGAL ASSISTANCE FROM EAST ASIA AND THE PACIFIC REGION [The purpose of this template is to ensure your country's contribution to the MLA Guide for East Asia and the Pacific region meets the purpose of the guide, especially by providing brief and user-friendly advice on key MLA steps. Please make efforts to use the following headings and instructions. An example of a completed template of the Republic of Korea has been provided to assist you. We have made this template based on the G20 template as a reference.] Please note that the submission of the guide is not mandatory, but recommended. <u>We will compile and distribute the guides submitted by each country to all of you.</u> [COUNTRY NAME] I. INTRODUCTION [Maximum 1 Page] [COUNTRY TO PROVIDE A BRIEF OVERVIEW OF ITS MUTUAL LEGAL ASSISTANCE PROCESS. IN DOING SO, CONSIDER INCLUDING INFORMATION UNDER THE FOLLOWING SUB-HEADINGS IF THEY APPLY TO YOUR MLA SYSTEM] (i) Requests Made Under a Treaty/Convention (ii) Letters Rogatory Requests (Court-Issued Non-Treaty Requests) (iii) Non-Treaty Letters of Request (iv) Dual Criminality is Generally Not Required II. CENTRAL AUTHORITY – CONTACT INFORMATION [COUNTRY TO SET OUT CONTACT INFORMATION FOR ITS CENTRAL AUTHORITY AND/OR OTHER CONTACT POINT FOR STATES SEEKING MUTUAL LEGAL ASSISTANCE.] III. STEPS TO FOLLOW WHEN SEEKING MUTUAL LEGAL ASSISTANCE FROM [COUNTRY NAME] [Maximum 4 Pages] In general, the steps outlined below should be followed for mutual legal assistance from [insert your country name]. Step 1: CONSULT WITH THE CENTRAL AUTHORITY BEFORE SUBMITTING THE REQUEST It is recommended that the requesting authority in your country contact the Central Authority of [insert your country name] in advance of making a request for mutual legal	assistance, particularly in the most serious cases, to ensure the assistance which you seek is available under the laws of [insert your country name], and the request will meet the legal requirements of [insert your country name]. In addition, the following steps should be followed in every case. Step 2: ENSURE THE REQUEST IS PROPORTIONATE TO THE ALLEGED CRIME Please ensure that the request for assistance is proportionate to the level of crime being investigated. Given the limited resources available to law enforcement and prosecuting authorities in [insert your country name], a requesting state is urged to consider the need for the evidence in question. If significant resources will be required to execute a request and the offence being investigated is minor, the request may be given low priority. Step 3: INDICATE THE MECHANISM USED TO SEEK ASSISTANCE In drafting your request, begin by clearly identifying the treaty, convention (UNCAC, UNTOC, OECD Anti-Bribery Convention, other) or other avenue of cooperation being referred to in seeking the assistance from [insert your country name]. Step 4: IDENTIFY THE AUTHORITY CONDUCTING THE INVESTIGATION / PROSECUTION Clearly indicate which authority in your country is conducting the investigation and/or prosecution. Step 5: SUMMARIZE THE CASE Provide a detailed outline of the case under investigation or prosecution, including a summary of the evidence that supports the investigation/prosecution. This outline should also include the following: a. If <u>witness statement/testimony</u> is being sought, please ... [insert instructions] b. If <u>documentary evidence</u> is needed, please ... [insert instructions] c. If the <u>execution of a search warrant</u> is sought, ... [insert instructions] d. If <u>seizure/confiscation of criminal proceeds</u> is requested ... [insert instructions] Step 6: SET OUT THE APPLICABLE LEGAL PROVISIONS Identify and set out the verbatim text of all relevant legal provisions under investigation and/or prosecution, including applicable penalties. Step 7: IDENTIFY THE ASSISTANCE BEING SOUGHT Outline, in specific terms, exactly what you are seeking to obtain from [insert your country
--	--

name], and any particular requirements that must be met (example: certification/authentication needs). In addition, considering the nature of the assistance sought, the following information must be included: • Witness statements/testimony: [outline your requirements] • Documentary evidence: [outline your requirements] • Search and Seizure: [outline your requirements] • Enforcing Order to Seize Criminal Proceeds: [outline your requirements] • Enforcing Order to Confiscate Criminal Proceeds: [outline your requirements] Step 8: HIGHLIGHT ANY SPECIFIC CONFIDENTIALITY REQUIREMENTS In [insert your country name], existence and nature of requests for assistance are subject to confidentiality. Please be advised, however, that disclosure to a certain degree may be necessary particularly where compulsory measures are required in the course of executing the request. In this regard, if your case is especially sensitive, the need and reasons for confidentiality must be expressly stated in the request. Step 9: IDENTIFY ANY URGENCY IN THE EXECUTION OF THE REQUEST Identify any time limit within which compliance with the request is desired and the reason for the time constraints (example: pending court proceeding/time-sensitive investigation, etc.). Indicate precise dates if you have specific limitation periods. Step 10: PROVIDE A LIST OF RELEVANT CONTACT POINTS IN YOUR COUNTRY Include a list of the names and contact numbers for key law enforcement/prosecution authorities dealing with the case. You should include the name and, where applicable, the contact information of your Central Authority. In the event the foreign authority wishes to contact you for the purpose of clarification or obtaining additional information. Step 11: TRANSLATE THE REQUEST [insert your country name] requires incoming requests for mutual legal assistance to be provided, in writing, in its official language(s), namely [identify official language(s)]. Step 12: LIMITATIONS ON USE OF EVIDENCE PROVIDED Note that any evidence provided by [insert your country name] in response to a mutual legal assistance request may be used only for the specific purpose stated in the request. If	you want to use the evidence for other purpose, you must seek consent of [insert your country name] first. Step 13: ADMISSIBILITY OF FOREIGN EVIDENCE OBTAINED THROUGH MLA [SPECIFY IF YOU HAVE SPECIAL PROVISIONS FOR ADMISSIBILITY OF FOREIGN EVIDENCE OBTAINED THROUGH MLA TO BE TREATED DIFFERENTLY FROM DOMESTIC EVIDENCE] IV. BILATERAL TREATIES/MULTILATERAL CONVENTIONS ON MLA [SPECIFY THE CURRENT STATUS OF BILATERAL TREATIES AND MULTILATERAL CONVENTIONS ON MLA OF YOUR COUNTRY] GUIDE TO EXTRADITION FROM EAST ASIA AND THE PACIFIC REGION [The purpose of this template is to ensure your country's contribution to the Extradition Guide for East Asia and the Pacific region meets the purpose of the guide, especially by providing brief and user-friendly advice on key extradition steps. Please make efforts to use the following headings and instructions. An example of a completed template of the Republic of Korea has been provided to assist you. We have made this template based on the G20 template as a reference.] Please note that the submission of the guide is not mandatory, but recommended. <u>We will compile and distribute the guides submitted by each country to all of you.</u> [COUNTRY NAME] I. INTRODUCTION [Maximum 1 Page] [COUNTRY TO PROVIDE A BRIEF OVERVIEW OF EXTRADITION PROCESS. IN DOING SO, CONSIDER INCLUDING INFORMATION UNDER THE FOLLOWING SUB-HEADINGS IF THEY APPLY TO YOUR EXTRADITION SYSTEM] (v) <i>Requests Made Under a Treaty/Convention</i> (vi) <i>Non-Treaty Letters of Request</i> II. CENTRAL AUTHORITY – CONTACT INFORMATION [COUNTRY TO SET OUT CONTACT INFORMATION FOR ITS CENTRAL AUTHORITY AND/OR OTHER CONTACT POINT FOR STATES SEEKING EXTRADITION]
---	---

[그림 3-1] 상호사법공조 및 범죄인인도 서식 (일부)

회의는 각 국이 상기 서식에 맞춰 작성한 내용을 토대로 진행되었다. 참가국들은 이번 회의를 통해 상호사법공조 및 범죄인 인도 요청에 관한 각 국의 관련 법률 및 절차에 관한 상호 이해가 증진 되었으며, 이를 토대로 통일화된 상호사법 공조 및 범죄인인도 요청 양식에 관한 논의도 진행되는 성과를 거둘 수 있었다. 회의의 종료 후 아시아저스트 사업팀은 모든 참가자들이 서식에 맞춰 제출한 내용을 정리하여 자료집의 형태로 모든 참가자들에게 배포하였다. 상기 자료집의 배포이유는 참가국들 간 향후 상호사법공조와 범죄인인도와 관련한 업무를 본 책자를 통해 좀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데 도움을 제공하기 위함이다.



[그림 3-2] 제2회 고위급 동남아 및 주변국 상호사법공조회의 개최모습

모든 참가자는 이번 회의를 계획한 아시아저스트 사업팀에 감사를 표하였으며 향후 UNODC 동남아시아태평양 사무소에서 연례적으로 본 회의와 같은 실무자들간 만남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줄 것을 요청하며 회의가 마무리되었다.

2) 제1회 동남아시아 상호사법공조회의 개최

가) 회의 개요 및 참가자

UNODC 동남아시아태평양 지역사무소는 2013년 11월 14일 태국 방콕에서 동남아시아 지역프로그램(Regional Programme for Southeast Asia 2014-2017)을 발표하였다. 동 프로그램은 총 5개의 세부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세부 프로그램 4는 형사사법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세부 프로그램 4의 하나의 중요한 산출과제는 동남아시아 국가들의 상호사법공조를 담당하는 중앙기관(Central Authority)의 역량 강화이다. 이에 아시아저스트 팀은 현재 동남아시아 지역의 상호사법공조 중앙청(Central Authority)의 역량을 평가하고 결과물을 통해 향후 4년간의 기술적 지원 계획을 작성하기 위한 동남아시아 상호사법공조 중앙청에 관한 워크숍(Workshop on Central Authorities of MLA in Southeast Asia)을 2012년 11월 25일 개최하였다.

본 회의에는 말레이시아를 제외한 아세안 회원국 9개국이 참가하였으며 참가자 명단은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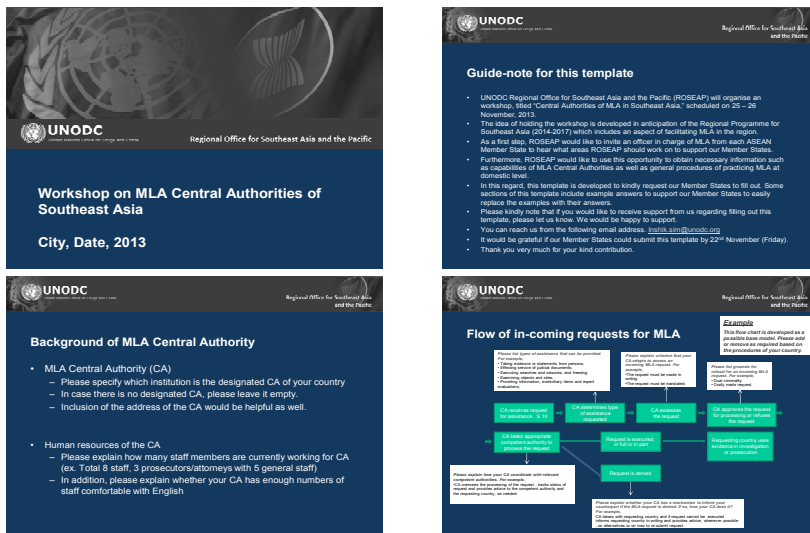
〈표 3-13〉 제1회 동남아시아 상호사법 공조회의 참석자

	국 가	이 름	직 책	소속 기관
1	Austria	Ms. Caroline Walser	UNODC research associate	Institute of Criminal Law and Criminology University of Vienna
2	Brunei	Mr. Christopher Ng Ming Yew	Counsel & Deputy Public Prosecutor	Attorney-General's Chambers
3	Cambodia	Mr. Davuth Ngeth	Deputy Director of International Relation Department and Permanent Member of CA Cambodia	Ministry of Justice of Cambodia
4	Indonesia	Mr. Syaiful Bahry	Legal Officer on Mutual Legal Assistance	Ministry of Law and Human Right
5	Lao PDR	Mr. Sibounzom Bounlom	Chief of Criminal Inspection Division	The Office of Supreme Prosecutor
6	Malaysia	Ms. Yong Leou Shin	Senior Federal Counsel	Attorney General's Chamber
7	Myanmar	Ms. Cho Nge Nge Thein	Staff Officer (Law Officer Grade-3)	Union Attorney General's Office
8	Philippines	Ms. Mildred Bernadette Baquilod Alvor	Senior State Counsel	Office of the Chief State Counsel, Department of Justice
9	Philippines	Ms. Rosalinda Gascon Sajot	State Counsel III	Office of the Chief State Counsel, Department of Justice
10	Singapore	Mr. Keng Siong Kow	Senior State Counsel	Attorney-General's Chambers
11	Singapore	Mr. Weixiong Kenneth Wong	State Counsel	Attorney-General's Chambers
12	Thailand	Ms. Sunisa Sathapornsermsuk	Public Prosecutor	International Affairs Dept., Office of the Attorney General
13	Vietnam	Ms. Kieu Phuong Lien	Expert legal	Supreme People's Procuracy of Viet Nam
14	UNODC	Mr. Jeremy Douglas	Regional Representative	UNODC
15	UNODC	Mr. Keebong Paek	Senior Prosecutorial and Judicial Adviser	UNODC
16	UNODC	Mr. Inshik Sim	Criminal Justice Researcher	UNODC
17	UNODC	Mr. Chandu Bhandari	Intern - Communications	UNODC
18	UNODC	Ms. Duangjai Pattanarudee	Project Assistant	UNODC

나) 회의 관련자료 준비

본 워크숍 개최의 목적이 동남아시아 지역 국가들의 상호사법공조 중앙청의 역량을 평가하는데 도움이 되는 자료의 수집이기에, 아시아저스트 팀은 관련 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파워포인트 템플릿을 작성하여 회의 개최 3주전 참가국들에게 배포하여 동 템플릿에 맞춰 발표를 준비해 줄 것을 부탁하였다. 상기 언급된 템플릿은 다음의 총 11개의 섹션으로 구분되어 있다.

- 상호사법공조 중앙전담기관 존재 여부
- 상호사법공조 중앙전담기관 인적능력
- 상호사법공조 중앙전담기관 조직도
- 상호사법공조 중앙전담기관 정보통신기술 능력
- 상호사법공조 관련 통계 수집 및 관리 능력
- 상호사법공조 중앙전담기관 및 관련기관의 상호사법공조 수행교육 및 가이드라인 존재여부
- 접수된 상호사법공조 이행절차
- 상호사법공조 요청절차
- 지역 내 상호사법공조 절차 발전을 위한 UNODC에 대한 제언



[그림 3-3] 제1회 동남아시아 상호사법 공조회의 준비자료 (일부)

다) 회의 내용

본 워크숍은 제레미 더글라스(Jeremy Douglas) UNODC 동남아시아 태평양 사무소장의 환영사로 시작되었다. 더글라스 사무소장은 환영사에서 1년 앞으로 다가온 동남아시아 국가연합 경제공동체(ASEAN Economic Community)는 동남아시아 국

가들에게 경제적으로 이득 뿐 만 아니라 낮아진 국가 간 장벽으로 인한 초국가적 조직범죄가 더욱 많이 발생할 수 있는 위기가 될 수 있음을 지적하였다. 그는 이러한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서는 상호사법공조와 같은 법적장치들이 중요하며 동남아시아 국가들의 상호사법공조 중앙청의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노력을 계속해서 전개할 것을 참가국들에게 약속하였다.

환영사에 이어서 이번 워크숍 참가국 발표가 이어졌다. 각 국가는 그들이 준비해 온 발표 자료에 따라 약 20분간 발표를 하였으며 발표 후 발표내용에 대한 질문 및 토의가 진행되었다. 참가 국가들의 발표를 통해서 우선적으로 상호사법공조 중앙청의 역량강화가 필요한 국가들과 그렇지 않은 국가들을 구별할 수 있었다.

예를 들면 라오스의 대표로 참여한 Mr Sibounzom Bounlom은 현재 라오스에는 상호사법공조 중앙청이 존재하지 않으며 타국으로 부터 상호사법공조 요청이 들어올 경우 케이스 바이 케이스의 형태로 접근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설명하였다. 그는 UNODC에 대한 제언사항으로 라오스의 상호사법공조 중앙청 설립에 대한 기술적 지원과 상호사법공조 요청 포맷을 통한 상호사법공조 요청 작성과 같은 실무적인 차원의 트레이닝을 제공할 것을 요청하였다. 캄보디아 발표자는 발표에서 상호사법공조 중앙청인 법무부에 인적 그리고 물적 자원의 부족으로 캄보디아는 효과적인 상호사법공조를 수행하기 어려운 실정이라고 설명하였다. 그는 UNODC가 향후 캄보디아 상호사법공조 중앙청 직원들을 대상으로 한 트레이닝을 실시해 줄 것을 부탁하였다.

앞서 언급했듯이 몇몇 국가들은 다른 주변국들에 비해 발전된 형태의 상호사법공조 체계를 갖추고 있었다. 싱가포르 검사 Mr. Keng Siong KO에 따르면 상호사법공조와 관련된 싱가포르의 국내법 그리고 싱가포르가 현재 비준한 다자 및 양자 조약들을 근거로 싱가포르는 타 국가들에게 최선을 다해 상호사법공조를 제공하기 위한 노력을 전개하고 있다. 또한, 싱가포르의 상호사법공조 중앙전담기관은 웹페이지를 통해 타 국가가 상호사법공조 요청시 고려해야 할 사항을 정리한 문서와 상호사법공조 요청 포맷을 공유함으로써 타국이 싱가포르에게 상호사법공조 요청이 좀 더 용이하게 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라오스에서 검사로 재직 중인 Mr. Sibounzom Bounlom에 따르면 현재 상호사법공조만을 전담하는 중앙전담기관이 존재하지 않는다. 라오스의 경우 상호사법공조 요청

이 빈번히 이루어지는 국가는 아니기는 하지만 상호사법공조 전담 중앙청의 부재는 상호사법공조와 관련한 국제 업무를 수행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다. 이에 라오스 정부는 상호사법공조 전담 중앙청을 설치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또한, 상호사법공조 중앙청 설립에 UNODC가 많은 기술적 지원을 제공해 주기를 희망하며 설립 후에는 트레이닝과 같은 역량강화 프로그램을 개발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라) 평가 및 성과

본 회의의 성과는 UNODC가 향후 동남아시아 지역프로그램(2014-2017)을 통해 어떠한 기술적 지원을 동남아시아 상호사법공조 중앙전담기관에 제공해야 하는지를 확인한 것이다. 이번 회의를 통해서 UNODC 동남아시아태평양 사무소장 Jeremy Douglas는 라오스와 캄보디아와 같이 상호사법공조와 관련한 역량이 부족한 국가들에게 가능한 자원과 기술적 지원을 제공할 것임을 약속하였다.

다. 제2차 검사교류프로그램 시행

1) 검사교류프로그램(PEP) 개요

초국가적 조직범죄 방지협약 (United Nation Convention against Transnational Organized Crime, UNTOC) 제29조는 협약의 당사국들의 형사사법 기관에 종사하는 실무자들간 초국가적 조직범죄에 관한 공동연구 및 수사에 관한 전문성을 공유할 것을 장려하고 있다. 이는 초국가적 조직범죄 수사의 일선에서 근무하는 실무자들, 특히나 검사들의 역량강화와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서 초국가적 조직범죄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함이다. 아시아저스트 사업팀은 상기 언급된 조항에 근거하여 사업의 주요 대상국인 동남아시아 지역 내 검사들을 대상으로 하는 검사교류프로그램 (Prosecutor Exchange Programme; PEP)을 개발하였다. 검사교류프로그램의 실행에 관한 합의는 2010년 8월 23일부터 25일까지 UNODC 동남아시아태평양 지부(당시 동아시아태평양)와 한국 대검찰청이 공동으로 주최한 한국-ASEAN 고위급 검사회의(High Level Prosecutors' Meeting of ASEAN Workshop)에서 참가국들의 만장일치로 결의되었다. 제1차 검사교류프로그램은 2012년 라오스 북부 지역청에 근무하는 Xaysana Souliyavong 검사가 한국의 대검찰청과 형사정책연구원에서 총 8주간 근무

하며 실행되었다. 제1차 검사교환 프로그램을 통해 참가자인 Souliyavong 검사는 대검찰청으로부터 한국의 일반적인 형사사법에 관한 인식의 증대 그리고 한국형사정책연구원으로부터는 자금세탁방지에 관한 전문지식을 얻을 수 있게 되었다.

2) 제2차 검사교류프로그램 실시

제1차 검사교류프로그램의 성공을 바탕으로 2013년에는 사하로니(Sahroni) 인도네시아 검사를 참가자로 선정하여 2013년 5월 20일부터 7월 12일까지 실시되었다. District Attorney's Office of Cilegon에 근무하고 있는 사하로니 검사는 본 프로그램 참가에 앞서서 아시아저스트 사업팀에 교환기간 동안 비교법적인 측면에서 한국과 인도네시아의 법체계에 관한 연구 및 한국의 불법자금환수에 관한 한국의 법체계 그리고 이와 관련한 검사의 역할에 대해서 연구할 것을 희망하였다.

상기 연구주제 선정의 이유는 인도네시아에서는 다양한 초국가적 조직범죄가 발생하고 있으며 이에 타국으로부터 불법자금환수 협조를 요청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는데 인도네시아는 불법자금환수에 관한 실무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사하로니 검사는 본인의 관심분야를 기반으로한 연구계획안을 아시아저스트 팀에 제출하였다.

〈표 3-14〉 사하로니 검사의 연수 및 연구 내용

No.	Activity	Time Frame	Responsible	Outcomes/Outputs
1.	Prepare To Start Research n DFC (digital forensic). Research on criminal department.	20/05/2013-02/06/2013	SPO	Comparative general Prosecution System Comparative on prosecutors' role in asset forfeiture system Comparative on prosecutors' counter measure against money-loundering
2.	Research about job and work mechanism, etc.	03/06/2013-23/06/2013	The Korean Institute of Criminology	to obtain a better understanding and knowledge of each nation's legal system with particular regard to asset forfeiture and to facilitate the exchange of prosecutorial expertise, experience and best practises
3.	Research about job and work mechanism, etc.	24/06/2013-30/06/2013	Regional District Prosecutors' Office	to obtain a better understanding and knowledge of each nation's legal system with particular regard to asset forfeiture and to facilitate the exchange of prosecutorial expertise, experience and best practises
4.	Research about job and work mechanism, etc.	01/07/2013-07/07/2013	Regional District Prosecutors' Office	to obtain a better understanding and knowledge of each nation's legal system with particular regard to asset forfeiture and to facilitate the exchange of prosecutorial expertise, experience and best practises
5.	Prepare to finish	08/07/2013-12/07/2013	SPO	Procecutor work together beyond the border within the context of regional network to forge relevant legal framework and enhance capability to tackle proceeds of crime with the ultimate goal of cracking down on transnational organized crime

교환프로그램기간 동안 사하로니 검사는 한국의 유관 형사사법기관들에서 근무하며 다양한 학문적 지식과 실무적 경험을 체득하였다. 대검찰청 파견 근무기간 동안 사하로니 검사는 대검찰청의 불법자금환수 실무자들로부터 불법자금 은닉 최신 동향 및 불법자금환수 수사 기법과 같은 기술을 전수 받을 수 있었다. 또한, 대검찰청의 협조로 한국의 대법원을 견학할 수 있는 기회도 가질 수 있었다.



[그림 3-4] 대검찰청 근무 당시 사하로니 검사 및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월례 집담회 모습

3) 한국형사정책연구원에서의 근무

사하로니 검사는 2013년 6월 3일부터 21일까지 3주간 한국형사정책연구원에 파견되었다. 연수기간 중에는 연구원 기능 및 역할 소개와 연구 성과를 공유하고, 아시아저스트 프로그램 및 사이버범죄 방지를 위한 가상포럼(VFAC) 사업에 대한 소개 및 논의를 하였다. 특히 VFAC 홈페이지 시연을 통해 온라인 교육훈련프로그램 및 연구네트워크를 함께 검토하는 자리도 가졌다. 아울러, VFAC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인도네시아 검찰의 적극적인 참여를 촉구하였다. 또한, 본인의 관심분야인 한국의 형사정책체계 및 동향에 관해 연구하고 인도네시아의 형사정책체계 및 현안과 비교·분석하였다.

2013년 6월 17일에는 연구원 직원들의 외국 형사사법 동향에 관한 정보교류 및 상호 이해증진을 목적으로 사하로니 검사를 초청하여 월례집담회를 개최하였다. 월례집담회에는 40여명의 연구원 직원들이 참석하여 인도네시아의 법률체제 및 형사사법체제에 대해 논의하였다.

사하로니 검사는 3주간 한국형사정책연구원에 근무하면서 한국의 사법체제에 대해 조사를 하고 인도네시아 체제와의 유사점 및 차이점을 분석하였다. 또한 사하로니 검사는 형사정책연구원의 기능 및 역할 등을 파악하면서 국제협력과 관련하여 ‘형사정책연구원은 국제협력 분야에 많은 경험을 가지고 있으며, 이런 경험을 바탕으로 인도네시아와도 협정을 맺기를 기대한다. 향후 초국가적 범죄, 부패 사건, 돈세탁 및 자산몰수 분야 등과 같이 인도네시아가 겪고 있는 문제들을 해결하는 데에 형사정책연구원이 도움을 주길 바란다’고 언급하였다. 그는 3주간의 업무수행에 관한 사항을 주간보고서(Weekly Report)로 정리하여 UNODC에 제출하였다.

두 번째 검사교류프로그램도 성공적으로 종료됨에 따라, 앞으로도 검사교류프로그램이 지속적으로 시행되어 형사정책연구원과 아태지역 검찰의 활발한 국제적 교류를 도모하여 아태지역 검찰제도 시스템 이해증진에 기여하기를 기대한다.

4) 평가 및 성과

총 8주간의 교환프로그램을 마치고 사하로니 검사는 아시아저스트 팀에 최종보고서를 제출하였다. 최종보고서에 따르면 검사교류프로그램은 매우 유익하였으며 특히나 본 프로그램을 통해 불법자금환수에 관한 학문적 그리고 실무적 지식의 향상을 가장 큰 성과로 뽑았다. 향후 인도네시아에서 근무시 유용하게 사용 될 것이며 이는 인도네시아 불법자금환수 수사 역량 향상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한국형사정책연구원과 같은 형사사법 및 범죄연구에 특화된 정부기관의 설립 필요성검토를 본국에 요청할 것이다.

본 교환프로그램의 가장 큰 성과는 한국과 인도네시아 검사간 네트워크가 구축되었다는 점일 것이다. 이러한 네트워크 구축의 단기적인 성과는 측정할 수 없으나 장기적으로는 한국과 인도네시아 양국 간 더욱 공고한 형사사법 협력 체계 구축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¹²¹⁾

121) 장준오 외 8명, 『2013 UN · 국제협력사업성과보고서』,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13.

제4장

KOREAN INSTITUTE OF CRIMINOLOGY

사업의 진행현황 및 후속사업

김한균·승재현·조성현

제4장

사업의 진행현황 및 후속사업

제1절 형사사법 협력 프로그램 사업 추진 현황

1. KIC-UNODC 방콕사무소 공동사업 진행 프로그램

가. 프로그램 개요

2014년 12월 양 기관의 동남아시아 초국가적 사법협력 개선 (Improving Cross-Border Justice Cooperation in Southeast Asia) 공동사업 지원협정에 따르면, 본 사업은 한국을 비롯한 아시아 국가 및 ASEAN 회원국 법무부, 검찰청, 그리고 KIC를 파트너로 하는 UNODC 아시아 지역프로그램 (2014-2017)의 제4프로그램: 형사사법 (Criminal Justice)과 성과목표 12: 초국가적 형사사법 현안 효과적 협력 증진에 연계되어 있다.

〈표 4-1〉 UNODC 지역 프로그램 2014-2017

Sub-Programme	4: 형사사법 (Criminal Justice:XAPA 10)
성과목표	12: 초국가적 형사사법 현안 효과적 협력 증진
집행기관	· UNODC와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관련국의 법무부, ASEAN 국가내 검찰청 및 대검찰청, 대한민국 및 동티모르 · ASEAN 회원국 단체
그 외 파트너 기관	· 법무부 · Prosecutor's Office · Attorney-General's offices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출처: UNODC 아태지역 사무소 내부자료

나. 주요 진행 내용

동남아시아 초국가적 사법협력 개선 사업에서 KIC와 UNODC의 3개 주요 협력 사업내용은 다음과 같다.

- ① 사이버범죄를 포함한 다양한 형태의 신종 초국가적 범죄의 도전에 대응한 지역내 형사사법공조 개선방안 모색을 위한 학문적·실무적 연구수행과 공동출판.
- ② 역내 각국 형사사법공조 중앙기관의 역량강화 지원.
- ③ 역내 각국 형사사법공조 기관 및 직원의 네트워킹을 위한 형사사법공조 교육 훈련 워크숍 공동개최 및 역내 각국의 우수사례와 관련정보의 공유 증진.

협정 제7조에 따르면 매년 12월 31일 연례회계보고서(annual financial statement)를 제출하며, 사업 종료시 최종보고서(final report) 및 최종회계보고서 (final financial statement)를 제출하고, 연간 및 반년간 진행상황 간략보고서(concise project progress report)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다.

2015년 9월 8일과 2015년 10월 1일 두 차례에 걸쳐 태국 방콕에 위치한 UNODC 지역사무소 내 소장실에서 사업의 진행점검 및 아시아지역 불법자산환수 워크숍 준비 협의가 이루어졌다. 형사정책연구원의 국제협력센터장과 UNODC 측 J. Douglas (지역사무소장), 심인식 (Consultant), UNODC 파견검사인 최인호 부장검사가 참여하였다. 두 차례에 걸친 사업 진행점검에서는 제3차 워크숍으로 2013년 12월 체결한 업무협정의 중간보고서를 정리하여 제출하기로 합의하였다. 제3차 워크숍 성과보고서는 UNODC와 KIC의 공동출간을 하기 위하여 공동 작업 중에 있다. UNODC와 KIC는 동남아시아 지역의 형사사법공조 강화를 위한 공동연구수행과 보고서 발행을 통하여 사이버 범죄와 같은 다양한 종류의 초국가적 조직범죄에 효과적인 대응을 추진할 것이다.

2. 아시아저스트 사업 후속진행 방안

아시아저스트 (2009-2013) 사업은 UNODC 아시아 지역프로그램 (2014-2017) 에

통합운영되고 있다. UNODC 측에서는 제1차 지역프로그램의 일부로서 이행했던 Towards AsiaJust(2009-2013)의 취지와 내용을 제2차 지역프로그램(2014-2017)의 일부로 아시아저스트 사업을 한국형사정책연구원과 진행하는 것으로 이해하고,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은 아시아저스트 사업의 후속사업으로서 이해하고 있다.

아시아저스트는 지역협력의 모범적 사례로 발전할 잠재적 가치가 큰 사업인 만큼 실질적인 내용을 채워나가는 지역협력체계 기본틀로 유지하되,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입장에서는 학술적 공동연구 보다는 개별 회의체나 특정현안 관련 사업의 성과를 체계적으로 정리 분석하여 영문, 국문 보고서를 지속적으로 출간하는 방향을 취하려고 계획 중이다.

본 사업의 향후 추진방향과 관련하여, 크게 3가지 형태로 교류사업 중심적 기획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세부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 ① 사이버공간상의 신종마약유통, 마약통제배달, 불법자금세탁, 불법자산환수, 인신매매, 형사사법공조, 반부패 등 역내 개별 현안 중심
- ② 지역컨퍼런스, 실무그룹 회의, 우수사례 워크숍 등 다양한 회의체 형식 운용
- ③ 형사사법공무원대상 교육훈련 프로그램개발과 개별 국가 현안수요에 따른 시행 등

3. 아시아지역 형사사법통계 협력센터 설립추진

본 회의기간 중 개최된 실무협의회에서는 KIC와 UNODC 아태지역사무소간 형사사법통계분야 협력증진을 위한 센터설립 추진계획이 발표되었다. 이에 UNODC 아태지역사무소의 더글라스 소장은 지역센터 설립 및 운영 초기 단계에서 UNCTS¹²²⁾ 참여율 개선, ICCS에 대한 이해도 증진, 역내 국가 범죄 및 형사사법통계 인프라에 대한 기초 연구를 수행해야 한다고 언급하였다. 또한 형사사법통계 협력센터를 통해 장기적으로는 역내 국가 범죄 및 형사사법 통계자료의 수집분석까지 추진해 나가야 할 것이라는 점에 KIC와 의견을 같이 하였다.

더글라스 소장은 지역센터를 KIC 주도로 설립할 경우 센터의 소재지와 관할국 범위, 기관장 및 정규직원 임용절차와 방식에 관하여 재정지원기관인 KIC의 의사를

122) 범죄동향조사. United Nations Surveys on Crime Trends and the Operations of Criminal Justice System. UN-CTs는 UNODC감독하에 이루어지는 국제범죄동향조사로 1970년대 제1차 조사를 시작으로 2014년 조사까지 완료된 상태이다.

일차적으로 고려한다고 약속하였다. 또한 협력센터 설립은 아시아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인 만큼 비엔나 본부와 아태지역사무소가 모두 연관되며, 더글라스 소장은 비엔나 본부의 계획에 대하여 확인하고 KIC와 공유하기로 하였다.

유럽이나 남미 INEGI의 사례와 비교해 볼 때 역내 국가들의 형사사법체계의 차이, 언어의 차이가 큰 점을 고려하여 아시아지역에서의 범죄 및 형사사법 통계 협력은 지역특성을 고려하여 단계적으로 진행되어야 한다는데 양 측이 모두 동의하였다.

제2절 동남아시아·태평양 지역 형사사법협력사업 워크숍

1. 회의 개요

UNODC 동남아시아/태평양 지역 사무소에서는 가입국의 형사사법공조에 대한 정보공유와 더불어 형사사법공조 네트워크를 보다 적극적으로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3rd Senior Officials Workshop on Mutual Legal Assistance and Extradition in East Asia and the Pacific” 워크숍을 개최하였다. 본 워크숍은 ① 각국 형사사법공조 및 범죄인인도 법제에 대한 상호이해 증진, ② 효과적인 형사사법공조를 위한 협력네트워크 활성화, ③ 형사사법공조 관련 국제규범 및 기준에 대한 이해도 증진, ④ 각국 형사사법공조 전담기관의 역할, 기능, 정책수단 및 절차에 대한 상호이해의 강화를 목적으로 마련되었다. 이런 견지에서 UNODC는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형사사법공조 전문가 집단들이 참가하는 이번 워크숍의 개최를 통해 정보를 공유하고자 하였다. 본 워크숍에서는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법집행기관 종사자들과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의 원장을 비롯하여 원내 연구원 3명이 참여하였다. 태국검찰차장, ASEAN 10개국(태국·베트남·라오스·캄보디아·브루나이·인도네시아·미얀마·필리핀·말레이시아) 형사사법공조 담당 고위급 공무원 및 대사관 대표, ASEAN 사무국 대표, 일본, 중국 대표 등 전문가 60명이 참여한 본 워크숍은 2015년 10월 1일과 10일 2일 이틀에 걸쳐 태국 내 UNODC 아태지역사무소에서 개최되었다.

본 워크숍은 UNODC 아태지역사무소장과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의 김진환 원장의 환영사를 시작으로, ASEAN 지역 내에서의 형사사법공조사례에 대한 각국의 사례를 주제로 하여 모두 5개 세션에 걸쳐 진행되었다.

〈표 4-2〉 동남아시아·태평양 지역 형사사법협력사업 워크숍 일정

10월 1일	
개막식 9:00-10:00	환영사: - UNODC 아태지역사무소장 (Jeremy Douglas)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김진환 원장 기조연설: - K. Chutiwongse (태국 검찰차장) - S. Checchi (UNODC)
제1세션 10:15-12:00	형사사법공조와 범죄인인도 국제규범 및 기준 - 백기봉 변호사 - H.Longo (UNODC 반부패전문가)
제2세션 13:30-13:40	ASEAN 지역내에서의 형사사법공조사례 및 ASEAN 사무국과 MLAT 사무국의 역할 - ASEAN 사무국 대표 - MLAT 사무국 대표
제3(a)세션 13:40-15:30	각국 사례발표: 형사사법공조 관련 국가정책·법적 현안·우수사례·전담기관의 역할 - 캄보디아 - 라오스 - 미얀마 - 태국 - 베트남
제3(b)세션 15:45-17:30	각국 사례발표: 형사사법공조 관련 국가정책·법적 현안·우수사례·전담기관의 역할 - 브루나이 - 인도네시아 - 말레이시아 - 필리핀 - 싱가포르
10월 2일 (금)	
제4세션 9:30-10:30	각국 사례발표: 형사사법공조 관련 국가정책·법적 현안·우수사례·전담기관의 역할 - 호주 - 중국 - 일본
제 5세션 10:50-15:00)	케이스 시나리오별 분임토의
폐회식 (15:00-17:00)	종합토론 폐회사 (J.Douglas)

2. 개회 Session

가. 개요

본 워크숍을 개최·지원하는 기관장들의 개회사의 순서는 J. Douglas UNODC 아시아태평양 지역센터 소장,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의 김진환 원장, K.Chutiwongse 태국 검찰차장 순으로 진행되었다.

나. 개회사 주요 요지

UNODC 아태지역센터의 Douglas 소장은 개회사에서 아시아태평양 지역내 형사사법공조의 강화 및 실질화를 위한 네트워크 구축의 중요성과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그는 본 워크숍이 아세안 회원국을 비롯한 동아시아 및 태평양 지역국가의 형사사법공조 및 범죄인 인도 분야의 공조 발전을 위한 소통과 협력을 증진하는 기회에 대한 기대를 표명하였다.

김진환 한국형사정책연구원장은 형사정책연구원이 UNPNI 회원기관으로써 아시아태평양 지역 내 형사사법공조를 위한 다양한 지원을 해왔음을 강조하였다. 형사정책연구원은 UNODC의 아시아저스트 사업의 핵심 파트너로써 2009년 이후부터 다년간 협력관계를 유지해왔다. 김진환 원장은 아시아태평양 지역내 형사사법공조 현안을 공유하고 범죄인인도에 대한 실무적 어려움을 공유하는 자리가 마련되기를 기대하고 있음을 표명하였다.

태국 Chutiwongse 검찰차장은 아세안회원국 형사사법공조협약(MLAT), 그리고 EuroJust를 비롯한 형사사법공조 협약의 발전을 모델삼아 동아시아 및 태평양 지역국가의 효과적 사법공조 및 형사사법공조의 실현을 위한 협력 강화를 기대하고 있다고 언급하였다.

3. Session 1 주제

가. 개요

세션 1은 워크숍의 주제인 형사사법공조와 범죄인인도 국제규범 및 기준을 소개하기 위해 기획되었다. 본 워크숍의 진행순서 및 의제에 관한 개관 이후 참석자들의 간략한 자기소개가 이어졌다. 그 뒤를 이어 UNODC의 H. Longo와 월드뱅크의 S. Majlessi의 발표가 이어졌다.

나. 주요 발표내용

1) H. Longo (UNODC 반부패 및 안티테러리즘 전문가)

테러리즘 재원차단을 위한 형사사법공조는 탐지, 적발, 동결, 압수, 범죄수익환수로 구성된다. 충분한 협력을 위해서는 금융범죄조항 또는 금융비밀보장으로 인한 형사사법공조 제한이 없어야 함을 강조하였다.

2) S. Majlessi (World Bank)

월드뱅크의 Mr. Majlessi는 국제적 차원에서의 지원 현황과 제도적 기본틀에 관한 설명으로 발표를 시작하였다. 제도일반의 문제로 신뢰부족, 종합적 정책부재, 자원부족, 집행수단의 부족, 효과적 조정의 부재, 공조요청의 남발을 지적했다.

또한 실무 및 소통상의 문제로 자주 지적되는 것은 협력담당자의 부재, 복잡하고 방대한 관련 법규정, 협력담당자와 대응의 불확실, 업무처리속도, 국외은행계좌 파악 문제이다. 이에 대한 해결방안으로 실무자에 대한 기본틀과 도구 제공, 협력국과 상호 신뢰관계 구축, 정치적 의지에 따른 법적 해결을 제안하였다.

마지막으로 UNODC와 World Bank의 불법자산환수 기획 (Stolen Asset Recovery Initiative:StAR)¹²³⁾을 소개하고 불법자산환수의 목적은 부패와 관련된 자금유통을 차단시킴과 동시에 부패자금을 몰수하고 자금환수를 통해 적법한 수혜자에게 돌려주는 것임을 다시 한 번 강조하였다.

123) 불법자산환수계획-StAR (The Stolen Asset Recovery)는 유엔마약범죄사무소와 협력으로 2007년 시작되었다. 동 계획은 부패행위를 통한 은닉자산을 환수하는 데 목적으로 한다.

4. Session 2 주제

가. 개요

제2세션은 ASEAN 국가 내에서의 형사사법공조를 소개하기 위해 기획되었다. 본 세션의 발표는 ASEAN 사무국 대표와 MLAT 사무국 대표가 맡았다.

나. 주요 발표내용

1) ASEAN 사무국 대표

아세안 회원국 형사사법 협력의 성과는 MLAT¹²⁴⁾, Model ASEAN Extradition Treaty¹²⁵⁾로 요약될 수 있다. MLAT은 아세안 회원국 현실 조약단계는 아니며 상호협력 가이드라인의 역할을 하고 있다. 유럽연합지역의 예와 같이 일본과 한국 등을 포함한 아시아지역 형사사법 조약의 가능성을 검토해 볼 수 있으나, 아시아지역의 상이한 법체계를 고려할 때 보편적인 조약규정을 국내법으로 옮기는 작업이 불필요할 수도 있다고 언급하였다.

2) MLAT 사무국 대표

MLAT은 2004년 서명 후, 2013년까지 아시아 8개국이 비준하였다. MLAT 사무국에서 제공하는 DB에 대한 설명을 통해 실무자를 위한 도구가 소개되었다. MLAT에서 보유하고 있는 DB안에는 각 국 Focal points DB, 각국의 실무자들에 대한 DB, 각국의 법률안 DB, 법정 소송 사건에 대한 DB, 그 외 각종 통계관련 DB를 보유하고 있다. 또한 MLAT의 회원국들은 불법자금세탁, 사이버범죄, 인신매매 분야에서도 MLAT 체계의 활용을 논의 중이다.

124) MLAT(Mutual Legal Assistance Treaty, 상호 사법 공조 조약)은 다른 국가와의 조약을 통해 각 국가가 범죄 수사와 같은 법적 문제와 관련하여 어떤 식으로 협력할지에 대해 정의한다.

125) ASEAN 지역내 범죄인인도조약 체결

5. Session 3 주제

가. 개요

제3세션은 ASEAN 각국의 형사사법협력의 기본 틀과 실무방식에 대해 소개하는 자리로 기획되었다. 각국이 형사사법공조에 대한 경험과 역량이 다른 만큼 지원의 종류도 각국마다 다를 수밖에 없다. 이로 인한 문제점들을 공유하기 위하여 각국의 MLA 관련 현황 (공조요청 및 공조수용), 범죄인인도관련 현황 (공조요청 및 공조수용) 등이 소개되었다. 또한 각 나라에 공조요청을 보낼 때의 주의사항들을 정리하여 공유하고 형사사법공조를 장려하기 위한 방안도 논의되었다.

나. 주요 발표내용

1) 캄보디아

캄보디아의 형사사법공조 전담중앙기관은 외무부와 법무부이다. 공조요청은 외무부를 필수적으로 거쳐서 이루어져야 한다. 캄보디아는 형사사법공조와 범죄인인도에 대한 국내법이 부재하다. 따라서 수사권독립론에 따라 범죄인인도를 집행하고 있다. 현재까지 형사사법공조 양자협약을 맺은 나라는 아직 없지만 캄보디아와 베트남과 양자협약에 대한 논의중에 있다는 것을 언급하였다. 범죄인인도와 관련하여서는 5개국과 양자협약 체결이 되어있다. 제일 먼저 태국 (1998), 중국 (1999), 라오스 (2009), 한국(2009), 베트남(2013)순으로 양자협약이 진행되었다. 다자간 협약은 MLA 관련 아세안 국가협약, UNTOC, UNCAC 등의 국제 협약에 따르고 있다. 해외에서 캄보디아로부터 공식적 법률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캄보디아와 협약을 맺었는지 여부에 따라 달라진다. 만일 협약을 맺었을 경우, 협약의 조항에 따라 캄보디아내 관할기관과 업무진행이 이루어진다. 협약이 안 맺어졌을 경우, 캄보디아의 국내법에 의거하여 협조가 진행되지만 국내법에서는 형사사법공조 현안을 다루고 있지 않아 어려움이 있다.

지원은 관련 서류제공, 증인소환, 증거제출, 정보공유, 범죄관련수익 자국 내 송금, 이미 형을 집행중인 범죄인이 증거나 수사를 받을 수 있도록 협조, 범죄수익 환수 등 캄보디아 법령에 의거하여 광범위하게 결정된다. 공조의 거절사유로는 공소시효가 지난 범죄인, 인종, 종교, 국적, 성적차별, 정치적 문제 등으로 얹힌 경우 등이 있다.

공조요청은 반드시 문서화되어 이루어져야하며 요청서한을 받는 기관 측에서 수용할 수 있는 언어로 이루어져야함을 강조하였다.

2) 라오스

라오스의 MLA 중앙 관할기관은 외무부와 법무부이다. 공조요청은 캄보디아와 마찬가지로 외무부를 필수적으로 거쳐서 이루어져야 한다. 라오스는 형사사법공조를 위해 국제 협약과 형사소송법에 의거하여 협조를 진행 중이다. 형사사법공조요청이 거절되는 주요 사유로는 1) 라오스와 양자간, 다자간 협약 체결의 범위를 벗어나거나, 2) 라오스의 사법주권에 반할 경우, 공안을 침해할 경우 등이라고 소개하였다. 형사사법공조와 관련한 실무적 어려움은 국내법상으로 요청처리에 대한 시간적 제약이 주어져 있지 않고, 공조요청에 대한 템플릿이 마련되지 않는 점이다. 또한 형사사법공조에 대한 관할기관과 권한에 대해서 정확한 가이드라인이 없기 때문에 요청을 처리할 때 많은 혼란이 있다. 현재 라오스는 형사사법과 관련하여 UNODC를 모델로 하여 법안을 준비중이다.

라오스 내 범죄인인도 관련 조항은 2012년에 처음 적용되었다. 현재 범죄인인도와 관련하여 양자협약은 베트남 (1998), 태국(1999), 캄보디아(2005) 순으로 체결되었다.

3) 미얀마

미얀마는 현재 경찰청 내에 외무부를 비롯한 여러 정부기관으로부터 11명의 멤버를 뽑아 다국적 조직범죄 부서를 따로 마련하여 운영하고 있는데 형사사법공조 전담 중앙기관의 역할도 겸하고 있다. 미얀마는 2004년 형사사법공조법을 제정하였으나 2008년 헌법 제정 이후 개정이 필요한 상태이다.. 2004년 형사사법공조법의 제정 이후, 공조요청을 받은 사례는 중국으로부터 요청받은 1건의 사례밖에 없다. 형사사법공조상 따르는 실무 문제로는 관련 스태프의 부재와 전문 훈련이 부족한 점, 관련경험이 적은점이 있다.

4) 태국

태국은 1992년 형사사법공조법을 제정하였으며 전담중앙기관은 법무장관실이다. 형사사법공조 관련 법안은 현재 수정중이다. 2012~2015년 동안 태국 내 공조 관련

건수는 총 743건이었다. 이중 공조요청은 말레이시아로부터 4건, 베트남으로부터 8건, 캄보디아로부터 2건, 싱가포르로부터 2건, 인도네시아 2건, 필리핀 1건을 받았다. 공조요청은 라오스 37건, 말레이시아 18건, 미얀마 7건, 베트남 5건, 싱가포르 5건 순으로 집계되었다. ASEAN국가뿐만 아니라 호주 18건, 중국 8건, 일본 2건, 뉴질랜드 1건, 한국 2건으로 공조요청을 보냈고, 공조수용은 호주로부터 5건, 중국 7건, 일본 13건, 뉴질랜드 1건이다. 공조요청을 거절하는 사유는 태국 법률 내에서 범죄요건에 해당하지 않을 경거나 군사적 이유가 개입된 경우 등이다.

5) 베트남

베트남의 형사사법공조 전담중앙기관은 대검찰청이다. 범죄인인도와 관련해서는公安국이 그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공조집행을 위해서는 국제 협약과 호혜의 원칙하에 업무를 진행하고 있다. 베트남은 2007년 형사사법공조법이 제정되었으며 19개 양자협약을 체결하였다 2010년부터 2015년 현재까지 총 324건의 공조요청과 316건의 공조수용을 달성하여 다른 나라대비 높은 공조 실적을 이루었다. 공조요청에 대한 주요 거절 사유는 공조범죄가 베트남에서 범죄요건을 구성하지 않는 경우, 해당국가의 형벌제도의 차이 등을 꼽았다. 또한 베트남은 형사사법공조요청과 범죄인인도를 집행할 때 요청 집행에 관한 정확한 시간한도가 주어지지 않는 것과 언어적 문제로 인한 내부적 어려움이 발생한다. 이러한 문제들의 해결을 위해 공조 요청시 정확한 컨택트 포인트를 잡을 것, 사전에 공조요청에 대한 서한을 팩스나 이메일 등으로 송부할 것 등을 강조하였다.

6) 브루나이

전담중앙기관은 브루나이 검찰청임이다. 브루나이는 2005년 형사사법공조령, 2006년 범죄인인도령 제정, 2006년 MLAT 비준을 완료하였다. 하지만 실무적으로 형사사법공조 관련 경험이 많지 않아서 다른 국가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시스템이 약하다. 2004년 이래로 브루나이가 MLA 요청을 받은 것은 총 8건이며 범죄인인도 요청 건은 없었다. 군사적 범죄혐의자, 인종차별, 성차별, 종교 차별등의 문제와 얽힌 범죄혐의자는 브루나이 측에서 인도를 거절할 수 있다. 브루나이는 네트워킹에 기반을 둔 비공식적 협력진행을 원활한 형사사법공조의 핵심 포인트로 강조하였다.

7) 인도네시아

인도네시아의 형사사법공조 전담중앙기관은 법무부이고 지원기관은 검찰청, 경찰청, 부패근절위원회 등을 포함한다. 법무부 내 형사사법공조 담당인력은 총 8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3명은 범죄인인도 담당을 맡고 있고 6명은 형사사법공조업무를 맡고 있다. 인도네시아 내 사이버범죄, 환경관련 범죄, 인신매매 및 밀매, 테러리즘은 인도네시아 경찰청 담당이다, 마약 밀매는 마약범죄국과 경찰청 담당, 부패관련 범죄는 부패근절위원회와 검찰청, 경찰청 담당이다. 따라서 이와 관련한 범죄에 대한 공조요청이 들어오면 법무부와 관련 기관이 협동하여 요청업무를 진행한다. 현재 인도네시아는 대부분의 아세안 국가들과 형사사법 조약을 맺고 있고 범죄인 인도 조약은 맺고 있지 않다. 따라서 범죄인인도요청 시 중요한 것은 정치적 의지임을 강조하였다.

8) 말레이시아

말레이시아의 형사사법협력 전담중앙기관은 말레이시아의 검찰청 (The Attorney General of Malaysia)내의 국제협력담당 부서이다. 국제협력담당부서는 검찰청 소속의 7명의 사무관이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범죄인인도 중앙 담당기관은 외무부내 안전 및 공공질서 부서 (Undersecretary of the Security and Public Order Division)이다. 말레이시아는 2002년 형사사법공조법을 제정하였고 ASEAN 국가들을 비롯하여 호주, 미구, 홍콩, 영국, 한국, 인도와 협력체계를 맺고 있다. 범죄인인도 협력법은 1992년 처음 제정되었고 현재 태국, 인도네시아, 미국, 홍콩, 호주, 인도, 한국과 협력관계를 맺고 있다. 말레이시아가 2009년부터 2013년까지 형사사법공조요청을 받은 횟수는 총 160건이며 범죄인 인도 요청을 받은 횟수는 총 54건이다. 말레이시아의 MLA 전담중앙기관에 따르면 공식적 협력 요청을 보내기 전에 비공식적 도움을 먼저 요청하는 것이 관련 정보획득에 있어 더 빠르고 효율적이다. 이는 수사의 단계가 아직 초기일 경우 더 유효하다. 말레이시아가 공조요청을 거절하는 주요 사유로는 정치범죄나 군사범죄일 경우이거나 종교적, 인종적 문제 등일 경우, 말레이시아 형법상 범죄요건을 충족시키지 않는 경우 등이다. 또한 협력과정이 타인의 안정을 위협하는 경우, 말레이시아 재원에 지나친 부담을 주는 경우 등에 한하여 공조요청을 거절할 수 있다. 말레이시아는 외교채널을 통해 요청을 수용할 경우 지연될 수 있다. 따라서

공식 요청서한을 보내기 전에 비공식 루트를 통하여 업무 요청을 진행할 것을 권장하였다.

9) 필리핀

필리핀의 사법공조 전담중앙기관은 법무부이며 중앙담당기관은 52명의 변호사와 21명의 사무직 직원들로 이루어져 있다. 필리핀은 국외로부터의 공조요청이 공조수용에 비하여 다른 나라에 비해 매우 높고 그에 따른 경험도 풍부하다. 따라서 필리핀은 공조요청에 대한 시스템이 비교적 잘 갖추어져 있다. 공조요청의 경우 사기, 살인, 성폭행, 부패, 약물 문제 등이 주된 요인이다. 범죄인인도요청과 관련하여 2011년부터 2014년 사이에 총 19건의 요청을 수용하였다. MLA와 범죄인 인도와 관련한 내부적 어려움은 먼저 범죄인 인도법이 제정된 지 오래되어 개정될 필요가 있고 국내 형사사법 공조법이 부재하다는 점이다. 또한 중앙전담부서의 인원부족으로 인한 어려움도 있다.

10) 싱가포르

싱가포르의 형사사법공조와 범죄인인도 관련 전담중앙기관은 검찰청 (Attorney-Genera's Chambers)이고 검찰청 내 국제사법협력팀 (International Affairs Division, International Legal Cooperation Team)이 업무를 맡고 있다. 싱가포르의 형사사법 공조법은 2014년 개정되었다. 싱가포르의 공조요청시 협약을 필요로 하지 않으며 호혜의 원칙에 따른다. 또한 2014년 개정법 시행으로 non-coercive measure과 조세 범죄는 쌍방가벌성의 원칙을 따르지 않고 협조가 진행된다. 싱가포르는 공조요청 시 실무 및 소통상의 문제를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정해진 표준 양식을 사용해 줄 것과 타임라인을 준수할 것을 강조하였다.

6. 제 4 세션

가. 개요

제4세션에서는 호주, 일본, 중국이 ASEAN 국가들과의 형사사법공조 및 범죄인 인도 협력 사례를 소개하였다. 제3세션과 마찬가지로 각국의 형사사법공조의 중앙전담기관과 공조요청시 필요한 사항, 공조 거절 사례등이 논의되었다.

나. 주요 발표내용

1) 호주

호주측은 먼저 ASEAN국가들에 대하여 호주의 공조요청에 대한 원활한 협력에 대한 감사를 표시하였다. 호주의 형사사법공조 중앙 담당기관은 검찰청으로, 검찰청의 국제협력 부서내에 국제범죄협력 전담부서가 따로 운영되고 있다. 공조 요청시 별도의 외교채널을 거치지 않고 국제협력 전담부서로 바로 연락을 취하면 된다. 호주는 1987년에 처음 형사사법공조안이 제정되었고 현재 29개국과 양자협약을 맺고 있다. 양자협약을 맺고 있는 ASEAN 내 주요 파트너국은 태국,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이다. 호주에서 형사사법공조와 범죄인인도 요청을 받은 주요 범죄들은 마약관련 범죄, 아동 성학대, 밀입국, 살인, 사기, 자금세탁과 관련한 금융범죄 등이다. 범죄인인도법은 1988년에 제정되었고 35개국과 양자협약을 맺고 있다. 범죄인 인도를 집행할 때 호주는 테러리즘과 관련범죄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진행하도록 하고 있으며 그 외에도 밀입국, 조세 사기, 자금세탁, 부패등과 관련된 범죄에 우선순위를 부여한다.

2) 일본

일본의 형사사법공조 중앙 전담기관은 법무부이며 호혜성의 원칙에 따라 진행된다. 형사사법공조는 일본과의 협약여부에 따라 달라진다. 협약국의 경우, 외교채널을 거치지 않고 직접적으로 일본 법무부측에 공조요청을 할 수 있다. 반면, 비협약국의 경우, 일본 외교부를 통하여 요청이 이루어져야 한다. 공식적인 공조요청을 보내기 전에 초안에 대해서 공조 담당국과 연락을 취할 것을 권장한다. 또한 공조 요청시 공조의 기한을 사전에 협의하고 가능한 모든 문서들을 일본어로 번역하는 것이 일처리를 보다 원활하게 한다.

3) 중국

중국의 형사사법공조 전담중앙기관은 법무부, 외무부,公安部, 최고인민검찰원이다. 형사사법공조법과 범죄인인도법이 제정되었으며 양자협약과 국제 협약 등을 통해서 형사사법공조를 제공하고 있다. 중국은 ASEAN 국가 중 태국, 인도네시아, 필리핀,

라오스, 베트남과 양자체결을 하였으며 범죄인인도와 관련하여 태국, 캄보디아, 필리핀, 라오스와 양자조약을 체결하였다. 공조의 대상은 서류 및 기록물(금융기관, 업무기록 포함) 제공, 증거물 제공 등이 포함된다. 중국에게 요청시 필요한 서류들은 사건 경위, 필요한 증거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 필요절차, 요청기한, 담당자 연락처 등이 포함된다. 중국의 경우 아시아태평양 지역을 통틀어서 가장 많은 공조요청을 받는 나라들 중 하나이다. 하지만 공조요청을 받았을 때 원활히 진행되지 않는다는 점을 많이 지적받고 있는데 중국 측 대표자는 이에 대해 언어적 문제를 주요 원인으로 강조하였다. 중국 측에 공조요청 시, 지방행정기관과의 커뮤니케이션을 위해 모든 공조요청을 중국어로 바꿔줄 것을 제안하였다.

제5장

KOREAN INSTITUTE OF CRIMINOLOGY

결론

김한균

결론

1. 동남아시아 형사사법협력 사업의 성과 정리

한국형사정책연구원과 유엔마약및범죄사무소의 아시아저스트 (AsiaJust) 프로그램은 유럽의 EuroJust와 유사한 형사사법네트워크를 동아시아 및 태평양지역에 구축하는 비전 아래 추진되어 왔다. 그 주요 추진사업은 ① 아태지역 형사사법공조네트워크 추진, ② 아태지역 불법범죄수익환수네트워크 추진, ③ 검사교환 프로그램 실시를 내용으로 하였다.

아태 형사사법공조(MLA, Mutual Legal Assistance) 네트워크에는 본 연구원 및 법무부 국제형사과가 참여하여, 2012년 이래 형사사법공조 과장급 워크숍, 형사사법공조 실무자급 워크숍을 개최하였다. 또한 아태 불법범죄수익환수네트워크 (ARIN-AP, Asset Recovery Inter-agency Network of Mutual Legal Assistance, MLA) 네트워크에는 본 연구원 및 대검 국제협력단이 참여하여 2012년 이래 전문가 회의, 설립 준비회의를 개최하고, 2013년 창립총회에 이어 그 사무국을 대검에 설치하였다. 검사교환 프로그램으로는 라오스와 인도네시아 검사가 참여한 바 있다.

아시아저스트 사업은 본래 UNODC 아태지부의 동남아 지역프로그램을 통하여 다양한 활동을 계획하였으나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충분한 기금을 다수 회원국가들로부터 확보하지 못하여 프로젝트의 계획에 상응하는 진전을 이루지 못했다는 평가가 있는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아태지역 형사사법공조네트워크 추진을 위한 워크숍 등을 통하여 역내 국가들의 형사사법공조기관간 실무상 협조관계가 더 긴밀해진 성과는 인정할 만하다. 특히 상호 신뢰에 기반한 비공식적인 협력을 중시하는 동아시아 국가의 특성을 감안할 때 이와 같은 긴밀한 관계의 구축은 우리나라를 비롯하여 동아태

국가간의 형사사법공조를 활성화하는데 기여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아태 불법범죄수익환수네트워크는 한국 대검찰청이 그 사무국을 담유치하였으며, 아태지역 불법수익환수에 관한 비공식적인 협조체제를 성공적으로 구축하는데 중심적 역할을 다하였다.

2014년 12월 본 연구원과 UNODC 아태지부는 아시아저스트사업의 지속사업을 이어가는데 합의하고, 아태지부 동남아 지역프로그램 중 형사사법정의 (criminal justice) 분야와 관련하여 상호 협력하는 내용의 기금 출연 협약을 체결하였다. 이에 UNODC 아태지부는 지부의 동원 가능한 역량을 총 동원하여 회원국의 형사사법공조에 관한 인식을 제고하고 협력을 강화하기로 하였다. 또한 양 기관은 아태지역내 국가들간 공식적인 형사사법공조는 물론 다양한 분야의 비공식적인 형사사법협력 체계에 대한 현황을 파악하고 논의하는 내용의 다양한 협의체를 구성 운영하는데 합의하였다.

2. 아시아저스트(AsiaJust) 후속사업의 과제와 전망

한국형사정책연구원과 UNODC 아태지부는 동남아 지역의 비공식적인 형사사법협력 현황에 대하여 공동연구를 수행하는 방안을 후속사업의 주요내용으로 검토하였다. 특히 2015년 10월 형사사법공조 워크숍 이후 아태지역내 저개발 국가를 특정하여 형사사법공조 담당실무자들을 대상으로 형사사법협력에 대한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워크숍을 실행하기로 계획하고 있다.

아시아저스트 사업은 아시아지역내 초국가적 조직범죄 대처역량 강화노력에 적극 기여하면서 주로 형사사법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사이버범죄 역량강화 교육훈련 프로그램, 역내 실무전문가들의 토론장을 열어 주고 동 분야 최초로 비정부 연구기관이 적극 기여했다는데 상당한 의미가 있다고 자평할 수 있다.

또한 그 개발과 운영과정에서 본 연구원내 아시아지역 형사사법공조 분야 연구역량도 강화되었으며, 본 연구원이 유엔 범죄방지및형사사법 네트워크 프로그램 회원기관으로서 연례 유엔범죄방지형사사법위원회 관련 회의 성과를 구체적 국제협력사업의 성과로 구체화하였다는 점에서도 실효성을 확보했다.

다만 이러한 본 연구원을 대표하는 국제협력사업으로서의 성과에 대한 높은 수준의 국제적 평가, 그리고 이를 위해 투입된 상당한 재정 및 인력자원을 고려해 보면 본 연구원 내에서의 객관적 평가와 역량지원에서는 미흡한 점이 있다. 본 아시아저스트 사업의 지속적 발전을 통한 결실을 맺으려면, 무엇보다도 내부적 이해와 협력이 절실하며, 이를 위해 본 사업의 성과에 대한 객관적 내용을 공유하여 이해도와 참여도를 높이고, 부정적인 오해와 불신의 장애요인을 극복해 나가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김은경 외 9명(2012), 2012 유엔 · 국제협력사업 성과보고서,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성진 외 4명(2009), 유엔 및 국제협력 백서,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장준오 외 2명(2010), 국제범죄방지를 위한 유엔 · 국제협력 및 연구, 한국형사정책
연구원

장준오, 이윤미(2011), 유엔협력사업, 국제교류협력사업,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장준오 외 2명(2011), 아시아저스트 사업: Towards AsiaJust Programme Report
2011, 한국형사정책연구원

한국형사정책연구원(2009), Towards AsiaJust: 동아시아 및 태평양지역을 위한 유엔
형사사법 프로그램, 한국형사정책연구원

Abstract

UN•International Cooperation and Research for Crime Prevention (XI)

Cooperation in Criminal Justice in East Asian Region and Towards AsiaJust Program

Kim Han-kyun • Seung Jae-hyun • Cho Sung-hyun

Pak Sang-hee • Kim Eun-young

This study identifies the outcome of the Korean Institute of Criminology (KIC) projects related to the technical assistance for cooperation in criminal justice in Southeast Asia and the Pacific, such as the study on mutual legal assistance with the Regional Office for Southeast Asia and the Pacific of United Nations Office on Drugs and Crime (UNODC) and Towards AsiaJust Program, suggesting the relevant tasks for further studies.

In Chapter 2, the study introduces the Regional Programme Framework (2009-2012) of the UNODC Regional Centre for East Asia and the Pacific and the five thematic sub-programmes of its Regional Programme for Southeast Asia 2014-2017.

In Chapter 3, the study analyzes the achievements of the Towards AsiaJust Programme, classifying each stage of the programme as follows: the stage of development and introduction from 2009 to 2010; the stage of implementation from 2011 to 2012; and the stage of follow-up in 2013. In Chapter 4, the results

of the relevant mission and its follow-up in 2014 and 2015, and the 3rd Senior Officials Workshop on Mutual Legal Assistance and Extradition in East Asia and the Pacific are discussed.

In Chapter 5, the study examines the overall results of the KIC projects for cooperation in criminal justice in Southeast Asia and the Pacific regions and suggests both the direction and the assignment of the future follow-up projects of the Towards AsiaJust Programme.

연구총서 15-B-12

동남아시아 형사사법 협력(AsiaJust) 사업 정책성과 연구

발행 | 2015년 12월
발행처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발행인 | 김진환
등록 | 1990. 3. 20. 제21-143호
주소 | 서울특별시 서초구 태봉로 114
전화 | (02)575-5282
홈페이지 | www.kic.re.kr
정가 | 7,000원
인쇄 | 삼신인쇄 (02)2285-6478
ISBN | 978-89-7366-939-4 93360

연구원의 허락 없이 보고서 내용의 일부 또는 전체를 복사하거나 전재하는 행위를 금합니다.

